

이달의 민변

97년 11월호(통권 제14호)

특집 탈북자문제

시민사회단체 인터뷰 인권운동사랑방을 찾아

자료 양심수 이해를 위한 시론

1995년도 중앙노동위원회 심결례 분석

이달의 만화

2023. 10월

영구보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달의 민변

97년 11월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기획특집] 한민족의 헌법과 민족통일

차례 (97년 11월호)

한국 헌법

제111호

시론 정권교체라는 과제는 여전히 유효한가 - 김선수 • 4

특집

- 탈북자문제 인권문제로서의 탈북자문제 - 임을출 • 9
- 북한이탈주민의 국적과 보호 - 이상호 • 16
- 독일통일과정에서의 서독의 동독탈출자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 정연순 • 23
- 회원의 변론경험담 사소한(?) 사건의 예측하지 못한 결과 - 이백수 • 27
- 외부에서 본 민변 '밖'에서 본 민변 - 이상영 • 30
- 시민사회단체 인터뷰 인권운동사랑방을 찾아 - 이유정 • 34
- 한일법률가교류회 참가기 한국인 변호사와 재일 한국인 변호사의 교류회에 출석하여 - 이와기 유타카 • 39

1997년 11월호

자료

- | | |
|--|---|
| <p>양심수문제 긴급 토론회 양심수 이해를 위한 시론 - 박원순 • 47</p> | <p>노동위원회 발제문 1995년도 중앙노동위원회 심결례 분석 - 이인호 • 55</p> |
| <p>기획소송 소장등 부산지역 노동조합운동의 현황과 과제 - 김석준 • 62</p> | <p>한국논단 고소장 • 80</p> |
| <p>사무국 보고 • 83</p> | <p>성명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권영화제 탄압에 대한 민변의 견해 • 88 ② KBS, MBC, SBS 3개 공중파방송은 대선에서의 매카시적 여론조작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90 ③ 한국논단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며 • 92 ④ 한국논단 토론회 생중계에 대한 공개사과를 촉구한다 • 94 |

정권교체라는 과제는 여전히 유효한가

김 선 수

대선정국이 혼란스럽다. 여당이 분열의 길을 걷고 있는가 하면 오히려 야당은 연합을 하는 등 그 동안 보지 못하였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야당연합이라고는 하지만 반드시 흡족한 것만은 아니고 불만족스러운 면이 많다. 이념이나 정책이 상이한 두 당이 연합하여 장래 어떠한 내용으로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정권교체가 절대절명의 과제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이런 식의 연합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가 회의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1987년 직선제 개헌으로 대통령선거에 참가한 이후 한 번도 내가 찍은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것이다.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내가 찍은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을 것이다.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는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요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를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각국은 물론이고, 세계 제2차대전 이후 장기간 동안 자민당 정권이 유지되어 왔던 일본도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바 있다. 영국과 프랑스도 최근에 진보정당에 의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우리를 고무시키지 않았던가.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대통령선거를 실시한 이후 선거에 의해 야당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정권교체를 이룬 경험을 우리는 갖지 못하고 있다. 4.19혁명 이후 정권교체가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혁명적 상황에 의한 것으로서 선거에 의한 여야의 정권교체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5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선거에서 정권교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여당후보가 당선된 것은 그 동안의 여당 후보들이 항상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여 국민 절대 다수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은 결코 아니다. 금권과 관권을 동원한 부정선거, 야당후보에 대한 색깔론 제기와 공작정치를 통한 음해, 여론조작과 지역감정을 부추김으로써 특정지역 후보는 절대 불가하다는 논리의 확산 등을 통해 집권여당의 영속적인

집권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심지어는 간접선거제도를 도입하여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체육관 대통령' 까지 나타나지 않았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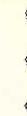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화의 정도가 낮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50년이면 그렇게 짧다고만 할 수도 없다. 그 기간 동안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면 민주주의가 온전히 성숙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50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당이 계속 정권을 유지하여 왔다면 그 여당의 정책이나 이념이 올바른 경우에도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할 것인데, 독재와 부정부패와 정치공작 등을 통하여 정권을 유지하여 왔다면 더 무엇을 말하겠는가.

물이 한 곳에 오래 고여 있으면 썩듯이 권력도 한 곳에 오래 머물면 부패하기 마련이다.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 있는 공무원 사회의 부정부패와 정경유착(특히 재벌과의 유착)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바로 정권교체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권력이 한 곳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다. 공무원 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정권교체는 필요한 것이다.

집권여당이 선거에서 패배하여 야당이 될 가능성성이 전혀 없는 사회에서 집권여당은 안하무인이 될 수밖에 없다. 집권여당의 독선과 횡포를 견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정할 때 현상을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하나의 입장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시각이 편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당이 야당으로 될 때를 대비하고 그럴 각오를 다져왔다면 그동안 자행되었던 바와 같은 부정부패나 권력형 비리는 없었을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권교체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어야 한다.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국민에게 호소하고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여당은 아직까지도 정권교체를 쉽게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듯하다. 정권교체를 막기 위하여, 정권재창출을 위하여 원칙과 소신도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는 고쳐져야 할 것이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끝장나는 듯한 자세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막가파식으로 무모하게 날뛰는 것은 우리 사회를 후퇴시킬 뿐이다. 정정당당하게 대결하고 국민의 선택에 의하여 정권재창출에 실패하면 야당으로서 활동하고 다음의 기회를 기약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정권교체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권교체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내지 두려움이 사회 전체에 깔려 있는 듯하다. 사회 전체가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 잔인한 정치보복이 자행되는 것은 아닌가 등등.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을 사회 전체에 유포하고 확산시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막연한 거부감 내지 두려움은 경험을 해보지 못한 데서 비롯된 기우에 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치보복 운운 하여 정권교체에 대한 두려움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구린 데가 있는 특권층에 속하는 일부 사람들이 아닐까. 정치보복 등의 논리로 정권교체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정권교체를 경험해보아야 할 필요성은 있는 듯하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선거를 통하여 정권교체를 실현해보는 것 그 자체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대선에서 후보를 결정함에 있어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전망이나 국정운영방향 또는 사회정책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50년에 가까운 현정사상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를 단 한 차례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는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의 경험 그 자체가 우리 사회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닐까. 국민의 힘으로 선거를 통해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는 민주사회의 가장 초보적인 원리를 직접 체험한다는 것 그 자체로도 가슴 뛰듯한 일이 아닐까. 따라서 정권교체 그 자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를 경험해보아야 한다는 것은 남북통일만큼이나 당위적이고 원론적인 일이 아닐까. 남한 내에서의 정권교체도 경험해보지 못한 편협한 상태에서 남북통일을 맞이하는 경우 유연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물론 정권교체라는 것은 더 나은 정치를 위한 수단이지 그것 자체가 완결된 목적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고, 그러한 비판이 타당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의 여당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야당으로의 정권교체는 그 자체로 최선은 아니겠지만 현재보다는 나은 상태로 나아가는 것은 아닐까. 최선을 추구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현가능한 차선을 선택하는 것도 현명한 길이 아닐까. 두 야당의 연합이 몹시도 못마땅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쩔 것인가.

정권교체든 무엇이든 이번의 대선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제대로 치루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정상적인 대선국면을 깨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저러한 우여곡절을 거쳐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가 인위적으로 무산되고 우리 사회에서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의 길이 멀어져 가버린다면? 그러한 불행한 일만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탈북자문제

1. 탈북자문제의 정의와 권리

탈북자문제는 탈북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와 그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대한 법적 보호 체계입니다. 탈북자들은 종종 정치적·종교적·인권적 이유로 국가를 탈출하는 경우, 그들의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거나 침해되는 경우에 대한 법적 보호 체계입니다.

탈북자문제는 탈북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와 그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대한 법적 보호 체계입니다. 탈북자들은 종종 정치적·종교적·인권적 이유로 국가를 탈출하는 경우, 그들의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거나 침해되는 경우에 대한 법적 보호 체계입니다.

탈북자문제는 탈북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와 그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대한 법적 보호 체계입니다. 탈북자들은 종종 정치적·종교적·인권적 이유로 국가를 탈출하는 경우, 그들의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거나 침해되는 경우에 대한 법적 보호 체계입니다.

卷之三

인권문제로서의 탈북자문제

임 을 출(한겨례신문 기자)

1. 탈북자문제와 북한인권문제의 관련성

탈북자문제는 북한인권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은 사실 김영삼 정부 이전에 표명됐다. 6공화국 당시 북한인권문제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포함적으로 반영되기도 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89년 국회 특별연설에서 통일정책을 밝히면서 "통일된 우리의 조국은 민족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각자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여야 한다"고 선언했다.

또 91년 1월 16일 당시 최호중 통일부총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노대통령은 “우리도 이제부터는 북한에 대해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최소한의 자유라도 허용하고 또 이를 국제적으로 환기시켜 북한으로 하여금 개방과 개혁, 그리고 민주화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시는 남쪽의 일방적인 선언에 그쳤을 뿐 특별한 조처를 취할 수는 없었다.

정부가 북한인권문제 혹은 탈북자문제에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94년 러시아 벌목공의 망명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부터다. 같은 해 4월 13일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러시아 내 벌목장을 탈출한 북한 벌목공들의 한국망명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당시 환승주 외무부장관에게 러시아측과의 교섭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탈북 북한 벌목공들에게는 '국제난민자격'으로 한국에의 망명이 허용됐다.

김영삼 정부도 초기엔 남북정상회담에 연연해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즈음해 언론을 통해 러시아 탈북 별목공의 실태와 중북한 국경을 통해 탈출한 북한주민들의 참담한 생활이 속속 전해지면서 우여곡절 끝에 정부에서도 당초 방침을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러시아 별목공들이 탈북자 문제에 대한 관심의 불을 지핀 셈이다.

한편 이러한 분위기에 가세해 민간차원에서도 '북한탈출동포돕기 운동본부'와 '재단법인 귀순북한동포후원회'가 95년에 처음으로 발족됐다. 후자는 당초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던 것을 민간단체화한 것이다. 이 단체 가운데 운동본부는 러시아나 중국에 목사들을 파견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탈북자들의 재정지원을 했으며 후원회 역시 귀순자들에게 소규모 재정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사실 정부가 탈북자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96년 말부터이다. 그해 12월 9일 김

경호씨 일가등 두 가족 17명이 서울에 들어온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과거 상상도 못했던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등 고위급의 망명에다가 심지어 먼저 서울에 와 있던 탈북자가 북에 남겨져 있는 가족이나 형제까지 탈북시킨 사례가 잇달아 발생한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탈북현상이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한 식량난, 생활고 등 구조적 경제적 요인이 주된 이탈동기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는 보다 근본적이고 가시적인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된다.

2. 탈북자의 현주소

그간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귀순하는 경우는 다음과 세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북한에 살다가 중국이나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오거나 한국으로 오지 못하고 중국 등지에서 불안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이 부류가 가장 많다.

이들은 중국을 거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94년 4월 30일 김포공항을 통해 한국에 온 여만철씨 일가, 6.25 당시 북한에 잡혔다가 43년만에 탈출할 조

창호 소위(94년 10월 23일), 북송재일교포로서는 처음으로 일가족이 탈출한 오수룡씨(95년 4월 27일), 김경호씨 일가(96년 12월 9일) 등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지금까지 한국으로 온 탈북자 650여명(97년 9월 말 현재) 가운데 이 방식을 거쳐 입국하는 귀순자가 가장 많다. 중국으로 넘어오는 탈북자들의 문제점은

한국으로 오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성분이 나쁘다거나 배고픔과 정치적 탄압을 이기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북한을 탈출했으나, 중국에서는 중국 공안당국이나 북한공작원들의 추적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항상 불안과 두려움 속에 이곳 저곳을 전전하며 살고 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는 중국 동북 3성의 연변자치주,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 등에 흩어져 살고 있으나 이곳에선 '조교' (북한국적의 중국 조선족 동포)들의 감시가 심하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북경의 한국대사관을 찾아가 한국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 당국과의 외교적인 마찰을 우려해 대사관쪽이 마냥 적극적으로 나설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한국정부도 '정보 가치가 있는 사람들'에만 관심이 있지 그밖의 사람들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중국 지역을 전전하는 탈북자 수는 정부 공식발표자료를 인용해 볼 때 1,200~1,3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국내입국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400~500여명이 된다고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일본을 거쳐온 탈북자는 지난 87년 1월 김만철 일가가 거의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귀순 후 "따뜻한 남쪽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말로 화제를 뿐었던 김씨 일가는 청진항에서 배를 타고 표류하다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왔다.

두번째는 해외근무중이거나 유학중 한국으로 온 경우이다. 이들은 외국에서 살면서 북한과 같은 폐쇄적인 사회는 희망이 없는 나라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한국으로 귀순했다. 구소련과 동구권에서 망명한 북한 유학생들은 모두 10여명으로 이들은 대부분 구소련과 동구가 망하던 89~90년 사이에 한국으로 왔으며 이곳에서 다시 대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초의 망명 유학생은 조승균씨(당시 26살)와 김은철씨(당시 26세) 등이다. 또 외교관 고영환씨(91년 콩고주재 북한대사관 1등서기관), 현성일씨 부부(95년 잠비아주재 북한대사관 3등서기관), 조명칠씨(94년 7월 김일성종합대학 상급교원), 최주활씨(95년 9월, 북한군 상좌), 김정민씨(87년 4월 북한 로동

당 직영 대양무역회사 사장) 등을 해외 근무중이나 출장길에 탈출한 사람들이다.

셋째는 러시아 별목공들이다. 시베리아 별목장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침혹한 인권 유린실태가 외부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은 러시아의 개방정책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서방환경단체와 언론들이 시베리아 침엽수림 파괴를 문제삼으면서부터이다.

지난 92년 5월 영국 ITN방송이 이들 별목장에서는 북한인들의 사형이 자주 자행되고 있으며 20여개의 사설감옥이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후 러시아와 서방의 인권전문가들은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북한 별목공은 67년 북한과 구소련 사이에 맺은 계약에 의해 일하고 있다. 94년까지 모두 16,000여명의 북한 별목공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곳에도 이들은 맨발에 현 운동화만 신은 채 작업을 하고 있으며 열악한 환경과 노동을 견디지 못해 탈출하는 사람이 많다. 94년 현재 200~300여명이 탈출해 중앙아시아와 모스크바지역을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한국으로 귀순했다. 지금까지 귀순한 별목공은 94년 5월 18일 최정남씨 등 5명을 비롯해 수십명에 이른다. 정부는 남북 대화에 지장을 주고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꺼렸으나 여론에 밀려 94년부터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3. 탈북자 지원제도의 변천

가. 1980년대까지의 지원제도

한국전쟁 이후 치열한 이념경쟁 및 체제경쟁 속에서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귀순한 사람들은 북한체제

를 거부하고 자유세계의 품에 안긴 사람으로 대대적으로 선전되었을 뿐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대우도 받았다. 62년까지 월남 귀순자는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군 보안기관에서 관리, 지원됐다.

62년 4월 법률 제1053호로 '국가유공자 및 월남 귀순자 특별원호법'이 제정됨으로써 귀순자들은 이 법에 근거해 지원을 받게 됐으며 당시 주무부서는 '원호처'였다. 이 당시 귀순자들은 1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사회로 내보내졌다. 이 법에 따르면 귀순자는 정착수당으로 1급의 경우 100만환, 2급 70만환, 3급 50만환을 지급 받았다. 그리고 귀순자는 직장을 알선받고 국·공립 주택 우선입주권을 배정받았으며 양로 및 양육지원을 받았다. 이 법은 74년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으로 개정되있는데 주요 내용은 동일했다.

북한이탈자에 대한 지원제도는 78년 12월 법률 제3156호로 '월남 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이 제정되면서 보다 체계화됐다. 이 법에 근거해 원호처가 귀순용사의 관리·지원업무를 담당하였으며 84년 정부 조직개편에 의해 국가보훈처가 이 업무를 담당했다. 이 법에 따르면 귀순용사는 신분 및 정보제공 공적에 따라 황금 1,900g에서 14,500g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제공받고 휴대장비의 유형에 따라 황금 10g부터 807,700g에 상당하는 특별보상금을 받았다.

그리고 귀순자는 군인 및 공무원에 특별임용될 수 있었으며 15평 이상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또 의료보호, 양로 및 양육 지원을 받았으며 본인·자녀를 포함해 5명까지 직장을 알선받고 본인·배우자·자녀는 대학까지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준용하여 교육혜택을 받았다.

특히 기업체는 귀순자를 포함해 국가보훈자를 정원의 5~10%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했기 때문에 국가보훈처가 귀순자의 희망기업을 조정해 기업체에 의뢰할 경우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귀순자를 채용했

다. 이처럼 '월남 귀순용사 특별보상법'에 의해 80년 대말에 이르기까지 북한이탈자들은 귀순용사로 간주돼 국가유공자 및 그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 남한사회에서 정착하는 데 거의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이들이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남한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사회구성원으로 사회적용에 성공했다고 보기 힘든 측면도 있다. 이들은 귀순용사 대우와 경제적 지원을 받는 대신 귀순자라는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남한社会의 평범한 일원으로 적응했다기보다는 그저 '특별대우를 받는 국외자'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 1990년대: 북한이탈주민 증가와 지원규모 축소

90년대에 접어들어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고 동유럽에 유학중이던 북한유학생들과 러시아에 파견된 별목공들의 귀순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탈북자에 대한 인식과 지원정책에 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정부재정에 부담이 됐을 뿐 아니라 대규모 북한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이들에 대한 우대정책을 지속하기 힘든다는 문제가 대두했다. 이전까지 소규모로 발생하였던 북한이탈자가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생김에 따라 이들을 전제적으로 관리·지원해야 하는 종합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아울러 북한이탈자들에게 과도한 대우를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기존의 북한이탈자 우대정책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이유가 됐다.

이러한 배경 아래 93년 6월 법률 제4568호로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이 제정됐으며 이후 '귀순북한동포 보호법 시행령'이 제정됐다. 전자는 기존의 북한

이탈자에게 제공하던 물질적 지원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동시에 사회복지적 혜택도 줄였다.

한편 귀순자의 보호대상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보건복지부에 '귀순북한동포 보호위원회'가 설치됐다. 이 기구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보호대상 여부, 보호대상에서의 제외 여부, 기타 귀순북한동포 보호와 관련해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는 일을 맡았다. 또 귀순자의 생활안정과 자립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귀순북한동포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1996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춘 법률 개정

94년말 이후 러시아 별목공이 집단 귀순하면서 한 국정부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줄였다. 그 결과 북한이탈자들은 체제적용이나 직업교육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적 지원 없이 남한사회에 적응하게 됐다.

그 결과 북한이탈자들에 대한 기존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들의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물질적 지원을 하던 기존의 정책에서 벗어나 체제적용을 위한 사회적용프로그램과 직업훈련 등 북한이탈자가 독자적인 능력으로 남한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이 두어졌다. 이런 점에서 개정법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에서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되 '북한이탈자의 보호관리기간 설정', '사회적용교육' 및 '직업훈련 실시', '경력인정 및 특별임용' 등과 같이 독자적인 생활능력을 지닌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96년말 통일원에 '인도지원국'

을 신설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을 제정해 97년 7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법률과 시행령의 특징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일원을 총괄부서로 규정

북한이탈주민 보호문제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통일원을 총괄조정부서로 규정하고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를 통해 관련부처의 업무 협조가 이뤄지도록 체계를 갖췄다.

재외주민

재외 북한이탈주민들의 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보호를 결정한다. 인도주의원칙을 바탕으로 체류국과 협의해 보호 요청자를 전원 국내로 송환한다.

사회적용교육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적용교육을 받게 됨에 따라 (법률 제15조, 시행령 제40조) 통일원은 구체적인 사회적용교육방안을 마련한다. 통일원은 이에 따라 지난 5월 2주간 일정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용 실험교육을 실시했다. 주관부처인 통일원이 유관부처와 협의 아래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전반적인 교육체계를 파악한 끝에 정착의지 제고, 민간참여 활성화, 기타 정착지원 방안의 연계라는 방향 아래에서 우리 사회의 가치관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제적인 지식의 학습을 위해 기본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직업훈련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관건인바, 희망자에 대해 직업훈련을 실시(법률 제16조, 시행령 제43,

44조)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갖고 있는 기술과 능력에 맞는 직업훈련방안을 마련(시행령 제45조)했다.

또 북한 및 해외에서 취득한 학력과 경력의 인정을 위해 상세한 인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시행령 제38조, 39조), 학·경력 인정에 따른 보충교육안도 마련(시행령 제40조)했다.

사회지원체계 구축

북한이탈주민들의 원만한 사회정착을 위해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아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물질적 지원이나 개인들의 노력뿐 아니라 기존 사회구성원들의 수용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서 결혼, 개별가정 및 단체와의 자매결연, 입양 주선 및 지역사회에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 서로가 어려움을 달래주고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도록 친목단체 활성을 적극 지원, 우리 사회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언론등을 통해 이들의 삶을 소개하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남북한 서로알기운동등을 통해 이들의 삶을 소개하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남북한 서로알기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상호간 이해의 기회를 보다 확대함으로써 전반적인 통일의식과 이들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킨다는 것이다.

재외 북한이탈주민 보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는 데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국내수용과 관련된 문제이다.

새로운 법률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한민국

(재외공관 포함)에 보호의사를 표명한 경우, 이들을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해 특별한 보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북한이탈주민의 용어정의는 동 법 제2조 1항, 인도주의 원칙은 제4조, 보호신청은 7조에 규정).

그러나 새로운 법률시행과정에서 재외 북한이탈주민들이 재외공관장에게 보호 요청을 할 경우 현지국 정부의 협조 없이는 전원 국내수용이 현실적으로 불 가능한 측면이 있다.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이중적인 법적 지위로 인해 남북한간의 관할권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국제법상 난민처리 차원에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한 동시수교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북한의 공민인 셈인이다.

국제관례상 모든 국가는 난민관련조약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난민강제송환금지원칙' (Principle of Non-refoulment)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1951년 난민협약 제33조 1항은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탈북자정책의 문제점

사실 탈북자와 관련된 정부의 대책은 단순히 인권 문제로만 취급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남북관계나 북한정세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도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할 경우 '남북관계의 경색'이라는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측면도 정부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도층 탈북자가 급증하고 있고 탈북 배경이 갈수록 복잡 미묘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숫자도 대폭

늘고 있는 추세다. 더구나 탈북과정에서 관계국과의 외교적인 마찰도 적지 않게 부담스럽다. 현실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탈북자를 위한 예산 지원도 이에 맞춰 무작정 늘릴 수 없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한마디로 탈북자문제는 정부로서는 '뜨거운 감자'인 셈이다. 따라서 탈북자문제는 법적·제도적 측면 못지 않게 정치·외교적, 재정적 측면에서도 비중있게 다뤄져야 할 과제인 셈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 외에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과 관련해 제2조의 '주민' 이란 용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탈북 후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를 의미하는지 대한민국에 영주하고자 입국의사를 표시한 제3국 체류자를 의미하는지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입국한 자와 입국 예정인 자와 혼선 가능성이 있어 개념을 명확히 하고 용어를 구분해 사용하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증을 받은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도 있다. 법논리적인 것보다 인간적 심정적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이란 용어보다는 '월남이주민' 이란 용어가 적절하다는 것이다.

일부 탈북자는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거나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했는데 이를 감안해 정신적 외로움과 고독감을 덜어주어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는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취업문제도 심각하다. 기업은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 있는 근로자를 선호하고 있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러한 흐름에 익숙치 않은 북한이탈주민은 채용이 기피되고 있는 것이다.

주거를 알선해주는 문제도 적지 않은 갈등을 놓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은 서울에 주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비싼 부동산 가격에다 주택공급물량이 모자란 서울지역에 이들의 요청을 다 들어줄 수 없는 형편이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의 적응과 자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이미 사회에 배출한 사람에게도 다시 사회적응교육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후원회등 각종 민간·종교단체들과의 결연을 적극 추진한다든지 지방으로의 거주 분산을 유도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라 적지 않은 문제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에 덧붙여 통일원 내 탈북자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인도지원국'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에 비해 조직, 인원과 예산 모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국적과 보호

이상호

1. 북한이탈주민¹⁾의 문제

지금까지 많은 북한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북한을 탈출하였고 그 일부는 남한에 들어와서 어려운 정착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에도 북한이 직면한 식량문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국경을 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조만간 북한의 식량문제가 해결될 전망이 없는 상황에 비추어볼 때 앞으로도 많은 수의 북한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하리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 중 많은 이들은 중국과 러시아에 머무르면서 두 나라 정부의 색출대상이 되고 있고, 발견되면 북한으로 강제송환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그들은 우리 국민인가, 더 나아가 북한을 탈출하고서도 우리나라 영토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들은 헌법상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또한 그들을 난민으로 보호할 수 있는가와도 관련된

것이다. 이같은 문제들에 대한 논의는 당장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북한문제, 그리고 통일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개략적인 검토를 하고 그 문제점들을 짚어보려고 한다.

2. 헌법의 효력범위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많은 개헌을 거치면서도 제헌헌법에서부터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영토조항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영토조항은 헌법의 영향력이 미치는 사실상의 범위가 1953. 7. 27. 체결된 정전협정에서 정하여진 군사분계선 이남에만 미치고 있고 통

일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 분단을 전제로 한 것 이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영토규정을 그대로 따르면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실체인 북한정권은 국가가 아니라 반국가단체가 되며 북한지역은 미수복지역이 되는 것이 필연적 귀결이다. 하지만 이것은 남북한이 모두 독립된 국가로서 1991. 9. 유엔에 가입하고 북한이 외교적으로 실체를 가진 국가로 대우받고 있을 뿐 아니라 1991. 12. 남북의 당국자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던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다.

즉, 남북분단의 현실은 사실상의 분단일 뿐 법률상의 분단은 아니며 헌법상의 통일조항은 사실상의 통일을 이루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모순이 없다는 견해²⁾에서 남북한이 모두 유엔에 가입하고 북한이 사실상 국가로 승인된 현실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영토조항은 잘못된 것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견해³⁾까지 제시되고 있다. 또한 중간의 입장에서 위 조항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 선언 내지 원칙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⁴⁾나 이와 같은 영토조항은 '통일된 한국'을 전제로 통일한국의 영토범위를 선언한 것으로 해석⁵⁾하는 견해들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들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꾃꼿하게 종전과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최근에도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고, 남북한 층리들이 남북 사이

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으며 남한과 북한과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대한민국 국민의 범위

헌법 제2조는 국민의 요건과 재외국민의 보호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적법 제2조는 '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한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던 자, 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적법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법률이라는 판단을 받은 바 있으며 부계혈통뿐만 아니라 모계혈통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입법에 고된 상태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국적법상의 규정에 따르면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한국국적을 가졌다고 볼 수 있으나 1947. 7. 정부수립 이전까지 대한민국이 없었으므로⁶⁾ 당시 이미 태어나 있던 사람들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근거가 명백하지 않다. 즉, 국적법에

2) 김명기,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 대법원 판결의 법이론」, 『저스티스』 30권 2호, 한국법학원 1997.

3) 조국, 「변화하는 한반도와 법률투쟁의 고리」, 『민주법학』 5호.

4) 한인섭, 「분단과 통일 그리고 법」, 『법과 사회』 제5호.

5) 김승대, 「남북한간 특수관계의 법적 성격에 관한 일고찰」, 『법조』 1995. 3.

6) 1997. 2. 28. 선고 96도1817 국가보안법위반.

7) 이에 대하여 1910년의 한일합방조약은 1965년 한일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대한민국의 법통성은 1910년 이전부터 계속된다는 견해도 있다. 김명기, 앞의 글.

1) 1996. 12.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정하고 있다.

는 최초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며 입법 당시 북한의 주민,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던 동포들의 국적에 대하여 아무런 배려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정부 수립 당시의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남조선 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제2조 제1호에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조선의 국적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헌헌법은 제100조에서 '현행 법령은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근거로 1948. 7. 17. 제헌헌법의 공포 이전에 조선인을 부친으로 출생한 사람은 모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위에서와 같이 헌법의 효력이 한반도 전체에 미치는 것을 전제로 정부수립 당시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모든 한민족, 현재의 북한주민뿐 아니라 당시 중국, 소련, 일본 등 각지에 퍼져 있던 한민족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북한을 탈출한 사람도 본래 대한민국의 국민이므로 만일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에 정착할 경우에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국적취득절차(귀화)를 밟지 않아야 하며 실제로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인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르면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 남지역에 본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적을 정하고 서울가정법원에 취적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상으로도 북한 탈출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당연시하고 있다.

4. 대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논리는 대법원의 판결에서 확인되고 정리되었는데 대법원은 1996. 11. 12. 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등 사건 상고심⁸⁾에서 북한이탈주민 혹은 북한주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명백히 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가. 사실관계

원고 이영순은 1937. 3. 17.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사향리에서 부모를 조선인으로 하여 출생하여 남북분단 이후 북한지역에서 거주하다가 1960년경 중국으로 건너갔고 한국계 중국인과 결혼하여 살다가 1992. 7. 13. 중국정부로부터 중국 여권을 발급받은 후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증을 발급받아 1992. 9. 1. 남편과 함께 입국하였다. 이후 식당등에서 일을 하여 오다가 고향인 강원도 화천에서 여생을 보내고자 1994. 4. 9. 남대문경찰서에 귀순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남대문경찰서는 원고가 중국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체류기간을 위반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로 처리하여,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였다.

출입국관리소장은 원고에 대해 강제퇴거를 명함과 동시에 강제퇴거시까지 서울외국인보호소에 보호하도록 하는 보호명령을 하였는데 이에 원고는 서울외국인보호소장을 상대로 강제퇴거명령 처분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한편 원고는 중국에 거주하던 1977. 8. 25.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았고, 1987. 3. 1.에는 중국 정부로부터 유효기간을 1992. 3. 1.까지 하는 외국인 거류증을 발급받았으며, 1992. 3. 1.에는 유효기간을

1997. 3. 1.로 연장받았다. 소송에서는 원고가 중국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중국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국 국적을 취득하였던 것인지가 문제되었지만 법원에서는 원고가 여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던 것이라고 판단하였다.⁹⁾

나. 법률판단

이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 대법원은 '…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제2조 제1호는 조선을 부친으로 출생한 자는 조선의 국적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헌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0조에서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조선인 이승호를 부친으로 출생함으로써 1948. 7. 17.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사 원고가 북한헌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1977. 8. 25. 중국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요,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비판

9) 국적법 12조에 따라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으며 소송중 원고의 중국국적 취득 여부에 관하여 중국대사관에 대한 사실조회는 도착하지 않았다.

10) 이장희, 「통일시대를 대비한 한국 국적법의 개정방향 검토」,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적법의 개정방향 학술시민포럼〉 발표문, 1997. 10.

11) 김명기,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 대법원 판결의 법이론」, 『저스티스』 제30권 제2호, 2001. 6.

8) 1996. 11. 12. 선고,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1995. 12. 8. 선고 94구 16009호 사건

대법원이 북한정권을 반국가단체에 불과하다고 규정하는 것은 북한정권이 현실적으로 독립적인 국가를 형성,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엔에도 동시에가입되어 있는 공인된 국가라고 하는 점을 도외시한 것이다. 즉, 이러한 태도는 헌법의 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등 다른 법률의 일체적인 해석에는 적합하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이 공인된 국가라고 하는 엄연한 현실을 부정하여 대화의 주체로서의 자격조차 인정하지 않는 근거도 될 수 있다.

북한주민 혹은 북한이탈주민의 국적에 관한 위에서와 같은 법률적인 근거는 위 관련조항이 규정될 당시에 이와 같은 문제를 예상하고 제정되었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후적으로 그동안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 아래 국적문제에 대한 해석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근거로 작용한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국적법에 원시적인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규정이 명백하지 않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지금이라도 그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¹⁰⁾ 즉, 대한민국 전국 당시 국민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가의 승인은 상대적인 것이므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가입하여 타국가들이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남한이 북한을 승인한 것이 아니며 남한과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다고 하여도 합의서전문에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이라는 구절이 있으므로 서로 상대에 대한 국가성을 명시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¹¹⁾도 있지만 이는 형식논리에 치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위

견해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범주를 법률적인 국민과 사실상의 국민으로 구별하여 남한주민은 법률적, 사실상 모두 국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북한의 주민은 법률적으로는 국민이지만 사실상은 국민이 아니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바, 이러한 구분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현재의 당면한 문제는 우리나라가 북한이탈주민(조선인을 부친으로 출생하여 외국에 머무르면서도 자진하여 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별다른 국적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을 인정하고 호적을 창설하여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¹²⁾ 지금까지는 북한이탈주민 중 남한에 들어오는 수가 적었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앞으로 그 수가 증가한다면 이러한 방법으로는 곤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인지의 여부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확인하여 주는 국적 판정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 소송에 이르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이와 같이 북한주민이나 이탈자가 한국의 국적을 가진다고 할 때 대한민국은 자국민이라고 규정되는 북한주민이나 북한 탈출자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역시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외교적 보호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외국에 체류하는 자국민이 체류국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에 외교절차등을 통하여 그 국가에 적당한 구

제방법을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북한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서라도 북한 외로 탈출, 특히 중국에 머무르고 있는 북한주민에 대하여 중국정부에게 적절한 보호를 요청함으로써 북한으로의 송환을 금지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러한 것은 논리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운데, 그 이유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남한민을 국가로 승인한 것이 아니라 월 씬 이전부터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고 있었으며 이른바 협맹의 관계임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비록 남한의 국적을 가진다고 하여도 여전히 국제적으로 독립국가인 북한의 법률에 의하여 북한국적을 가진 자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남북한의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라는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¹³⁾ 자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동시에 두 나라의 국적을 가지는 이중국적자라면 이것은 1930년 체결되고 1937년 발효한 '국적법의 충돌에 대한 어떤 문제에 관한 협약'¹⁴⁾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조약에 따르면 2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국적국 각자가 자국의 국민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국적국 상호간에는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가 제3국에 있을 때 제3국은 그의 주된 일상적 거소 또는 그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곳이 어디인가에 따라 그를 하나의 국적을 가진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며 이를 실효적 국적의 원칙이라고 한다.

중국이나 러시아로 탈출한 북한주민의 경우 생활상의 근거지나 밀접성으로 볼 때 남한보다는 북한이

가까운 것이며 따라서 체류국가 북한의 국적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게 된다. 그렇다면 특히 정치적으로도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 러시아 등이 자발적으로 북한 탈출자에 대하여 한국의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한국정부가 그들을 국민으로서의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6. 난민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의 여부

만일 북한이탈주민 특히,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하여 북한을 벗어나는 주민에 대하여 한국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여 보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난민'으로 규정하여 보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가. 난민의 자격

1967. 10.부터 발효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¹⁵⁾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에의 소속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확고한 공포로 인해서 국적국 밖에 있으면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을 의사가 없는 자'라고 정의된다.¹⁶⁾ 이러한 난민의 정의와 관련하여 '조국에 등을 돌린 자' (Republikflucht)라는 개념은 특히 공산체제하의 국가에서 허가 없는 국외 출국자가 국내에서 반역죄로 다루어질 수 있는 경우, 탈출 그 자체가 정부체제에 대한 항거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난민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인데 북한 탈출자의 경우 그것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비

롯된 것이 아닌 짚주림에 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탈출 자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 분명하다면 위와 같은 개념은 냉전시대의 공산권 국가를 전제로 성립하였던 것이므로 현재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짚주림으로 인하여 북한을 벗어났던 사람들이 다시 북한에 돌아가서 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처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만약 허가 없는 출국으로 인하여 벌을 받는다고 하여도 그것이 한국에서와 같이 단순한 형사처벌인 '출입국관리법위반' 정도에 그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난민 자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더구나 난민은 본인 스스로가 본국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사가 있을 것을 요하는데 과연 단순히 짚주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월경한 사람들이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을런지도 의문이다.

나. 난민에 대한 처우

난민으로 규정될 경우 위 조약 제33조에는 '1. 체결국은 난민을 여하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에의 소속, 또는 정치적 의견으로 해서 그의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당하게 될 영역의 국경에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된다. 2. 그러나 이 규정의 이익은 그가 현재하는 국가의 안전에 대한 위험으로 간주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특별히 중대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나라 사회 전반에 대해 위험한 존재로 된 난민이 이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피난지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방할 수 없으

15)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6) 위 조약은 1982년, 한국은 1992년, 러시아는 1993년에 각각 가입하였다.

며 가장 중요한 것은 여하한 방법으로도 박해국으로 돌려보내서는 안된다고 하는 점¹⁷⁾이며 이것이 조약의 가장 핵심적인 규정이다. 여기에는 국가의 안전에 대한 위험으로 간주될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특별히 중대한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아 사회 전반에 대한 위험이 되는 경우(간첩이나 중범죄인)는 예외로 하되 그 이외에는 송환이 금지되며 난민의 처리는 체류국에 정착시키든지, 제3국으로 보내든지, 유엔 난민고등판무관과 합의하여 향방을 결정할 수 있다.

7.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북한 주민의 국적문제와 그 보호방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검토해보았다. 중국에 머무르고 있는 북한주민들이 한국 국적을 가진다고 하여도 그들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기는 곤란하며 난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도 불분명하다. 그렇지만 식량난을 피하여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각지를 유랑하면서 숨어지내고 있는 동포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이상 적어도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의 도움은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즉, 그러한 북한이탈주민에게 당분간이라도 짚주림과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하려는 노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하여 여러 민간 단체의 도움과 구조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에서는 북한주민 역시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또 하나의 조국'인 한국이 그에 따르는 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편의에 따른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북한 내의 식량문제를 외면 한 채 마치 북한지역을 벗어나야만 짚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식으로 이어져 종국적으로 북한 조기봉괴로 연결되어서는 안되며 북한에 대한 식량구조 그리고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식량문제 해결의 잠정적인 수단으로서만으로 그 의미가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17) 이를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독일통일과정에서의 서독의 동독탈출자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정연순

1. 분단과 통일에 관한 양독의 입장

1948. 6. 24. 베를린의 봉쇄가 시작되면서 전승 4 대국의 점령지역인 독일은 미영불지역의 점령지역과 소련의 점령지역으로의 분단이 고착화되었다. 그후 분단국가로 출발하게 된 서독은 서부독일지역의 국가 재건을 그 당면과제로 삼되, 1945년 독일의 항복으로 독일제국이 완전히 소멸한 것이 아니라 행위능력을 상실한 것으로서 서독연방이 독일제국의 후계자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서독은 '헌법'을 제정하지 않고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의 임시 내지는 잠정헌법의 개념으로 독일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기본법 전문에 '앞서의 각주의 독일국민들은 그 참여를 거부당한 독일국민을 대신해 행동했다. 전 독일국민은 자유로운 민족자결로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완성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독일제통일의 과제를 천명하였다. 또한 기본법 제23조에 '독일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편입에 의해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여 기본법의 효력의 범위를 '서독영토에 한정하되, 당분간'이라는 표현으로서 규정의 임시성을 밝히고 있으며 가입을 독일국민의 자발적인 의사에 맡기

는 평화통일의 원칙을 밝혔다.

서독정부의 분단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1972. 12. 21. 서독과 동독간에 양국의 실체를 인정하고 서로의 영토권을 각각의 영토에만 한정하는 내용의 기본조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위 조약 제8조는 상대방의 정부소재지에 외교관 대신 상설대표부를 교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위 조약에 따라 양독에 상설대표부가 설치되었으나, 서독정부는 위 상설대표부는 외교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문제를 관할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 역시 동서독간 기본조약이 기본법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판결문에서 '독일제국은 계속 존립하며… 독일연방공화국을 수립함으로써 새로이 독일국가가 건국된 것은 아니며… 공간적인 면에서 보면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함으로써 서독연방이 전체독일을 단독으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적 동일성론을 취하면서도 전체 독일제국이 존속하는 것과 독일국민과 국가기관이 독일제통일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반면, 동독은 1956년 이후부터 독일제국의 존속

을 부인하면서 독일에는 자본주의이념에 입각한 민족인 서독연방과 사회주의이념에 입각한 민족인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이라는 2개의 국가가 탄생하였다는 2민족2국가론을 취하였고, 별개의 국가로서의 현실에 입각하여 통일의 가능성은 부인하였다.

2. 서독의 국적문제 처리

서독은 1945년 5월 8일 독일의 항복 후 독일제국이 소멸한 것이 아니고 그 행위능력만을 상실하였다 는 전제 아래, 계속 하나의 독일제국이 존재한다는 입장은 가졌다. 이러한 전제 아래에서 전후 서독은 해결해야 할 국적과 관련한 몇 가지 과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비단 서독의 현 영토 안에서의 국민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좁은 의미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 과제는 첫째, 나찌 치하에서 강제로 국적을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해 국적을 회복하여주는 것, 둘째 동유럽에서 탈출했거나 추방당한, 독일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독일계 혈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처리문제였다. 마지막으로 통일을 대비하여 전체독일 국적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서독만의 국적을 별도로 둘 것인지였다.

서독기본법은 이러한 문제들을 염두에 두어 제 116조 제1항에서 독일인의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였다. 동 조항은 독일인에 대하여 '법으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 기본법의 의미에 포함된 독일인은 독일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독일 혈통의 난민이나 박해자로서 1937. 12. 31. 당시 독일 영토 안에 들어오는 것이 허용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독일인에 대하여 혈통주의를 취함으로써 앞서의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따라서 기본법상 규정된 독일인은 2가지로 나뉘었다. 하나는 '독일 국적 보유자' 이

고 다른 하나는 현재 독일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독일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할 자격이 있는 자'이다.

서독기본법은 '독일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할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위 1항에 경과규정을 두어 독일에 입국한 독일 국적 없는 독일계 피난민과 박해자,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와 자손이 그 대상이 됨을 열거하였다. 나찌시대의 강제 박탈자들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통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조항을 만들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 5. 8. 후에 독일에 다시 거주지를 갖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국적을 박탈당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규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규정으로서 서독은 기본법 시행 당시부터 서독인뿐만 아니라 동독인, 기타 제3국에 흩어져 있는 독일민족에 대한 헌법적, 외교적 보호를 행할 수 있는 틀을 갖추게 되었다. 이 규정은 서독이 전체 독일국가를 계승한다는 대전제에 부합하는 규정이었다. 서독은 이 규정이 제대로 시행되게 하기 위하여 '독일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할 자격이 있는 자'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다하였다. 가족법 등 국내 법률 등을 개정하였고, 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정과 의정서에도 가입하였고 무국적 방지를 위한 유엔 협정에도 가입하였다.

3. 동독의 국적문제 처리

동독은 1949년 동독헌법 제1조에 따라 오직 하나의 독일 국적만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가 1967. 2. 20. 동독인민회의가 동독의 국적에 관한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였고, 이후에는 동독시민들은 별개로 동독의 국적을 가지게 되었다. 동독은 기본조약

서명 전에 1972. 10. 16.에 '국적문제를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해 1972. 1. 1. 이전에 동독을 떠나 거주지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과 그 자손은 동독의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였다.

3. 국적에 관한 외교적 문제의 처리

이에 반하여 동독은 1967년 별도의 동독국적법을 제정하고 과거 제국및국가국적법에서 분리된 별개의 동독 국적의 개념을 두었던 반면, 서독은 전체독일국민으로서의 독일국민의 지위를 상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독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독일국민으로서 서독정부의 조력과 원조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따라서 서독의 입장에서는 모든 독일인에 대하여는 정부로서의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헌법적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고, 동독정부의 입장에서는 서독정부를 통한 동독주민의 보호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1984. 동독주민들이 동베를린 서독상설대표부로 줄이어 귀순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결국 1984. 6. 27. 방문자 왕래를 위한 대표부가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사태에까지 직면하였다.

이 문제는 비단 양독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문제에서 더욱 중요하였다. 1972년 동서독기본조약을 통해 국제법상으로는 동독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서독의 동독에 대한 관계와는 별도로 제3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별개의 동독국민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결국 서독의 입장에서 보면 동독인들은 서독인과 같이 외교적 보호를 받는 독일제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동독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이중국적자가 되는 셈이었다. 반면 동독은 국적의 분리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길 여지를 남기지 않았으며, 해외 거주

독일인에게는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독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서독의 입장에서는 독일의 통일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기본법의 정신에 따라 국적문제의 적용에 있어 전체독일국민으로서의 국적을 우선시하여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다만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서독의 전체독일 국적을 적용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는 없으되, 언제라도 동독주민들과 동구라파 거주 독일 국적 보유 가능자들에 대하여 서독기본법상의 공간적 보호범위 안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위 '제공이론'에 근거한 '예비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었다.

서독연방헌법재판소는 Teso 판결에서 '기본법제정의회대표자회의의 정치적인 기본결단은 새로운 국가를 창설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독일국가의 일부 영역의 재조직으로서 기본법을 제정하는 데 있는 것이다. … 기본법 제116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의 독일 국적 확립과 이와 함께 독일국민의 지금까지의 동질성의 확립은 이러한 이해의 규범적 표현이자 기본 결단의 규범적 표현이다'라고 판단하여 서독의 일관된 단일국적제도를 재확인하여줌과 아울러 동독국적의 취득에 있어서는 서독의 법질서에 있어서 공공질서의 한계 내에서 독일 국적의 취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주어진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동독인(또는 동독인으로 편입된 자)은 서독에 들어온으로써 기본법상의 권리주체가 되는 것이었다.

4. 통일과정과 그 이후

서독정부의 일관된 전체독일국민으로서의 단일국적주의는 통일의 과정에서 동독탈출자들을 신속하게 서독의 국민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혼란을 막음과 동

시에 동독주민들의 탈출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1989. 3. 동독난민이 헝가리를 거쳐 서독으로 밀려오자 서독 쟁여 외상은 동서독국민이 하나의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제3국에 있는 서독공관으로 망명한 피난민들을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 모두 기차로 데리고 나왔다. 동독에서 탈출한 동독시민들에게는 동독당국이 발급하는 신분증명서를 서독의 여권과 신분증으로 바꾸기만 하면 모든 입국절차가 끝났다. 1989. 8. 이후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지에서 수백, 수천명의 동독탈출자들이 서독대사관을 통하여 동독을 탈출하였고 이러한 동독 탈출의 흐름과 시민들의 시위가 서독으로의 흡수통일을 이루는 데 밀거름이 되었던 것이다. 결국 1990. 10. 3. 동독의 국가소멸과 함께 동독주민들의 서독으로의 가입선언에 따라 통일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통일조약 제3조와 제8조에 따라 독일 국적권과 독일인으로서의 지위에 관한 서독기본법의 내용이 동독지역에 까지 효력을 미침으로써 독일은 통일적인 단일국적 체제가 성립되었다.

5. 평가

서독의 단일국적주의는 동독탈출자들에 대하여 신속하고 간단, 편이한 절차로 서독의 국민으로 받아들여 하였고 그 이후 서독으로의 흡수통합이라는 절차에 대하여도 법적으로 합당한 근거를 제공하였다. 또한 이러한 단일국적주의가 통일 이후에도 동서독 간의 인적 통합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통일과정에서 국적의 처리문제와 아울러, 국적에 관한 일관된 입장을 가진 서독의 법제도 이전에 자국민 보호와 관련하여 적절한 보호권 행사와 동독과의 협상을 할 수 있었던 서독정부의 경제적 능력과 노력

도 중시되지 않을 수 없다. 1964년부터 서독정부는 동독의 정치범 석방을 위하여 동독정부와 내부적 거래를 하였고 1984년 상설대표부 폐쇄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도 내부거래를 통하여 귀순희망자들의 여행허기를 동독정부로부터 받아내었다. 또한 상당한 액수의 차관 거래를 통하여 양독국민들의 경제적, 인적 교류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배려를 하였다. 결국 이러한 서독정부의 노력이 동독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자연스러운 흡수통합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참고문헌

김시우, 「서독의 북한탈출자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인권과 정의』, 1994.
이장희,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적법의 개정방향」, 사단법인아시아사회과학원 주최 제21회 학술시민포럼자료집, 1997

허영 편저, 『독일통일의 법적조명』, 박영사, 1994
앙드레모로아 저, 전영애 역, 『독일사』, 홍성사, 1990

사소한(?) 사건의 예측하지 못한 결과

이 백 수

I
주관적으로 본다면 인간이 종사하는 직업치고 힘들지 않는 직업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란 직업은 나에게 있어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직업으로 여겨진다. 변호사란 직업을 갖는 것도 어렵지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너무도 많은 당사자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함은 물론이고 사건의 결과에 목을 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법률적인 지식보다는 감추어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때로는 의사나 기술자가 되기도 해야 하고 문서감정인이 되기도 해야 한다. 그리고 모자라 사회에서는 변호사가 공익의 대변자로 남기를 원한다. 아무도 월급날만 되면 하염없이 통장을 들여다 보며 잔고를 확인하는 슬픈 변호사의 한달살이 인생을 위로해주지는 않는다.

작년 10월 말경 준비서면을 쓸까 대출 신청을 할까 망설이고 있던 차에 다소 점잖지 못한 40대 중반의 여자가 판결문 한 장을 들고 와서 상담을 요청하였다. 그 여자는 다짜고짜 판결문을 던지듯 내놓으면서 “그 ××년에 돈을 주느니 차라리 변호사님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며 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기 시작하였다. 돈을 준다는 말이야 기분 나쁠 것이 없지만 모

양세를 보니 그저 지나가는 상담자로 생각되어 우선 진정을 시킨 다음 몇 마디 말을 들어주고 돌려보낼 생각으로 사건의 내용을 물어보았다. 이성을 잃어버린 그 여자는 2,000만원을 빌리고 잔금 300만원이 남아 얼마 전에 그것도 갚았는데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다. 밀도끌도 없는 얘기를 다 들어줄 수도 없어 가지고 온 서류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손가방에서 구겨진 몇 장의 서류를 내놓았다. 그중 현금보관증이 중요한 서류인 것 같아 확인해보니 “차용금 2천만원 중 잔금 8백만원을 현금보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 여자의 두서없는 얘기와 현금보관증의 기재내용을 연결시켜 판단해보니 판결 결과가 이해가 되었다. 허탈한 감정을 억누르며 잠시 그 여자를 바라보다가 상담을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현금보관증의 기재 내용과 판결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자 그 여자는 현금보관증의 내용을 처음 확인하였다는 표정을 지으며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줄 당시 자신은 이름만 쓰고 도장을 찍었을 뿐이고, ‘잔금 8백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분명히 ‘3백만원’ 이었다고 펼펼 뛰는 것이었다. 그러나 복사본인 현금보관증을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변조의 흔적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상담인지 언쟁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1시간을 보내

고 그 여자를 돌려보내려고 하였지만 억울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자리에서 일어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상황이 그렇게 되고 보니 그 난관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은 극악처방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정 억울하면 항소하여 재판을 해보라”고 하였더니 설상가상으로 재판을 맡아 달라는 것 이었다. 참으로 난감했다.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한 사건이고 청구금액이 500만원밖에 되지 않는 사건에 수임료를 받아야 얼마나 받겠는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 여자가 변호사 선임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 되는 수임료를 말하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여자는 흔쾌히 응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여 변호사로서 사립탐정의 역할까지 해야 하는 운명을 떠안고 말았다.

II 항소장을 접수하고 한 달 후 항소심 변론기일을 통보받았다.

준비서면을 제출해야겠는데 쓸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았다.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에 드디어 항소심 첫 재판이 다가왔다. 우선 현금보관증 원본을 확인해 보고 변론 방향을 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법정에서 원고에게 현금보관증의 원본 제시를 요구하였다. 재판장은 원심에서 피고가 성립 인정한 것인데 볼 필요가 있느냐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으나 다행히 원고가 원본을 소지하고 있어 확인은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원본을 아무리 들여다 보아도 변조의 흔적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몇 분이 경과하자 원본을 원고에게 돌려주라는 재판장의 짜증섞인 말에 편승하여 원고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는 것이 아닌가. 그냥 물러서는 것은 변호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핀잔을 무릅쓰고 몇 번을 베티다가 순간 현금보관증을

들어 불빛에 비추어보았다. 그랬더니 그냥 놓고 볼 때는 발견할 수 없었던 흔적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8자 부분을 칼로 긁어 수정한 흔적이 설명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을 재판부에 알리고 조서에 그 사실의 기재를 요구하였다.

망외의 결과에 약간 들뜬 마음으로 준비서면을 쓰고 문서감정 신청을 하였다. 당연히 감정이 채택되리라고 믿었는데 큰 착각이었다. 2회 재판기일에 재판장은 감정을 해도 변조 여부를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결심을 종용하였다. 몇 번의 공방을 벌이다가 증인을 채택하는 선에서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재판결과는 이미 기울어진 것이고 돈을 받은 죄로 의미없는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선고기일이 다 가오자 의뢰인인 그 여자는 조심스럽게 결과 예측을 부탁하며 변호사가 아닌 신통한 점쟁이 역할까지 요구하였다.

언젠가 법정에서 여자와 관련된 사건을 조심하라는 어느 원로 변호사의 농담 섞인 충고가 진리처럼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선고기일 며칠 전에 재판부의 변동으로 변론이 재개되었고 다시 한번 기회를 맞게 되었다. 바뀐 재판장 역시 약간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변조의 흔적이 역력하다며 감정방법을 잘 검토해보라는 것이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경험에 있을 법한 친구나 선배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였지만 이 사건과 같이 문서작성자와 변조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필적 감정은 의미가 없는 것이므로 변조의 시기를 밝힐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느 누구도 그러한 감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채택된 감정인 역시 변조 시기에 대한 감정에는 난색을 표하면서 다만 필기구가 다르거나 같은 종류의 필기구라도 제조회사가 다르면 성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감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달리 마땅한 방법이 없다 보니 배보다 배꼽이 큰 감정료를 납부하고 감정을 맡겼다.

기대 반 체념 반의 심정으로 감정결과를 기다리기 를 한 달 남짓, 여직원이 가져온 감정서를 보고 다소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감정결과는 대민족이었으나 감정인이 사용한 감정방법은 그야말로 초보적인 방법이 아닌가. 초등학교시절 색을 분리하는 실험을 하기 위해 싸인펜으로 분필에 선을 그어 물에 담가보면서 신기해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감정인은 변조된 글자와 원래의 글자일부를 떼어내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쉽게 변조를 밝혀낸 것이었다.

III

재판은 당초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결과로 끝이 났다.

다. 사례차 찾아온 그 여자에게 재판에서 승소한 변호사의 입장에서 마치 개선장군처럼 재판경험담을 몇 마디 늘어놓았지만 웬지 상쾌한 기분이 들지는 않았다. 이미 형사고소가 되어 있었던 터라 원고는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여자는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살 수 있게 되었다. 사소한 욕심에 눈이 멀어 완벽한 범죄를 시도했던 어리석음의 대가치고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다.

재판도 승부를 가르는 게임이라고 한다면 변호사는 그 게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 사건이 나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남겠지만 내가 맡았던 역할은 잊고 싶다.

'밖'에서 본 민변

이상영(충북대 법대 교수)

나는 지금 개인적으로든 공적으로든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는 모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것도 나는 그 모임에 가입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며, 아마도 내 평생에 그 모임에 가입할 가능성이나 의사가 전혀 없을 것 같은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천하에 쓸모없고 푼수 없는 짓이 함께 있지 아니하면서 그 어떤 사람들의 모임에 대해서 떠들어대거나 요목조목 꼬집어대며 따지는 것이 아닐까. 더구나 어떤 모임에 대해서 아무리 철저한 공적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최소한 나에게 있어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삶의 가치에 대한 판단과 배려에 근거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말이다.

바로 '나'인 밖에서 민변을 보기 시작하면, 우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다. 그리고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맘에 드는 좋은 일을 많이 했다. 마지막으로 민변이 그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민변의 모습이 사악함의 경계선까지 그 범위를 넓혀간다고 할지라도 아마도 나는 의뢰인 또는 그저 지인으로서 민변을 찾아갈 것이라는 예감을 갖고 있다.

그런데 어차피 민변에 대해서 보기 시작했고, 이것으로 끝내지 않고 무엇이든지 민변에 대해서 무어라

고 이야기하려면 민변이 내 맘에 쏙 든 부분만을 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서 민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다시 말해서 정확히 '밖에서 보는 것'은, 그 이야기들이 기초하고 있는 사실이나 그것의 의미가 부정확하기가 그지없을 것이고 따라서 분명 그 어느 다른 사람들은 내 이야기가 틀렸다고 정당하게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의 '단편적 경험', '나의 일이 아닌 데서 오는 평가와 사랑의 불철저성', 그리고 '궁극에는 현재까지 내가 변호사와의 만남에서 생긴 편견' 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잘 아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정을 준 사람 일수록 그 사람으로 인한 티끌만한 서운함도 태산처럼 크게 보인다는 의미에서 정겨운 이야기를 계속하겠다.

우선 민변, 변호사, 법조, 그리고 법과 관련해서 나에게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것은 '그 누구이든 옆에 같이 있어준다'라는 것이다. 그것도 그저 아무 일 없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정이 야 어찌 되었던 간에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고 그래서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풀어주려고 옆에 함께 한다는 것이다.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분쟁 해결을 위한 공적 기관이라든지, 국

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한 치자와 피치자의 관계 등의 논의를 굳이 늘어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 특히 민변의 역할과 역사를 한 마디로 말하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 옆에 함께 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어렵고 음울한 우리의 과거 시절에,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고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농민과 노동자들, 풍요로운 경제성장의 뒤안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마저 박탈당했던 가난한 사람들, 폭압적 정권에 저항하며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혼신을 다하다가 공권력에 의해 탄압을 받던 정치범들, 고착된 부정과 부조리,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보수 패러다임에 덮여 있던 자신과 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놓고자 이념과 양심을 굽히지 않던 양심범들, 그리고 모든 이들로부터 소외되고 자신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도록 강요받던 소위 사회일탈자들이 실낱같은 희망과 기대를 갖고 마지막으로 찾아갔던 곳이 민변이었다. 또한 민변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갔다. 그리고 민변은 애시당초 이런 어렵고 힘들고 얻어맞고 자신의 권리와 자유도 알지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 이들의 옆에 함께 해주었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만큼이나 민변이 찾아가고 옆에 서 있어야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면서 민변은 나름대로 커나갔을 것이다. 민변의 회원이 많아져서 조직도 잘 갖추어졌고, 일에 대응하고 처리하는 지식도 축적되어갔고, 비단 우리 사회에 국한하지 않고 세계 각국과의 연대를 높이는 등 보다 넓은 영역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조직이 잘 정비되어야 보다 많은 일을 혼선 없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축적해야 사건에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고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의 사정에 익숙하고 연대하는 것은 민변의 활동을 보다 강력하고 보편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돌아보면 최소한 나에 국한된 느낌으로는 민변의 효율적 조직화, 지식과 정보의 축적, 그리고 세계화는 지난 문민정부에서 소위 민주화와 개혁의 명목으로 그렇게 떠들었던 것들과 겹쳐서 다가온다. 어느 모임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민변이 조직을 잘 정비하려고 하면 할수록 민변 자체의 조직 논리가 생기기 마련이고, 결국은 자신도 모르게 만들어진 조직논리는 강대해져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조직논리를 위한 변호사모임'으로 변해갈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되면 민변 안에서는 이런저런 제목을 단 회의가 늘어날 것이고, 그 회의들의 대부분은 결국 '아름다운 타협과 천부적 정리력'을 통해 민변이라는 조직을 보다 잘 갖추기 위한 '조직강화'의 결론을 갖고 끝나게 될 것이다. 이제 마지막 희망을 갖고 민변을 찾아간 불쌍한 사람들은 옆에 서 있어줄 '평온하고 너그러운 변호사'를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잘 갖추어진 조직'에 대면하게 될 것이다. 그것도 그 어느 사람이라도 품짝없이 '감탄' 할 수밖에 없는 지식과 정보로 무장된 조직논리를 갖추고 있는 조직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보다 많은 지식과 정보의 축적은 개인이나 조직을 참으로 편안하게 만든다. 특히 자신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왔기에 쉽사리 설득되지 않으려는 타인을 굴복시키기에는 다양한 정보와 풍부한 지식만한 것은 없다. 민변이 정보와 지식을 풍부하게 축적하고 운용하면 할수록, 충분한 의사소통 속에서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구하려는 과정이자 목적인 법과 사법제도를 정보든 지식이든 논리든 종류야 어떻든 힘에 의한戰場으로 바꿔놓게 되고, 민변은 양손에 삼지창과 철퇴를 든 맹장이 될 것이다. 민변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식이나 정보보다는 의지나 양심과 가까운 사람들이이다. 이제 이런 의지와 양심밖에 없는 불쌍한 이들이 민변을 찾아가서는 '풍부한 지식과 정보, 그

리고 영통한 논리'를 통한 지식과 정보로 전환된 '의지와 양심을 주제로 한' 민변의 강의를 받아야 하고, 때로는 시험도 치루어야 할지도 모른다. 민변의 축적된 지식과 정보로부터 도출된 수 없이 많은 단정적 문제가 발휘하는 'is의 폭력성'을 감수하면서.

풍부한 정보와 지식은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되어 질 수는 없다. 세계 각국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필요 한 것이다. 세계 각국으로 범위를 넓히고 연대하는 것은 민변을 궁색함과 초라함에서 벗어나서 세련되게 할 것이고, 민변의 주장이나 활동을 보다 보편적이고 힘있게 보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를 주장하는 누구든지 그럴 수 있듯이, 유창하게 외국어를 구사하면서 우리나라보다 못살거나 인권보장이 형편없이 보이는 후진국에 대해서 보일 듯 보이지 않을 듯 우월감에 쌓인 없신여김이나, 제도나 사회보장이 비교적 잘 정비된 서구 국가들에 대해서 배운다는 열린 마음에 깊이 자리잡은 팬한 열등감에 쌓인 자조감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민변이 세계화하면 할수록, 민변은 잠깐씩 주어진 외국과의 만남의 시간을 성실하게 보낼 것이고, 결국 그 비교와 연대의 결과로 우리 사회에 돌아와서는 시민운동이니 참여민주주의 등을 선언하듯 언명하며 대의제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문제라고 지적하게 될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식의 민주적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민변에 찾아가서는 꾸지람을 듣거나 민변식의 의식화 교육을 접수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민변을 찾아오지 말아야 하고. 이렇게 해서 참여, 연대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더 어렵고 불쌍한 이들이 참여할 기회를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정비된 조직, 풍부한 정보와 충만한 지식, 모든 세계에 대처할 수 있는 확장된 영역, 이제 민변은 3박자가 잘 들어맞게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어디로 가란 말인가. 민변의 조직논리와 목

적에 포함될 수 없는 사람, 아무리 해도 지식과 정보를 갖출 수 없어 의지와 양심뿐인 사람들, 세계화와 참여민주주의에 근처에도 못가는 삶과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민변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할 것이고, 민변을 찾아갈 수 없다. 민변이 수많은 회의를 통해서 민변의 틀을 정하면 할수록, 그 틀에 들어가지 못하는 '셋째간 사람, 고집불통의 양심자, 예의도 모르는 처세박약자, 변호사를 꾸짖는 아나키스트, 그리고 문민정부의 멀쩡한 신사화에 짓밟힌 무지랭이들'은 이전에 민변에 두었던 마지막의 기대와 희망을 거두어 들일 것이다. 그리고 민변은 한 마리의 양을 버리고 99마리의 양을 찾아가다가 결국은 집에 돌아오니 한 마리도 못 데려온 꼴이 될 것이고.

다음으로 이제는 좀더 가깝게 생각해보자. 이제 곧 문민 김영삼 정부도 마감을 앞두고 있다. 지난 5년 민변은 많은 일을 했다. 군사정권 시절 민변이 '대담하고 강건하게' 행했던 많은 일 민큼이나 조금은 색다른 방향의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민변은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의 실책에 대하여 강력한 비판세력이었고, 때로는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며, 그것의 실현을 위한 준비와 시도의 노력을 보였고, 때로는 시민운동 각 부분의 핵심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임명이든 선거를 통해서든 공직을 직접 담당하거나 공직 담당자와 밀접한 연계를 갖기도 하였다. 그리 나쁜 일은 아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서, 그 누구이든 어렵고 힘든 이들의 옆에 서서 함께 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왔던 민변의 변호사들이 공무를 담당하게 된다는 것은 좋은 일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애시당초 민변의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의도의 존부와 상관없이 말이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좋다고 하는 의미는 변호사에게, 특히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력적으로 활동하는 민변 변호사에게 늘 가까운 곳에 있어 쉬 빠

지기 쉬운 유혹으로 있는 정치, 정확히 말하면 권력에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가 정치적 활동을 하고 권력적 공직으로 나아가는 것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니다. 정책 비판과 대안 제시, 시민운동의 중심부로서의 활동, 그리고 공무의 담임 등이 민변에서 좋은 의미로 있기 위해서는 남아 있는 자들의 고집스러운 희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변의 변호사들 중에서 공적인 지위를 갖고 높은 곳으로 가는 회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남아 있는 다른 회원들은 보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는 노력은 해야 하지 않을까. 공직으로 나아간 민변의 회원들은 본래의 민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남은 이들은 더 밑으로 더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내려가 온통 절망뿐인 소외지역에서 희망을 찾았주는 노력을 함으로써 정치로 떠나버린 회원들을 도와준다면 민변의 활동은 좋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와 권리, 그리고 전략적 판단으로 떠난 사람들 을 줄이나 서고 다니는 시류배라고 탓하지 말고, 그렇다고 소 닭보듯이 내팽개쳐버리고 침묵으로 시위하지도 말고, 그들이 할 수 없고 하기 싫어서 떠나버렸던 절망의 땅을 일구어내서 결국 그들을 도와주고 민변이 함께 가야 하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민변과 관련해서 '미래'의 이야기를 해야겠다. 민변의 앞날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흑자는 법은, 법조인은 과거에 생긴 분쟁이나 사건들에만 관심이 있어, 과거의 사건을 갈갈이 분석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그것에서 책임과 응분을 찾아내려 하기 때문에, 늘 과거지향적이며 심지어는 '과거로 먹고산다'라고 자조하기도 한다. 그래서 법조인은 늘 보수적이고 기껏해야 과거를 들추어내는 실증적 낭만주의자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물론 일반 법조인과 민변을 동시에 싸잡아서 같은 증상을 가진 환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지는 몰라도,

주로 다루는 대상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과거에 산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김영삼 정부가 어떻게 하나 숨죽이며 지켜보다가 실책이 나오기가 무섭게 이미 과거의 것이 되어버린 실책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모습은 아무리 보아도 그리 상쾌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세상에 변할 수 있고 변하는 것은 결코 '과거'가 아니다. 과거는 그저 있는 것이고 변할 수 있고 변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이다. 법의 진정한 의미는 과거를 둘추어내어 양심과 불화를 현시화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과거에 평화라는 현재와 미래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것이다. 물론 끊임없는 연속상의 것을 과거니 현재, 미래로 나누어 말하는 것이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이 '변할 수 있는 희망'이라고 하면 분명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희망이다. 이전에 민변은 그럴 때도 있었다. 우리 사회의 과거의 음울함, 폭압, 더럽고 치사한 것, 그리고 금방 지나고 나면 과거의 것이 되어버리는 현재의 실책과 잘못 등을 끄집어내어 이리저리 분석하고 기성의 법률에 맞추어보아 꾸짖고 당당하고 큰 소리로 책임을 추궁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렇게 실컷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후련함은 그리 쉽게 얻어지지는 않았다. 아무리 과거를 살살이 뒤져서 잘잘못을 가려 놓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매순간 현실에서 미래로 향한 또 다른 한 발짝의 발돋움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미가 있으려면 과거는 자신을 성찰하는 그리움의 대상인 것이고, 미래는 희망이라는 그리움의 대상인 것이어야 할 것이다.

미간이 곤두선 채로 민변을 찾아간 사람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건네주고, 언젠가 '민변'이라는 단어를 상기하면서 입가에 편안한 웃음이 배어나게 하는 민변을 기다려본다.

인권운동사랑방을 찾아

박래군 사무국장

이 유정

인터뷰 일시 : 1997. 10. 31. 18:30

인터뷰 장소 :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실

인권운동사랑방을 찾은 것은 갑작스럽게 바람이 썰쓸해진 10월의 마지막 날 저녁이었다.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실은 대학로의 번화가에서 약간 멀어진 큰 길가 건물의 4층에 자리잡고 있으며, 저녁 시간인데도 서준식 대표와 박래군 사무국장님 그리고 몇분의 상근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셨다. 필자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인권정보자료실로 안내되었는데, 2평 남짓한 좁은 자료실 안에 천장까지 닿을 만큼 빽빽하게 많은 자료들이 주제별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 인권운동사랑방의 조직구성은 어떻습니까?

박 :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 산하에 홍보실, 교육실, 인권정보 자료실, 총무부가 있으며, 상근자는 서준식 대표를 포함하여 모두 7명이고 자원봉사자들이 10여명 있습니다. 후원회 조직이 아니라 활동가 중심의 조직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 인권운동사랑방의 설립 배경과 목적은 무엇입니다.

박 : 인권운동사랑방은 1992년 몇몇 활동가들이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기존의 인권운동이 독자적인

영역이라기보다는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인권운동 자체의 전문성이 없다는 점, 운동이 전문적으로 분화됨에 따라 전체적인 인권상황을 포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권운동단체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 의견을 같이하고 1993. 3. 전문적 인권센터인 인권운동사랑방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 : '전문적 인권센터'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입니까.

박 : 외국에는 엠네스티와 같이 인권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러한 단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기존의 인권운동은 양심수 문제, 고문사건 등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일회적이며 매우 즉자적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고 이를 실제 인권운동에 활용하는 등의 과학적인 작업이 필요하며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인권운동사랑방이 지향하는 '전문적 인권센터'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아직 '센터'라고 부르기에는 규모가 작고,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 인권운동과 사회변혁운동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 : 사회변혁운동은 정치적인 영역에서 체제의 변화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운동이며, 인권운동은 사회변혁운동의 범주에 속해 있지만 동시에 체제 내에서 보장된 권리를 수호하고, 권리의식을 고양하여 인간중심의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이라는 개념은 자본주의 체제, 시민사회 탄생과 더불어 탄생한 것으로서 처음에는 자유권이 가장 중요시 되었으며, 사회가 발전하고 권리의식이 고양됨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권리로 그 영역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인권의 개념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발전해가는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는 사회변혁운동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권의 개념, 철학적인 부분에 관한 연구가 전무하다시피 하고 인권에 관한 논의가 체계화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인권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한다는 것은 저로서도 매우 어렵습니다만 인권운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인권의 진보적이고 역동적인 성격, 인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간다는 측면을 주목하고 있으며, 인권운동은 인권옹호의 차원에서 인권개념의 증진과 신장의 차원으로 발전되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박 : 흔히들 인권운동사랑방이 「인권하루소식」을 발간하고 인권영화제를 개최하는 단체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활동 이외에도 인권교육사업과 인권정보자료실 운영, 각 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등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 : 「인권하루소식」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 : 「인권하루소식」지는 팩스신문으로 1993. 8. 발간된 후 1997. 11. 5. 현재 1천호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인권전문신문은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사를 찾아내는 작업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인권하루소식」이 「한겨레신문」과 다를 것이 없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일반언론이 외면하는 인권문제에 관한 기사를 신기 위해 사회단체에 일일이 전화를 걸고 현장을 찾아 다니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소식지가 꾸준히 발간됨에 따라 널리 알려져 제보, 보도요청 등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는 「인권하루소식」이 인권에 관한 소식을 단순히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기별 인권상황과 쟁점을 정리하는 인권 역사의 산 기록이 되고 나아가 인권운동의 구체적인 방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까지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상황에 대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분석기사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인권하루소식」이 1천호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발간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기르고 인권에 관한 자료들을 축적하고, 필요한 노하우를 체득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더욱 발전된 모습을 갖추게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 : 인권정보자료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박 : 인권정보자료실은 인권운동사랑방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인권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하여, 분류·보관하고 이를 가공하여 필요한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인권관련 운동이 있었으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와 관련된 자료들이 급조되고 사건이 끝나면 분실되기를 반복하였고, 이러한 자료를 공유할 수도 없었으며 그 성

과들이 축적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니 활동가들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건 해결에 급급하여, 연구를 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뒤치다끼리를 하는 데 그치고 말았던 경우가 많이 있었지요. 과학적인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례를 수집하고 관리하여 이를 토대로 대안을 마련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며, 인권정보자료실 운영은 이러한 인권운동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토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각종 인권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이를 150여개 주제어로 분류·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단행본은 1,000여건, 날장 자료들은 10,000여건 정도인데, 주제에 따라 자료가 많은 것도 있고, 아주 적은 것도 있습니다. 그 만큼 인권문제가 편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인권운동은 자유권 침해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인권정보자료실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박: 정보가 필요한 분은 복사비만 지불하고 언제든지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이텔의 참세상에서 인권자료센터를 선택하시면 주제별로 목록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는데 여기서는 「인권하루소식」과 목록정보 검색, 「인권하루소식」의 주요기사를 영문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사랑방 홈페이지는 <http://www.interpia.net/~rights>, 인권영화제 홈페이지는 <http://www.arumnara.com/shuriff>)

이: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사업, 이란 무엇입니까?

박: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과 학기중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전공실습교육이

있으며, 그 이외에도 인권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 공개강좌, 연수프로그램, 대학생과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교육, 강연 등이 있습니다. 대학생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은 수강을 원하는 학생들이 신청을 하여 이루어지는데 인권의 개념, 인권의 내용, 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등의 내용을 가지고 강연, 토론회, 게임의 형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어린 고등학생들도 흥미를 가지고 참가하며, 교육효과도 높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학생들을 상대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이는 인권에 대해 알 권리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인권교육 교재를 개발중에 있으며, 알기 쉬운 인권교재 시리즈를 출간할 예정입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박: 사회복지학과 전공실습생들이나 일반 대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일하는데 인원의 변동은 있지만 대개 10여명 가량이며, 일주일에 2~3회씩 사무실에 나와 자료를 분류하고, 영문자료를 번역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인권하루소식」지의 취재를 돋보기자의 역할도 합니다.

이: 인권영화제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박: 처음에는 인권에 대한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영화를 매체로 일반인들이 인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인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화」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지적도 있었고, 인권운동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단계가 왜 영화인들이 해야 할 인권영화제를 개최하느냐는 등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또한 영화제를 개최하는 일 자체가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모되는 까닭에 영화제 개최만으로도 매

우 벅찬 형편이며 목적한 대로 교육사업으로서의 성과를 충분히 거두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인권영화제 준비를 하는 데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요.

박: 우선 영화를 선정하는 작업이 무척 어렵습니다. 영화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작자들이나 배급업자들과 일일이 교섭하여 영화제 취지를 설명하고 영화 상영에 대한 승낙을 받은 후 수많은 영화를 밤을 새워가며 직접 보고 상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영화를 선정하는 데만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상영장소의 결정, 필요한 물품의 준비, 홍보작업 등을 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규모로는 영화제를 개최하는 일 자체만으로도 무척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1996년과 달리 1997년에는 인권영화제 개최 장소가 경찰에 의해 봉쇄되는 등의 수난을 겪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 1996년 인권영화제는 사전심의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고 난 직후에 개최되어 매우 호응이 높았으며, 1주일에 관객 15,000명을 동원하는 등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당시는 이러한 종류의 영화제가 처음이라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고,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는 불허하였지만 사실상 행사 자체를 묵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에는 대규모의 영화제들이 여러 곳에서 개최되는 바람에 영화팬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으며, 영화 진흥법이 통과되어 사전심의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문화체육부가 심의제도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인권영화제를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더구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안기류가 형성되어 안기부에서 영화〈레드헌트〉를 문제삼는 등 인권영화제를 탄압하였고, 교육부와 경찰에서도 한총련으로 대

표되는 학생운동이 영화제 추진세력과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학교 내에서의 행사를 원천봉쇄하고 전원을 차단하고 관람객들을 검문검색하는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화제 개최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때문에 영화제를 관람하려온 시민들이 불심검문을 하는 것을 보고 그냥 돌아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 인권영화제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 위와 같이 인권영화제가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는다는 사실이 언론에 널리 알려지면서 오히려 인권운동사랑방과 인권영화제를 널리 알리는 홍보효과가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정부가 인권영화제를 원천봉쇄하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보도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인권현실이 극명하게 드러났던 것지요. 97년에는 만화, 소설, 영화 등 문화에 대한 탄압이 극심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인권영화제의 성과라고 한다면 일반인들이 인권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겠지요. 또한 표현의 자유와 관련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였다는 점과 소개되지 않은 영화들을 상영함으로써 영화운동에 기여하였다는 점도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반인들이 인권영화제를 통하여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박: 한 가지 예로 동성애자들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는 기피와 혐오의 대상이었지요. 동성애자의 권리와 같은 개념이 발달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권영화제에서 동성애자의 인권문제를 다룬 영화가 상영되자 동성애

자의 문제를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 했고, 동성애자들의 인권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탄압으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퀴어영화제와 같은 것이 생기기도 했고, 동성애자들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인권영화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인권에 대한 문제를 알려 관심을 유도하고 그로 인하여 인권의식을 높이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앞으로도 인권영화제를 계속 개최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박: 계속 개최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인권운동사랑방이 주체가 되어 영화제를 계속 개최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누군가 다른 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궁극적으로는 영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인권영화제를 개최할 만한 단체가 없고, 누구든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인권운동사랑방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국장님의 경력과 사회단체 실무자로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박: 1981년도에 연세대학교 국문과에 입학하여 민주화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강제징집, 노동운동투신, 구속, 석방 등 개인적으로는 결코 순탄치 못한 80년대를 보냈고, 1988년부터 유가족협의회에서 사무국장으로, 1993년부터는 문국진과 함께 하는 고문피해자 모임에서 일을 하였고, 1994. 8.부터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무엇보다도 활동가들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연대가 필요한데, 전문가들과의 결합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의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인권운

동사랑방의 역량 부족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상하시는 것처럼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이것은 모든 사회단체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문제로서 부차적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민변 회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 민변의 회원들 중 약 40~50명 가량이 인권운동사랑방의 자문위원으로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전문가와의 연대가 필요할 때 시간이 없는 관계로 구체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민변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으나, 초기와 같이 열정적인 모습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면이 있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변 내의 각종 위원회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사회단체와의 연대에 소홀해지는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민변 회원들이 보다 사회단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을 부탁하고 싶으며, 인권운동사랑방에서도 전문가 단체인 민변과 효율적이고 구체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인 변호사와 재일 한국인 변호사의 교류회에 출석하여¹⁾

이와기 유타카(오오사카변호사회 변호사)

번역: 임 종인

1. 글을 시작하면서

'제1회 인권과 평화를 위한 일한법률가 교류회' 이틀간의 일정이 끝난 후인 96. 11. 3.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 지하 회의실에서 한국 본국의 변호사(이하 본국변호사라 함)와 재일 한국인 변호사(이하 재일변호사라 함)의 교류회가 열렸다. 참가자는 본국측이 십수명, 재일변호사가 7명(배훈, 백승호, 은용기, 김용개, 조성철, 박현수, 윤영화), 참관인으로 참가한 우리 일본인 변호사가 4명(아즈사와, 다나카, 우에야나기, 필자)이었다.

2. 주제 발표

먼저 참가자들이 간단히 자기 소개를 하고, 이 교류회에 참가한 동기 등을 말하였다.

본 주제에 들어가, 먼저 재일변호사인 배훈 변호사²⁾가 「재일 한국 조선인의 법적 지위」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극히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발표해 주셨다.³⁾

- 1910년 한일합방 후의 역사적 경과로 현재 약 65만명의 재일 한국 조선인이 있다는 것.

- 제2차 세계대전 후 그들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변하여왔는가.

- 그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법적 문제로서 교원채용, 공무원 채용, 지방자치단체 참정권 등이 있다는 것.⁴⁾

- 영주권을 가진 재일 한국 조선인과 언젠가 본국

1) 역자주: 이 글은 96. 11. 2.~3.에 있었던 한일법률가교류회에 참석한 일본 변호사들이 쓴 「일한법률가교류회 보고서」에 실린 글 중 하나이다. 일본측은 97. 10. 이 보고서를 민변에 보내왔다. 이와기 변호사는 이 글의 번역을 기꺼이 승낙해주었다.

2) 이 분은 나와 사법연수소 40기 동기생으로, 수습생 시절에 「정주외국인과 인권의 국제화연구회」를 조직하였는데, 나도 그 연구회에 참가해서 공부했다.

3) 「재일 한국 조선인」이라는 용어는 북조선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포함한 호칭으로 사용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권에 대하여 94. 2. 28. 최고재판소 판결은 헌법허용설을 취하였다.

에 돌아가야 할 한국인(New Comer)와는 의식면에서나 요구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

- 재일동포가 어떠한 지위에 놓여 있는가는 만주사변 후 15년 전쟁이나 조선침략을 일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문제와 뿐리가 같고, 한국에도 큰 문제라는 것.

다음에 본국 축 변호사인 유옥 변호사가 「재일한국인의 국내법상 지위」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유변호사는 발표에 앞서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하여 정리된 자료가 없어 발표 논문을 쓰는데 정말 힘들었다는 말을 먼저 하였다.

- 한국의 재외동포, 재외국민은 중국에 192만, 일본에 70만, 미국에 153만 등 전세계에 500만이나 있고, 이는 한국인구의 1할에 해당한다.

- 재일한국인은 재외국민이고 1980년 헌법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의무가 규정되었다.

- 그러나 재외국민은 병역, 납세, 선거권 등의 면에서 특수성이 있으므로 개별적인 청취를 통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한 다음 필요한 법개정등을 하여야 한다.

- 또 재외국민의 참정권, 재일한국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세법상의 문제 등 몇 가지의 다른 점을 짚어보았으며,

- 마지막으로 재일한국인 문제에 대하여는, 어디까지나 모국의 관점으로 재일한국인들 입장에 서서 동화되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을 보호하여야 하며, 현재 직면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그들의 희망을 잘 들어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 논문 또한 대단히 힘을 들여 쓴 노작이었다. 다만 이 논문이 시간 관계로 일본어로 번역되지 못한 것이 유감이었다.

3. 질의 및 토론

논문 발표 후 주로 배변호사의 발표에 대한 질문과 의견을 중심으로 자유롭고 활발한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은 여러 면에서 진행되었는데, 선거등 제도적인 것부터 시작하여 '아이엔티티'나 '민족성' 이란 무엇인가 등의 커다란 문제로까지 이야기가 전진되었다. 모든 것을 소개할 수는 없으므로 몇 개의 논점에 대하여 내 나름대로 이해한 범위 내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가. 재일한국 조선인의 본국과 일본에서의 참정권

본국변호사가 '재일 사람'들에 대하여 본국에서의 참정권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대하여 배변호사는 "참정권은 현실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회의 규범을 적용받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일본의 참정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본국의 참정권이 필요없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으나 실익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예를 들면 일본을 하나의 선거구로 보아 재일 한국조선인에게 선거권, 피선거권을 주면 어떠한가"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배변호사는 "예를 들면 일본에 사는 우리들은 소비세가 3%에서 5%로 되는 것에 대하여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10%인 한국의 부가가치세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해서는 안될 것이다. 피선거권에 대하여도 재일한국인의 대표로 당선되어 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문제이고, 오히려 재일한국인이 이해관계를 가진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할 때 특별히 의견을 듣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부권을 주는 편이 훨씬 의미가 있지 않는가"라고 답변하였다.

나. 귀화가 옳으느냐 그르냐

귀화하는 것이 옳으느냐 그르냐에 대하여, 배변호사는 "4세, 5세까지 한국 국적을 갖는 것은 재일한국인 만의 특수한 모습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한국 출신 거주자는 특별한 고민 없이 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국적 취득과 귀화는 같은 의미이고 이를 위하여는 엄격한 심사가 행해질 뿐만 아니라, 이름까지 바꾸게 하고, 자신을 부정하지 않으면 차별은 없어지지 않는다. 내 경우에도 사법연수소에서 교수에게 '당신 같은 신분은 3개월에서 6개월 걸리면 귀화가 인정되는데 신청할 의사 있는가'라는 말을 들었다. 거기에는 일본에서 반항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미리 일본인으로 받아들여두자고 하는 발상이 있다. 귀화하면 내가 요구하고 있는 선거권도 취득할 수 있지만 나는 현재 귀화할 의사はない"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시민권과 같이 '동화'를 거부하면서 단지 일본의 국적만을 취득할 것을 주장하는 '적극적 국적 취득설'에 대하여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배변호사는 "그러한 생각으로 귀화하는 사람을 부정할 의사 있는가? 나 자신은 일본의 현상을 보면 그러한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배변호사는 "원래 국적문제는 그 거주지에서 기본적 인권이 지켜진다면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것이다. 어느 나라에서 살든 똑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다. 재일한국 조선인의 정체성

재일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하여 재일변호사 한 사람씩 의견을 말했는데 각각 정도나 형식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자신의 정체성 확립을 고민하여

왔다"고 말했다.

어느 재일변호사는 "내가 본국의 친척집을 방문했을 때 친척으로부터 '아무리 사법시험에 합격했어도 한국어도 말할 줄 모르는 놈은 바보다'고 욕을 먹고, 나는 일본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지금 나는 나를 아이누계 일본인이나 유구계 일본인과 똑같이 한국계 일본인이라고 해도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변호사는 자신의 경험을 섞어가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무척 인상깊었으므로 부정확할 지 모른다. 배변호사가 한 말의 줄거리를 소개한다. "나는 고교때까지 일본 이름을 쓰고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친한 친구에게조차 털어놓을 수 없었다. 털어놓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했는데, 다 털어놓은 뒤의 해방감을 뭐라 비유할 수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잘했구나고 마음 속으로 생각했다. 대학에 들어가 일본 이름 아닌 배씨성을 사용하였는데 그 때는 '하이'라고 일본식으로 발음하였다. 사법연수소에 들어가서부터 처음으로 '배'라고 한국식으로 발음하였다. 나 자신이 그때그때마다 고민하여 자신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느낀 것을 선택하였다. 마지막까지 일본인같이 행동하는 사람, 귀화하는 사람 등 여러 사람이 있어도 좋다고 나는 생각한다. 인간은 기본적 인권으로 행복추구권이 있고,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는 그 사람 자신이 결정할 수 있고 또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의 큰 아이는 한국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한국에서 일시 일본으로 온 한국인의 아이들도 함께 다니고 있다. 나와 곧 한국에 돌아갈 아이들의 보호자와는 학교에 요구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 둘째 아이는 이사등의 이유로 집에서 가까운 일본 공립학교에 다니는데 처음에 '배'라는 성을 사용했을 때 '이주 이상한 성이다'고 일본아이들로부터 괴롭힘(이지매)을 당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 아이에게 '한국식으로 팽이 돌리는 방법을 가르쳐주라'고 충고했고, 아이가

일본아이들에게 이를 가르쳐주니, 일본아이들은 '대단한 외국인이다'고 하였고 그 후 내 아이는 인기인이 되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이는 주변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일 것이다.'

또 오끼나와에서 자랐고 지금은 고베에서 변호사를 하는 백승호씨가 "오끼나와에서 자신은 차별받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오끼나와 사람들은 오랫동안 일본인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제2차 세계대전 말기 미군과의 오끼나와전에서 일본군으로부터 버림받은 역사적 경험에서 재일한국인을 특별히 여기지 않는 분위기가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라. '민족성'의 유지

이에 대한 배변호사의 발언도 인상 깊었다. 그는 "내가 보기에는 일본인과 한국인은 모두 민족에 집착하는 면에서 아주 닮았다. 민족성이나 민족의 전통은 시간에 지남에 따라 변화한다. 현재 한국인들의 옷이나 머리 모습을 조선시대 사람들이 보면 '민족 전통을 잃어버렸다'고 화를 내거나 탄식할 것이다. 재일한국인들도 이렇게 오랜 기간이 흐르면 민족성 자체가 변화한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본국에의 귀속의식과 애정 정도가 아닐까. 재일한국 조선인의 국적은 같은 한국이지만 이 사람들 중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다.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다. 한국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한국에 대하여 강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주 무관심한 사람도 있다. 위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좋은 일이고, 민족이나 국가가 먼저 있을 리 없다.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배변호사의 말을 중심으로 소개하였으

나, 많은 재일변호사들이 "나는 세계인, 지구인으로 살고 싶고, 민족성은 여러 개성 중 하나일 따름이다.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를 생각하며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을 살려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다"는 뜻을 말하였다.

4. 토론 분위기와 느낌

재일변호사는 토론 중 일본어와 한국어가 섞여 일본어로 이야기를 시작했던 사람이 도중에 한국어로 말을 하거나, 스스로 통역하면서 말한 사람이 이야기 도중에 어디까지 말했는가 알지 못하는 등 내용은 전지하면서도 내내 웃음이 그치지 않는, 편안하면서 스스럼 없는 분위기였다. 나는 재일변호사들이 한국어로 말할 때는 전혀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평소 만나는 재일변호사들이 생기에 넘쳐 한국어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은 한국과 깊은 관련이 있고, 자신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계인' 이구나 하고 신선한 감동을 받았고 또 경의를 품게 되었다. 또 돌이켜 나 자신 아직도 '일본인'이라는 좁은 시야에 머무르고 있는 것 이 아닌가 하고 반성하였다.

5. 우정

토론회를 마치고 가까운 불고기집으로 2차를 가서 본국변호사 및 재일변호사와 의미 있는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어느 본국변호사가 "이런 모임에 당신들 일본변호사가 참석한 것은 의외였습니다"라고 말하여 얼굴이 뜨거웠다. 2차에서도 열기 가 식지 않아 3차를 갔다. 여기서 가라오케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아주 흥이 났다. 마지막으로 모두

어깨를 걸고 노래를 부른 다음,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호텔로 돌아오니 시간은 벌써 밤 11시반이 지나 있었다.

이 교류회에 원래 우리는 참가할 예정이 아니었으나, 참가해보니 같은 세대의 젊은 한국 변호사들과 마음을 통할 수 있었고, 또 재일변호사들과 친정한 친구가 된 기분이었다. 이 모임에 참가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자료 및 성명서

편집자 주: 이 글은 민변등 5개 단체 공동 주최로

지난 11월 7일 성공회 대성당에서 개최한 <양심수문제 긴급 토론회>의 발제문입니다.

상상 및 토론

양심수 이해를 위한 시론

박 원 순

1. 잊혀진 이슈, 잊혀진 囚人

“잊혀진 이슈. 그러나 끝나지 않은 논쟁이 있습니다. 문민정부 들어 사라지길 기대했고 그렇게 믿었던 논쟁입니다. 양심수문제입니다. 국내인권단체들은 그 수를 980여명이라고 주장하며 석방을 요구하고 있고 국제인권단체들도 매년 거론하고 있으나 우리는 잊고 있었습니다. 문민은 문명을 말합니다. 스스로 문명국가임을 자리매김한 우리로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박준영,『시사월간 WIN』, 1997.10.)

2. 최근의 양심수 논쟁

- 논쟁의 전개와 진전

가. 양심수와 공산주의 지지자

“우리가 집권하면 공산주의자가 아니면서 조국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람들을 석방, 사면하겠다. … 양심수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은 안되고, 애국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 사람이다.”(김대중 총재의 1997. 10. 31. 저녁 광주지역 TV토론)

나. 공안기관은 비양심집단?

“김총재의 발언은 실정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 ‘조국을 사랑한 사람’의 뜻을 잘 모르겠지만 사면을 할 경우 수많은 사람이 풀려나고 사면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리나라에 양심수가 한 명도 없다는 게 정부의 공식입장 … 공안사범들을 조국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풀어준다면 그동안 체제를 지켜온 공안기관들은 비애국적, 비양심적 집단이라는 얘기다.”(검찰관계자의 직후 논평, 1997. 11. 1.『조선일보』 1면 기사)

다. 대통령과 검찰, 누가 더 센가?

“공산당이 아니면서 앤네스티 기준으로 그동안 종교계에서도 사면을 요구해온 사람이 검토의 대상이며 그 경우에도 검찰의 심사를 당연히 거쳐야 한다.”(김대중 총재의 1997. 11. 2. 평화방송 대담)

라. 민주주의 가치부정은 누가?

“여야의 양심수 공방이 김대중 총재의 사상 시비로 이어지며 확전되고 있다. 신한국당과 국민신당은 3일에도 김총재의 사상성을 끈질기게 추궁했다. 신한국당 김영일 기조위원장은 ‘김총재의 발언은 자신에게 내재된 이념이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이라며 김

총재 사상 문제는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하고 우리는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세를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 국민신당의 이인제 전 경기지사도 가세했다. 그는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한 사람들을 양심수라는 이름으로 사면 운운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거들었다."(1997. 11. 4.『중앙일보』)

마. 좌경적 견해 가진 자도 양심수?

"좌경적 견해를 가진 사람까지 포함해 한국의 많은 죄수들이 양심수의 범주에 들어간다. … 국가보안 법에 의해 감금된 모든 죄수들이 폭력을 지지했으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었다는 한국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지난 61년 양심수의 개념을 이미 명확히 정립했으며 이는 유엔등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양심수는 폭력을 지지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신념이나 인종 언어 국적 사회 경제적 지위 때문에 감금된 사람들을 뜻한다. … 한국에서는 올해만도 500명 이상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었으며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폭력이 아니라) 단지 고무찬양과 이적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되었다."(1997. 11. 4. AMNESTY INTERNATIONAL 성명서, 1997. 11. 5.『한겨레신문』기사)

바. 양심수 그림자도 없는 문민정부?

"양심수문제는 과거 억압구조 아래서는 현실적인 문제였지만 문민정부에서는 문제가 안된다. … 문민정부 이후에는 억압체제라는 것은 그림자도 없다. … 내부신념을 폭력으로 표현해 법의 제재를 받은 사람은 양심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97. 11. 4. 국민신당 창당

직후의 이인제 후보의 기자회견)

사. 정치물을 덜 들어?

"김대중 총재의 양심수 석방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과 검찰·법무부 중심으로 벌어지는 가운데 이회창 신한국당 총재가 2일 '진정한 의미의 양심수라면 정치인 사면과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밝혀 대선을 앞둔 각 후보들의 양심수 논쟁이 복잡하게 펼쳐지고 있다. … 이총재의 이날 발언은 … 김총재의 발언을 곧바로 색깔론으로 몰고간 이사철 대변인의 전날 성명이나 양심수가 없다는 법무부의 주장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 그러나 이총재는 자신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다시 '양심수가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해명하고 나서 …"(1997. 11. 3.『한겨레신문』기사)

3. AMNESTY INTERNATIONAL과 양심수 개념의 발전

가. 양심수의 정의

"폭력을 주창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신념이나 인종 언어 국적 사회 경제적 지위 때문에 감금된 사람들"

Considering that every person has the right freely to hold and to express his or her convictions and the obligation to extend a like freedom to others, the object of Amnesty International shall be to secure throughout the world the observance of the provisions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by:

a) irrespective of political considerations working towards the release of and providing assistance to person who in violation of the aforesaid provisions are imprisoned, detained or otherwise physically restricted by reason of their political, religious or other conscientiously held beliefs or by reason of their ethnic origin, sex, colour or language, provided that they have not used or advocated violence(hereinafter referred to as 'Prisoners of Conscience');

b) opposing by all appropriate means the detention of any Prisoners of Conscience or any political prisoners without trial within a reasonable time or any trial procedures relating to such prisoners that do not conform to internationally recognized norms;

이것은 1979년 9월 6일에서 9일 사이 벨기에 Leuven 회의에서 제12차 국제위원회(12th International Council)에서 채택한 규약(Statute of Amnesty International)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심수 조항이다. 이 규정에서 양심수의 조건은 두 가지이다. 첫째, 폭력을 주창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advocate은 단순히 지지하는 것과는 달리 폭력을 선동하거나 폭력에 호소함을 뜻한다. 둘째, 신념·언어·국적·인종·경제적 지위 등으로 인하여 감금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신념이라 함은 어떠한 내용이든 상관이 없다. 특히 정치적·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의 양심수를 구성한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앤네스티가 석방운동을 벌이는 대상은 단순히 양심수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기타의 정치범이라 할지라도 앤네스티는 그가 국제적인 인권기준이 정하는 적법절차를 유린당한 경우에

는 석방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확립된 기준이라 함은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유럽인권 협약 등에서 명문화로 규정하고 있거나 명문화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국제적인 관습법이 된 여러 규범들을 포함한다.

나. Nelson Mandela의 Case

그러나 1964년 Nelson Mandela를 둘러싸고 내적인 논쟁을 야기했다. 그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의해 그 악명높은 Robben Island에 수용되어 있었다. 그 직전인 1962년 그가 아프리카 노동자들의 스트라이크를 조직하고 여권 없이 출국하려 하였다는 혐의에 직면하였을 때 그는 양심수로 지정되었다. 그는 근 10년째 정부의 인종차별정책에 반대하는 비폭력 투쟁을 지도하고 있었다. 여러 차례 그는 집회를 저지당했고 그의 운동에 제한이 가해졌다. 1964년 그는 사보타지 혐의로 다시 기소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영국그룹들은 현정부에 대한 폭력적 반대로의 전환이 그를 이제 더 이상 양심수로 지지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이 조치는 심각한 논쟁을 불러 일으켜 마침내 Amnesty가 모든 회원들에게 투표를 하는 지경이 되었다. 압도적 다수가 Amnesty는 폭력을 사용하였거나 선도한 사람을 양심수로 지정할 수 없다는 앤네스티의 기본원칙을 지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많은 앤네스티 회원들은 살아서 돌아올 희망을 잃어버린 만델라를 포기한 이 결정에 불만이었다.

마침내 타협안에 도달하였다. 만델라는 더 이상 양심수는 아니었지만 앤네스티는 그 재판이 불공정하고 고문이 사용되었거나 수형조건이 가혹하다면 당국에 탄원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타협은 그 후 여러 차례 사용되었고 논쟁의 원천으로 남았다.(Jonnathan Power,『Against Oblivion』,

Fontana Paperbooks, 1981, London, p.23~24)

다. 폭력개념을 둘러싼 논쟁

앰네스티는 폭력의 이슈에 관한 기나긴 논쟁을 치렀다. 그 죄목이 어떠하든간에 공정한 재판과 인간적 대우를 위해 다툴 것임을 그때마다 끊임없이 확인하였다. 한편, 아무리 그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폭력을 사용하였거나 선도한 활동으로 그가 객관적으로 기소되었다면 그 죄수의 석방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다. 앰네스티의 입장은 요약한 노트에서 앰네스티가 어떤 조건 하에서도 폭력을 반대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것은 그렇지 않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입장은 전적으로 공평하다. 앰네스티는 많은 회원들이 그러기를 바라지만 일반적 경제, 사회 또는 정치적 정의를 위해 일하도록 고안된 것이 아니다. 다만 부정의 개인적 희생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경찰이나 감옥당국이 폭력이나 암만적인 행동을 저지르고도 처벌받고 있지 않고도 그런 행동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이중의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초연합(above the fray) 입장은 실제로 있어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앰네스티 문건들을 정독해보면 예컨대 중남미에 있어서 앰네스티는 不義의 일반적 상태에 몰두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엘살바도르나 과테말라에서의 정치적 폭력은 정치체제의 일부가 되어 있어서 더 이상 그렇게 훌륭하고 명쾌한 차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모호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Jonathan Powell, 위의 책, p.24)

문: 정부당국은 일부 정치범 가운데 그들의 사상이나 이념의 폭력성을 강조해왔는데.

답: 만약 테러조직을 만들거나 폭력혁명을 공개적으로 추구하다 구속되었다면 양심수에서 배제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양심수로 봐야 한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억압체계에 항거하기 위한 물리적 충돌은 정당한 저항권 행사로 볼 수 있다.(1997. 11. 4. 『한겨레신문』의 방한중인 국제사면위 집행위원 Ross Daniels와의 인터뷰)

4. AMNESTY INTERNATIONAL에 의한 양심수의 지정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사무국은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 Research Department, Programme Department 그리고 Adminstrative Department 가 그것이다. 첫째의 Research Department가 가장 크다. 이 부서는 전 세계의 인권침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행사한다. 아프리카·아시아·아메리카·유럽과 중동을 관할하는 5개 지역별 분과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기획과 연구기능의 조정을 총괄하는 장이 배치되어 있다. 이 부서는 사적 또는 공적인 평범한 접촉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조사기능을 준비하고 참여한다. 또한 관심을 둔 특정 국가 안에서의 사태 발전에 대한 밀착 주시를 유지하고 각 지역의 보도를 모니터한다.(Yogesh Kumar Tyagi, Human Right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 A Case Study of the Amnesty International, A Dissertation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Philosophy of the Jawaharlal Nehru University, New Delhi, 1979, p.66)

이 조사국에서 수집·분석된 자료에 따라 앰네스티 규약이 정하는 양심수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한다. 그 판단이 이루어지면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각 그룹이 그 양심수를 지정(adopt)하게 하고 동시에 각 그룹은 그 양심수에 대한 서류(prisoner dossier)를 받는다. 이것은 인쇄된 파일로서 주로 case sheet, confidential information sheet, statute of case sheet, 일반 지시사항, 권고된 행동, 구조활동, 정부 기구리스트 그리고 배경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 한국의 양심수

가. 법무부·검찰의 주장과 그 근거비판

- 실정법이라는 이름의 폭력과 국제사회의 입장

한국에는 양심수가 진정으로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그 숫자는 얼마나 되는가. 먼저 양심수의 존재를 먼저 살펴본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양심수는 물론 위에서 본 대로 앰네스티의 규정에 따른다.

검찰과 법무당국은 문제의 수인들이 실정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양심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앰네스티의 규정에 따르면 그 실정법의 존재와 위반여부는 전혀 기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에 따라 적법절차가 취해졌느냐 하는 점이다. 아예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즉결처형(extra-judicial execution)하거나 인민재판식의 형식적인 재판을 거쳐 처형하는 사례도 적지 않으나 실제 인권침해가 문제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정한 실정법의 협의 하에 기소하여

형식적으로 재판의 절차를 거친 다음 처형, 투옥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들이 모두 양심수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 근거법이나 절차 법이 과연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문제의 한국의 수인들에게 부과된 혐의는 대부분 국가보안법이고 이 법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유엔을 비롯한 세계 유명 NGO들의 판단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에 아무리 위반되었음이 증명되고 외형상 합법적 재판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앰네스티가 정의한 양심수일 가능성이 극히 높다. 참고로 유엔과 NGO들의 국가보안법에 관한 견해를 적는다.

“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이 국제인권규약(ICCP),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포함된 표현과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조항들과 부합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비폭력적 정치적 활동을 처벌하는 이 법의 조항은 제거되어야 한다. 현행법상 적이나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거나 이익을 주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조항¹⁾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 당국은 이 법을 침묵시키고 싶은 사람들을 향해 정치적 목적에 남용할 수 있다. 앰네스티는 한반도의 분단에 따라 야기된 군사적 정치적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결코 안보관련 법률의 제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에 해가 되지 않는 사람을 체포하고 구금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Open Letter from Amnesty International to Political Parties on the Occasion of the April 1996 National Assembly Elections)

1) 국제기준에 반하는 것은 단순히 고무·찬양·동조와 이적행위조항만이 아니다. 국가기밀수집·누설조항 역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여 국제인권규약에 위반된다. 이러한 애매한 조항과 사법부의 지나치게 관대한 해석에 의해 단순히 경부고 속도로가 4차선이라는 것(신귀영사건). 한국인 자장면을 즐겨 먹는다는 사실과 동아일보의 연감등 신문기사들(황대현사건) 도 모두 국가기밀로 판단된 점을 참고하면 모든 사실이 자명해진다.

“앰네스티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그들의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에 여전히 양심수가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올해(1997년) 6월 18일 벌간된 1997년 연례보고서는 한국에는 양심수를 포함해 450명 이상이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되어 있고 과거정권에 의해 형을 선고받아 아직도 수감되어 있는 정치범도 최소한 150여명이 있다고 밝혔다.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한국에 양심수문제가 남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례로 지난 95년 유엔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은 한국을 방문한 후 인권위원회에 한국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의 보고서에서 한국은 … 여전히 유엔인권기관의 주목대상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가보안법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규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신석호,『시사월간』WIN 1997. 10.)

- 공산국가 중국에서는 양심수가 없는가.

‘남북이 맞대결하는 우리의 상황에서 넓은 의미의 양심수 개념을 일반화하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이를 테면 북한의 사주를 받거나 이른바 주사파 범주에 드는 사람들을 양심수의 범주에 둘 수 없을 것이다.’(『한겨레신문』의 97. 11. 4. 사설 ‘양심수는 많다.」)

문: 공산주의자는 양심수가 아니라는 지적을 어떻게 보나.

답: 어떤 사상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자신의 사상이나 신념을 표현하다가 구속됐다면 양심수라고 할 수 있다.(1997. 11. 4. 『한겨레신문』의 Daniel Ross 와의 대담)

라. 양심수의 숫자

YS취임 이후 구속 양심수 현황 (민가협자료)

연도	총수	국보법
93	195	105
94	775	389
95	623	285
96	1,269	494
97	1,198	542(10.1.현재)

6. 김영삼 대통령의 용감한 발언, 그리고 식언

- 역사의 시계바늘은 거꾸로 가고 있는가?

1983. 5. 2. 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과거의 긴급조치 대신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나아가 국가보안법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하여 그들에 대하여 비판하고 항의하는 학생들을 처단하고 있습니다. … 인간이 인간에게 가하는 가장 야만적인 행위라 할 고문이 이 땅에 만연되는 것도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사법부가 증거로 채택하는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일반사건보다 학생사건과 반체제 활동관련 사건에서 정치범과 양심범에서 가혹하고도 비인간적인 고문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들 사건에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증거로 하여 중형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적용법률인 국가보안법이 일반적으로 확립된 국제인권기준에 위반된다.

- 당시의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중립적·독립적이지 못하였으며 공정한 적법절차가 보장되지 못하였다.

“로버트 케네디 인권센터의 제임스 실크씨는 60세 이상의 고령자 약 40명이 과거 정권 하에서 국보법으로 기소되어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다고 지적하며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 구속된 이들에 대한 처우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사례를 재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인권하루소식』 제461호, 1995. 8. 9.)

- 수형생활이 가혹하고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

“44년째 수감중인 세계최장기수 김선명(지금은 석방됨) 등 20년 이상을 복역중인 양심수가 26명이며 60~70세 이상의 고령자도 50여명이다. 당국은 이들에게 사상전향을 강요하며, 사상전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년 이상 장기구금하고 있다. 이들은 … 독방에 갇혀 의료, 소내 취업, 집필권, 도서 열독권등이 박탈당하는 등 차별처우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문후유증과 오랜 독거생활, 전향을 강요하는 고문, 테러 등으로 수십 가지의 질병을 앓고 있으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1993년 4월 30일 유엔인권위원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위원회(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는 이들 중 김성만, 장의균, 황대권 사건에 대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한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결정 번호 28/1993 Republic of Korea). 실무위원회의

나. ‘실천법 위반자’의 실패

- 조문 주장, 교과서 집필이 폭력인가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남한사회에서의 인권의 완전한 실현에 최대의 장애물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의 신공안국은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의 사망 직후에 경찰, 공안검찰, 집권당과 국우언론은 소위 주사파학생들을 공격하는 데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 매카시즘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량적이고 무차별적인 구속의 관행이 되살아났다. 금년 6, 7월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자의 수는 102명으로 1993년 전체의 구속자수인 104명에 육박하였다. 특히 대학에서 4년간 강의교재로 사용되어 온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책자가 이적표현물을 용이하게 사용하거나 수사를 받기까지 했다.”

(저자 불명의 미출판원고, p.2)

- 「태백산맥」도, 「희망의 노래」도

“80년대 한국문학사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되는 소설 「태백산맥」의 기소 여부에 대한 논란이 최근 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검공안부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지검 공안1부 조규홍 검사는 「태백산맥」의 내용이 국가보안법 제7조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 노래페 꽂다지 대표 이은진씨는 지난 4월 노래집 「희망의 노래」를 만들었다가 도서출판 민맥 대표 원용호 씨와 함께 이적표현물 제작제작자의가 적용되어 유죄를 선고받았다.(이상창, 『시사뉴스』 96. 8. 7.)

다. 양심수의 정리

- 폭력을 사용하거나 주창하지 않았다.

1987. 5. 22. 거제도에서 가진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조작은폐 관련 기자회견

“대통령은 이 조작극에 대해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하며 박군사건을 비롯, 그간의 많은 인권유린 사건 및 용공조작사건에 대해 원천적으로 재수사도록 검찰에 명령해야 할 것이다.”

1987. 7. 4. 자택 기자간담회

“우선 구속자의 전면석방이 중요합니다. 모든 양심수를 이유 불문하고 석방해야 합니다. 김대중 의장을 비롯해 정치적으로 뮤인 모든 사람들을 모두 사면, 복권해야 마땅합니다.”

1987. 7. 13. 6.29 직후 처음 가진 기자회견

“진정 민주화와 국민화합을 지향한다면 용공혐의가 있더라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원이 석방·사면·복권되어야 한다”

7. 결론

54
이
달
의
민
변
11
월
호
“지난 1991년 국제사면위원회에서 프랑스지부 30주년을 기념하는 영화를 제작했다. … 영화 〈실종〉(Z)으로 유명한 코스타 가브라스가 만든 〈망각에 반대하여〉의 김성만씨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 김성만씨가 13년째 수형생활을 하는 사이 그의 약혼녀는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했고, 어머니 최인화씨는 회갑을 넘기고 말았다. …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 기억은 자꾸 회미해가는 것 같아요. 나는 자꾸 늙어 가고 몸이 아파오는데 언제나 나오려나 모르겠어요. 내 손으로 따뜻한 밥 한 끼라도 해먹이고 싶은데….’”

(신윤덕, 『시사월간 WIN』 97. 10.)

“기억되지 않는 정의란 불완전하고 거짓되며 정의

롭지 않은 정의입니다. 망각이란 아우슈비츠가 절대적 범죄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절대적 부정의입니다. 망각이란 나치의 결정적인 승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 물론 어느 것도 죽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법정에서의 민남과 증언 때문에 피고인은 죽은 사람을 다시금 죽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죽이게 된다면 그것은 그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본 재판은 기억에 그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Barbie 재판에서의 Ellie Wiesel의 증언)

“자유는 영원한 감시의 대가이다.”(미국 법무성 경구)

1995년도 중앙노동위원회 심결례 분석

이 인호

1. 분석의 대상

중앙노동위원회는 매년 전년도의 중노위의 재심판정, 고등법원 및 대법원에 불복한 사건의 판결 중에서 선례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료들을 모아 「노동위원회판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1997.9. 현재 1996년도 노동위원회판례집이 아직 발간되지 않은 까닭에 부득이 1995년도 자료를 분석하기로 하였다. 부족한 자료를 가지고 지난 시기의 심결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보는 것은, 향후 지속적으로 노동위원회의 활동 전반에 대하여 주시, 감시하고 제도개선안을 찾는 활동을 해나가고자 하기 때문이다.

『1995년도 노동위원회 판례집』에 실린 자료들은 1995년도에 결정된 지노위의 초심결정서, 중노위의 재심결정서, 고등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 중에서 선례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며, 지노위의 초심결정서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연계수록하였다. 위 판례집에는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사건이 25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30건 실려 있으며 기타 노동쟁의에 대한 중재재정 사건 등이 약간 있다. 또한 위 판례집에는 중노위, 지노위의 활동과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들이 있다. 『95년도 행정소송 폐소사건 판례집』에는 중노위의 판정이 법원에서 뒤집어진 사례 전부(26건)에 대하여 고등법원판결과 함께 자체분석이 이루어져 있다.

75
노동위원회
발제문

대법원 판례비평과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의 판정서에 대하여 법리적 비판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공익위원별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며,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결 사이에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는 사실인정의 문제부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결론이 다르다 하여 이를 단순비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래에서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업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조정업무등 노동위원회의 전반적인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노동위원회가 자체 제작한 자료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향후 노동위원회에 대한 감시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2. 행정소송 제기율, 승소율

중노위가 자체분석한 행정소송 제기율과 승소율은 다음 쪽의 표와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995년도 전체 중노위 결정 427건 중 32.8%인 140건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 그 중에서 93건은 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이고, 47건은 사용자가 제기한 소송이다. 중노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 중에서 1995년에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총 117건이었으며 중노위의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 경우가 91건,

중노위 결정이 변복된 경우가 26건으로서 중노위의 승소율은 77.8%이다. 중노위가 패소한 사건 26건은 근로자승소 9건, 사용자 승소 17건이다.

행정소송제기율

년도별	중노위결정 (소송대상)	소송제기 건수			제기율(%)
		계	근로자	사용자	
94	407	160	96	64	39.3
95	427	140	93	47	32.8
96. 6.	149	45	30	15	30.2

행정소송승소율

년도별	계	승소	패 소		승소율(%)	
			계	근로자승소		
94	88	79	9	7	2	89.8
95	117	91	26	9	17	77.8
96. 6.	55	44	11	7	4	80.0

이러한 수치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1995년의 통계수치만을 놓고 본다면 오히려 법원보다도 중노위에서 근로자측에 유리한 판정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96. 상반기 통계는 법원에서 근로자 승소 7건, 사용자 승소 4건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다. (1996. 이후 대법원에서는 원심에서 근로자가 승소한 사안에 대한 평가환송률이 매우 높았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1996. 상반기에 고등법원에서 근로자가 승소한 사안 7건의 경우에도 이후 대법원에서 평가환송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나, 추적 조사는 하지 못하였다.)

3. 1995년도 중노위 패소사건 분석

가. 사건유형별 분류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 19건
부당전보구제신청사건 3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사건 3건
부당감봉구제신청사건 1건

나.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

(1) 중노위에서 근로자가 승소하였으나 법원에서 근로자 패소

① 1994. 7. 9. 설립된 대창운수(주)는 설립동기 전인 같은해 6. 30. 창신 낙산복지회와 마을버스 운송사업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대표자등 임원은 종전과 동일하고 다만 낙산복지회 소속에서 상법상 독립된 법인인 주식회사로 변경)하면서 양도자가 양도 시점에 종업원들에 관한 퇴직절차를 종료토록 약정.

중노위에서는 영업양도로 보아 퇴직절차를 마치고 대창운수(주)에 신규입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승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 판정.

고등법원은 영업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재심판정 취소, 대법 계류.

② 소양기업(주)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상사폭행건.

중노위는 사장, 전무, 상무에게 폭언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징계석상에서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폭언을 1시간 이상 하였다는 회사쪽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하여 징계재량권의 남용으로 보아 부당해고라 판정.

고법은 징계대상자가 1시간 이상 쟁스러운 욕설과 격렬한 폭언을 한 사실을 인정, 중노위의 구제신청 이후 회사 전무에게 내림말을 하며 시비를 건 사실

고법에서는 회사대표가 횟짐에 그만두라고 한 것이며, 평소에도 여러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으나 그런 말을 들은 근로자가 출근하여 일할 경우 아무런 문제 없이 넘어갔던 일이 여러 번 있었고, 사직을 강요할 뜻은 없었는데도 A가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서 회사대표는 A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중노위 판정을 취소. 확정.

⑦ (주)빙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근로자 A는 월급 70만원이라는 말을 듣고 입사하였고, 회사대표는 월급을 60만원으로 결재하였으나, 임금지급시 동료 경비원의 월급과 같은 50만원이 지급되자, 이에 항의하는 A에게 회사 감사(실질적 경영자)가 월급은 더 못주겠고 월급 50만원으로 일하기 싫으면 회사를 당장 그만두라고 하면서 여직원을 시켜 A가 관리하던 공장 및 사무실 열쇠를 회수한 사건.

중노위에서는 당초 약속한 임금보다 적게 지불하고, 더구나 임금지급시 사장이 내부결재한 월 임금 60만원보다 적게 지불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A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 판정.

고법에서는 회사가 정한 월 50만원이 동종 근로자의 월급에 비추어 크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반면 A가 월급의 수령을 거절하고 반발하는 이상 이는 원고 회사가 A와의 노사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노위 판정을 취소하고 정당해고라 판시.

⑧ 한국신문잉크(주)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6명의 근로자가 회사 내에서 경영진에 대한 불만으로 제품훼손의 불법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이들의 상사인 A는 동 불법행위를 사전 모의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대표 甲은 A도 공범이라고

판단 징계해고.

중노위에서는 관련자들이 A는 동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전공모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 부당해고로 판정.

고법, 대법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불법행위를 사전에 모의하는 것을 알았으며 묵시적인 후원자가 되어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해고의 정당성 인정.

⑨ 홍익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판매원이 당첨된 주택복권을 신규발행 주택복권과 교환하여 주었을 경우, 회사지침에는 판매원은 당첨복권을 회사에 반납해야 하고 회사가 일괄하여 위 복권을 주택은행에서 신규발행 복권과 교환, 판매원에게 재교부하도록 되어 있음. 판매원이 회사물품 이외의 다른 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

판매원이 이러한 회사의 방침을 어기고 당첨복권 100매를 직접 주택은행에서 교환하여 판매, 회사 지시 위반을 이유로 해고.

중노위에서는 타부정상품과 달리 개인적인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아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 할지라도 파면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무효라고 판정.

고법에서는 A가 94. 6. 1. 회사가 보급하지 않은 복권 1매를 판매하였고, 이것과 같은 달 3. 적발된 비보급복권 47매와 같은 조의 번호가 216번이나 차이가 나는 점으로 보아, 근로자 A가 부정판매한 복권 수는 더 많았을 것으로 판단.

근로자 A가 1993. 1. 9.에도 원고의 지시에 위반하여 신문을 비싸게 팔아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함.

인정, 징계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

③ 범아실업공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1993. 12. 31. 정년 55세에 달하는 자가 1993. 7. 1.에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중노위는 1994. 2. 26. 부당해고라 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중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판정을 함.

고법은 중노위 재심판정일인 1994. 2. 26.에는 이미 정년을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할 수 없는 자라는 사유로 중노위 판정을 취소.

복직을 명한 부분과 정년도달일 이후의 임금지급 부분을 취소한 사례.

④ (주) 대주통운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근로자 A는 택시회사에 근무중 산재사고로 요양 후 복직된 다음부터 고정차량 운전기사에서 예비기사로 변경근무하였으나, 8. 17. 복직 후 10. 20.까지 사이에 매월 1일 내지 3일 정도 계 6일 승무하고 8일 은 비번 및 추석절 휴일이고 나머지 51일을 무단결근.

93. 10. 21.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되어 12. 1.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고등법원에 항소 중 1993. 12. 20. 장기무단결근 및 변호사법위반으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해고당함.

중노위는 예비기사의 경우 출근하여 승무하지 못하였을 경우 출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으므로 무단결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51일간 무단결근하였다면서도 회사가 출근을 독촉하거나 결근 계를 받는다거나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결근이 유도 알려고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단체협약에 형이 확정된 경우를 징계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형 확정되기 전의 징계는 무효.

58

이 달의
민변
11월호

고법은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사실을 인정하고 무단결근한 사실만으로도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

⑤ (주) 대한항공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계열사 운항규정상 겸열운항 승무원의 자격이 “해기종 자격증명 한정”을 소지한 자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3,000시간 이상 정기운송용 항공기의 기장으로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기종자격증명 한정을 갖추지 않더라도 겸열운항 승무원으로서의 임무를 부여한다”는 규정에 의거 그들에 의해 심사한 총평점을 주요자료로 삼은 운항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조종요원 부적격”의 의결을 받아 1993. 해고된 사건.

중노위는 항공기 조종의 특수성에 비추어 합의제의결기관인 운항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에서까지 조종사로서는 부적격하다는 판정이 내려졌다면 이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서도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옳다고 판정.

고법에서는 자격이 없는 자가 한 평가를 자료로 삼은 위 운항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의 ‘조종요원부적격’ 의결을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다만, 이 사건은 이후 대법원에서는 다시 정당해고로 판시하였음).

⑥ 용마문화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회사대표가 회가 나서 “그만두라”고 91. 7. 13. 공장장 A에게 말하였으나 A는 이를 해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음날인 7. 14. 정상 출근하였으며, 당일도 회사대표가 또 다시 A에게 그만두라고 하자 A는 당일 13:00경 귀가한 후 경리사원 D에게 퇴직금 수령을 통보하고 7. 16. 회사에 가서 퇴직금을 수령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노위에서는 부당해고 판정.

⑩ (주)아시안스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총무과장 A는 부하직원인 B가 근로자들의 재형저축금 13,674,000원등 공금 19,331,000원을 유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자진퇴사한 후 회사 사무실에서 부하직원 감독 소홀로 동사건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것을 문책하는 관리부장 C에게 직원들이 보는 데서 폭언을 하여 회사는 A를 징계해고.

재심징계위원회 석상에서 회사대표에게 욕설과 상대질.

그 후 뇌물공여, 세금포탈등 7개항목의 비위 사실이 있다고 회사대표와 회사 간부들을 형사고발하여 사무실 무단용도변경은 유죄로 나머지는 무혐의로 결론이 남.

중노위에서는 징계사유는 되나 해고사유로까지 될 수 없다고 판정.

고법에서는 정당해고로 인정.

(2) 중노위에서 근로자가 폐소하였으나 법원에서 근로자가 승소한 사건

① 한신생명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피징계자의 출석과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해고처분을 의결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의원면직 조치키로 한 다음 사직서의 제출에 따라 이를 수리한 사건.

중노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징계면직을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위원회의 권유를 받아 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므로, 동 수리행위는 정당하다고 판정.

고등법원은 본건 사직서 제출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징계면직한다는 조건부 징계면직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회사가 조건부 징계면직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인사규정에 규정한 본인의 출석과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사직서

를 수리한 행위는 부당하다하여 중노위 판정을 취소, 대법에서 확정.

② 대구광역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무면허 화물자동차 불법영업행위단속을 맡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조합 이사장, 전무 및 업무과장이 무면허업자로부터 50만원의 수표를 받은 것을 알게 된 관리과장 같은 수표를 보관하던 업무과장으로부터 동 수표를 받은 후, 이사장의 금품수수 의혹을 밝힐 목적으로 자의로 지방출장등을 통해 조사를 행하고,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를 따지고, 일부 이사들과 이사장 불신임을 위한 이사회 개최를 논의하고 또한 동 수표의 반환을 지시한 이사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음.

중노위는 이사장 협박 및 모함, 허위사실 유포, 업무지지 거부, 조합명예훼손 등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고법은 위 모든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시. 대법 계류중.

③ 대림프라자 상가운영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근로자 A는 92. 5. 1. 대림프라자 상가 기관주임으로 입사 근무중, 7월말 상여금 지급기준에 불만을 품고 근무 불성실은 물론 상가대표자 甲을 비방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상가 내에 유포하고 상가 운영권을 둘러싸고 상가운영위원회와 대립하고 있는 반대 조직 회의에 두 차례 참석,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회장 甲으로부터 92. 8. 20. 징계해고당함.

甲은 1992. 9. 15. 회장을 사임하였고, 임시총회에서 丙이 회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다가 丙이 11. 19. 사임하자, 상가운영위원회는 12. 3. 운영위원 및 상가소유직영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 동 비상대책위원회에서 甲을 재차 대표인 회장으로 선

출, 실질적으로 대표로서 활동함.

상가회칙에는 회장 및 부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음.

초심 지노위에서 부당해고이므로 원직에 복직시키는 판정을 받은 후 1992. 12. 21. 대표자 甲 명의로 재심신청하였으나 이때는 甲이 총회가 아닌 비상대책회의에서 선출되었음.

중노위는 해고사유가 정당하다 하여 근로자 폐소 판정.

고법은 해고사유의 타당성 여부는 불문하고, 상가회칙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비상대책회의에서 甲을 대표자로 선출하였다면 그러한 선출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甲은 상가의 적법한 대표자 될 수 없으며, 甲을 적법한 대표로 보고 한 중노위 판정은 위법하다 하여 취소함.

④ 보성운수(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버스운전기사 A는 근무 후 01:00경 술에 취해 근로자들이 취침중인 회사 기숙사에 들어가 동료 근로자와 시비를 하며 폭행하여 전치2주의 진단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1시간 이상에 걸쳐 고성을 지르고 방문을 여러 차례 밭길로 걸어치는 등 소란으로 취침중인 근로자들의 안면을 방해함으로써, 다음날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당함.

중노위에서는 해고사유를 인정하고 근무중 8회에 걸친 교통사고 등을 감안해볼 때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고법, 대법에서는 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로 판시.

A의 음주소란행위는 근무시간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술을 마시고 잠을 자기 위해 기숙사에 들어갔다가 사소한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다음날 동료 기사들의 근무에 별다른 영향을 끼친 사실이 없으며, A의 교통사고 야기등은 정계사유가 아

닐 뿐만 아니라 7년여의 집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계권 남용이라 판시.

다.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사건, 부당전직구제신청사건 등의 사례

사안 설명은 생략

라. 비평

통계수치를 단순비교하면 중노위의 판정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오히려 법원판결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95년도 중노위 공익위원들의 면면을 볼 때 특별히 진보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중노위와 법원의 결론이 달라지는 부분은 법리 해석의 차이에서 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중노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가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오히려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정계재량권의 남용과 같은 가치판단의 부분에 있어서도 정계혐의사실이 인정되는지, 그 외 정계양정에 참고로 삼을 자료들이 어떠한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 경우가 상당수 있다.

4. 노동위원회 위원 구성

현재 노동위원회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노동위원회법 제6조 제4항).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선출과정은 어떠한지에 대하여도 검토

가 필요하리라 본다.

5. 노동위원회에 대한 감시, 비판의 방향성에 대하여

가. 노동위원회의 판정업무에 대한 감시활동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익위원별로 분류된 자료는 없다. 또한 방대한 노동위원회 심결례를 대법원판례비평과 같은 수준에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중노위 심결례에 대하여 기초통계자료 정도를 넘어서서 대법원판례비평과 같은 수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중노위 심결례에 대하여 법원 판결과 결론이 달라진 부분에 대하여 유형별로 분류하여 그 흐름을 살펴보는 것 정도로 족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의 판정에 있어서 특별히 법원 판례의 태도와 상관없이 스스로의 견해와 법률적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나. 중재재정, 조정업무에 대한 감시활동

『1995년도 노동위원회 판례집』에는 중재신청 사건의 중재재정서도 일부 실려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미처 검토를 마치지 못하였다. 중재재정 사건은 법리적 비판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으나, 노동조합의 단결력의 정도나 투쟁의 강도, 사회의 분위기 등에 의하여 중재재정의 내용이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뒤늦은 법리분석보다는 중재재정 당시 노동조합과 연대한 활동이나, 중재재정에 대한 즉각적인 분석, 비판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다. 노동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대하여

위원의 선출과정에 대한 감시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라. 노동위원회의 사건처리과정과 신청대리의 경우 유의점

노동위원회 신청사건을 대리하는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노동위원회 신청사건은 공익위원 3인,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이 심리에 참여한다. 결정은 공익위원의 결정에 따른다.

신청당사자나 상대방은 신청 이유나 답변서를 상세하게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이 모두 상임위원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기록을 모두 읽어보고 심리에 임하는 것이 아니며, 증거도 거의 보지 않는다. 단지 담당공무원(심사관)이 작성하여 온 2, 3쪽 분량 정도의 '부의안'만을 읽어보고 심리에 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 '부의안'이 신청당사자의 주장을 체계 있게 정리하고 있지 못할 수가 있고, 부실하거나 때로는 일방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신청 당사자의 주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 대리를 할 경우에는 신청서의 말미에 약 2, 3쪽 분량으로 요약준비서면을 쓰듯이 주장을 정리하고 쟁점별 증거를 적시하여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부산지역 노동조합운동의 현황과 과제

김석준(부산대 교수, 영남노동운동연구소 소장)

1. 부산지역 개황

부산지역 경제의 전국 비중은 〈표1〉에서 나타나듯이 1970년대 중반 이후 거의 모든 부문에서 해가 갈 수록 떨어지고 있다. 우선 제조업 부문과 관련해서 보면 제조업체 수는 1980년을 정점으로 서서히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며, 제조업 취업자 수는 이미 1975년을 정점으로 그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5년에는 제조업 종사자의 전국 비중이 인구 비중보다도 낮은 8.4%로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부가가치의 전국 비중도 이미 1965년부터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는데, 1990년대 들어와서는 그

비중이 인구 비중보다도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부산지역 제조업은 1970년대 후반 이후 서서히 성장의 동력을 상실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제조업 취업자 전국 비중 > 제조업체 전국 비중 > 인구 전국 비중 > 제조업 부가가치 전국 비중 순으로 나타나는 데에서도 확인된다. 이는 부산지역 제조업이 노동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제조업 부문이 침체되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이 일상화됨에 따라 부산지역은 성장 잠재력을 급속히 상실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 수준도 점차 열악해졌다.

〈표1〉 부산지역 경제의 전국 비중(1965~1995)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인구	4.9	5.7	7.0	8.3	8.7	8.7	8.7
제조업체 수	9.8	8.6	11.1	11.8	11.8	10.3	10.2
제조업 취업자	18.1	15.9	17.7	15.5	15.1	12.2	8.4
제조업 부가가치	17.5	15.0	11.3	11.1	9.3	7.7	5.1
수출실적	21.4	26.3	24.1	18.2	15.4	12.0	5.2
예금은행 예금	11.0	10.4	10.3	8.8	8.8	8.4	7.7
예금은행 대출금	15.1	8.6	9.1	8.6	8.1	8.4	7.6
어음교환액	-	12.0	10.4	15.6	13.8	3.0	3.7
시민총생산	7.0	9.4	9.5	9.4	9.3	7.8	6.8

주: 1965년의 제조업 관련 지표는 1966년도 수치임.

시민총생산의 1990, 1995년 수치는 지역총생산으로 계산한 것임.

시민총생산 1995년 수치는 1994년 것임.

자료: 부산시, 『부산경제지표 1989』

부산상의, 『부산지역경제지표』 각 년도에서 작성.

〈표2〉에서도 나타나듯이 부산지역의 인구증가율은 1985년부터 전국의 인구증가율보다 낮게 나타나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아예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¹⁾ 그리고 지역의 경제성장률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 이처럼 경제성장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멀어짐에 따라 부산지역 시민총생산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대 들어와서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1985년부터는 부산시민 1인당 시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1990년대 부산의 1인당 시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에도 못 미치는 현상은, 위에서 살펴본 제반 지표를 통해서 유추해볼 때, 다른 지역의 소득이 늘어서라기보다는 부산의 시민

소득이 줄어들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역 경제의 침체가 지역주민 소득의 상대적 감소와 전반적인 빈곤화를 초래한 것이다.

〈표3〉에 나타나듯이 부산지역 전산업 상용근로자의 1인당 월급여는 1991년의 경우 574천원으로 전국 평균의 89.4%에 해당하는데, 이는 대도시 중에서는 최저수준이다. 한편 제조업의 경우 부산지역 1인당 월급여는 530천원이다. 이는 전국 평균의 85.5%에 불과한 것으로, 대도시 중 최저수준이다.

마찬가지로 1993년에도 제조업 임금 수준을 비교해보면, 부산지역은 715,531원으로 전국 평균의 85.9%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역시 대도시 중에서 최저수준이다.

이처럼 부산지역 주민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표2〉 부산지역 경제변동 지표(1965~1995)

(단위: %)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4
인구증가율	전국	2.5	2.2	1.7	1.5	1.0	1.0
	부산	1.4	9.9	6.3	4.1	0.6	-1.5
경제성장률	전국	12.7	7.6	6.8	-4.8	7.0	9.6
	부산	12.5	7.5	3.5	-	6.0	10.7
시민총생산/국민총생산		7.0	4	9.5	9.4	9.3	7.8
시민소득/국민소득		142.7	139.6	110.9	113.4	88.4	84.5
							76.9

주: 시민총생산 및 시민소득 관련 1985년 이후의 수치는 지역총생산으로 계산한 것임.

자료: 부산시, 『부산경제지표 1989』; 부산상의, 『부산경제지표』 각 년도에서 작성

- 1) 1990년대 들어와서는 서울지역도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95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속보 집계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전입 1,033천명, 전출 1,917천명으로 순이동(률)은 -884천명(-35.6%)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부산은 전입 229천명, 전출 457천명으로 순이동(률)은 -228천명(-30.5%)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인구의 감소는 서울시 외곽의 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거지의 이전의 결과이고, 따라서 이들 전출자의 경우에도 일자리는 대개 서울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주야간 인구이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유입인구 955천명, 유출인구 518천명으로 437천명의 유입초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서 부산의 경우 유입인구 52천명, 유출인구 107천명으로 55천명의 유출초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부산지역의 경우에는 단순히 주거지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시외로 이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비슷한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과 영향은 지역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부산지역의 경우 인구감소 현상은 지역경제의 침체를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2) 1990년을 전후한 부산지역 경제성장률은 1988년 8.6%, 1989년 2.5%, 1990년 10.7%, 1991년 4.7%, 1992년 1.0%, 1993년 3.9%로 나타나고 있다(부산상의, 『부산경제지표 1995』, 27쪽). 따라서 1990년의 부산지역 경제성장률은 상당히 돌출적인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그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기 때문에, 전체로서 부산시민들의 소득이 앞에 결국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빈곤이 부산지역 시민

〈표3〉 지역별 상용근로자 월급여 수준 비교 (1991, 1993)

구분	전산업(1991)		제조업(1991)		제조업(1993)	
	금액	전국대비	금액	전국대비	금액	전국대비
전국	642	100.0	620	100.0	832,779	100.0
서울	671	104.5	653	105.3	760,339	91.3
부산	574	89.4	530	85.5	715,531	85.9
대구	590	91.9	537	86.6	724,579	87.0
인천	636	99.1	643	103.7	906,327	101.1
광주	621	96.7	564	91.0	827,602	90.1
대전	637	99.2	569	91.8	754,185	89.3

자료 : 통계청,『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1991에서 작성

통계청,『지역통계연보』, 1995에서 작성

〈표4〉 국내 6대 도시 주요 지표 비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비고
1인당 지방세 부담액(천, 1994)	366	279	308	279	253	333	**
1인당 예산수혜액(천, 1994)	414	370	422	353	366	443	*
재정자립도(% 1994)	86.3	70.1	71.7	76.7	50.0	62.6	*
세출증 사회복지비율(% 1994)	17.0	16.3	15.1	18.3	18.1	23.7	**
생활보호대상자 비율(% 1994)	1.4	2.3	2.8	1.5	4.8	3.8	*
경제성장률(불변가격, %, 1993)	8.4	3.9	6.6	5.9	9.5	6.3	***
소비자물가상승률(% 1994)	8.9	10.4	9.3	8.0	10.9	11.1	*
실업률(% 1994)	2.7	4.2	3.7	2.8	3.7	4.0	***
어음부도율(금액기준, % 1994)	0.10	0.58	0.52	0.38	0.27	0.45	***
도로율(% 1994)	19.6	14.1	17.6	16.0	14.9	22.3	***
1인당 도로연장(km, 1994)	0.7	0.5	0.6	0.5	0.8	1.2	***
인구 100당 차량대수(대, 1994)	17.9	13.9	18.7	16.6	15.4	17.9	***
상수도 보급률(% 1994)	99.9	98.2	98.7	97.8	92.5	93.4	**
1일 1인당 급수량(l, 1994)	476	422	438	497	319	424	**
하수도 보급률(% 1994)	96.3	52.2	82.2	86.9	50.1	69.6	**
공원율(% 1993)	14.1	4.6	6.0	4.5	1.8	6.8	*
1인당 공원면적(m ² , 1993)	8.7	7.9	19.5	14.4	10.8	33.4	***
병·의원당 인구수(명, 1994)	2,500	2,864	2,742	3,461	2,522	2,399	**
인구 만명당 의사수(명, 1994)	14.1	9.8	11.5	6.4	12.6	11.1	**
주택보급률(% 1994)	67.9	61.1	71.7	69.6	79.2	72.5	***
가구당 평균 사용방수(개, 1995)	3.1	3.0	3.2	3.2	3.2	3.3	***
자가보유 비율(% 1990)	38.0	39.4	36.4	51.0	39.4	43.1	*

주 : *** 6대도시 중 최하, ** 6대도시 중 5위, * 6대도시 중 4위

자료 : 통계청,『지역통계연보』, 1995 ; 내무부,『한국도시연감』, 1995에서 작성

들의 상대적 빈곤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부산지역의 각종 집합적 소비시설의 부족등은 노동자를 포함한 부산시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표4〉에서 나타나듯이 부산시민들의 삶의 질은 6대도시 중에서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다. 이는 위의 〈표4〉에서 사용된 총 22개의 지표 중에서 6대도시 중 최하인 지표가 9가지, 5위인 지표가 6가지, 4위인 지표가 6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우선 재정부문과 관련해서는 1인당 지방세 부담액과 일반회계 세출 중 사회복지비 비율 등은 5위이며, 1인당 예산 수혜액이나 재정자립도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비율 등에서는 4위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경제와 관련된 경제성장률, 실업률, 어음부도율 등은 6위이며 소비자 물가상승률만 4위로 나타나고 있다. 교통과 관련된 도로율, 1인당 도로 연장, 100인당 차량 대수 등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유일하게 3위를 차지한 것은 상수도 보급률 하나이며, 1일 1인당 급수율이나 하수도 보급률은 5위를 차지하고 있다. 1인당 공원 면적은 6대도시 중 최하이며, 공원율은 4위 정도이다. 부산시민들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가늠케 하는 병의원당 인구수나 인구 만명당 의사수는 모두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주택보급률은 2위, 가구당 평균 사용방수는 3.0개로 6대도시 중 가장 낮다. 반면에 자가보유비율은 39.4%로서 4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산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은 지역경제의 침체와 함께 갈수록 떨어진다고 생각된다.³⁾

한편 부산지역 계급구성의 변동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우선 1986년과 1992년의 계급구성을 비교해보면, 전국적으로는 노동자계급의 비중은 거의 변하지 않은 채 구중간층이 5% 포인트 정도 줄어들고 신중간층은 3% 포인트, 자본가계급은 1.6% 포인트 정도 늘어나고 있다. 노동자계급이 최대의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구중간층이 감소하면서 신중간층과 자본가계급이 늘어나는 이러한 현상은 한국사회에서 자본주의적 관계의 진전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의 경우에는 구중간층의 비중은 1% 포인트 정도 줄어들고 노동자계급의 비중은 6.1% 포인트 줄어든 데 반해서, 신중간층의 비중은 4.9% 포인트, 자본가계급의 비중은 2.1% 포인트 늘어났다. 그 결과 서울의 경우에는 신중간층과 사무노동자를 합친 비중(31.5%)이 산업노동자의 비중(25.1%)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화이트칼라층의 집중을 의미하는 이러한 현상은 서울에 한국경제의 중추관리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현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의 경우에는 전국이나 서울의 경우와는 정반대로 노동자계급의 비중이 6.9% 포인트나 줄어들면서 구중간층의 비중이 2.3% 포인트 늘어나고 신중간층의 비중도 3.2% 포인트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부산지역의 자본가계급 비중이나 신중간층의 비중이 전국 평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계급구성 변화의 핵심은 노동자계급의 감소와 도시자영업자층(그중에서도 자영생산자층)의 증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⁴⁾

이처럼 노동자계급의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은 전국에 비해서나 서울

3) 홍콩의 영자신사지 「아시아워크」가 최근 아시아 20개국 40개의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한 실시한 삶의 질 평가에서 서울은 14위, 부산은 24위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1996년 10월 20일자 참조.

에 비해서도 노동자계급의 비중이 매우 높은 도시이다. 그리고 부산의 경우에는 서울과는 달리 신중간층과 사무노동자를 합친 비중(23.7%)이 산업노동자의 비중(36.4%)의 3분의 2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부산 지역에는 중간관리기능이 그다지 입지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부산은 서울과는 달리 생산직 노동자 중심의 도시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5〉 부산지역 계급구성 변동

	1992			1986		
	전국	서울	부산	전국	서울	부산
경제활동인구(천)	18,584	4,389	1,634	15,997	3,588	1,299
경제활동인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취업자	97.4	96.5	96.7	96.6	94.1	94.7
비농업취업 취업자	80.4	95.6	95.5	69.6	93.3	92.4
A. 자본가계급	2.3	4.1	2.3	0.7	2.0	1.0
B. 신중간층	13.1	19.4	13.6	10.1	14.5	10.4
- 중간관리자층	8.2	12.1	8.7	4.5	6.0	3.9
- 인텔리층	4.9	7.3	4.9	5.6	8.0	6.5
C. 구중간층	40.7	27.6	27.2	45.7	28.6	24.9
- 비농자영업자층	21.6	26.8	26.4	20.5	28.0	23.1
. 자영상인 서비스업자	14.4	17.4	18.5	11.5	20.5	17.7
. 자영생산자	7.2	9.5	7.8	4.1	7.4	5.4
(이중 무급가족종사자)	5.6	6.9	8.0	4.9	5.1	4.2
. 농어민층	19.1	0.8	0.9	25.2	0.6	1.8
D. 노동자계급	43.8	48.8	56.9	43.4	54.9	63.8
- 사무 노동자	8.4	12.1	10.1	6.4	11.2	9.5
- 판매 서비스 노동자	5.7	8.0	6.9	7.7	12.0	9.9
- 산업노동자	26.7	25.1	36.4	24.1	25.6	38.6
(비농업 노동자 계)	40.8	45.2	53.3	38.2	48.8	58.0
- 농어업 노동자	0.4	0.04	0.3	1.8	0.2	0.5
- 실업자	2.6	3.5	3.3	3.4	5.9	5.3

자료: 1992년은 통계청, 「고용구조조사보고서」1992

1986년은 경제기획원, 「고용구조특별조사결과보고」1986에서 작성

4) 그런데 부산지역의 경우 1993년부터 제조업의 공동화와 지역경제의 침체 현상이 더욱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최근의 계급구성은 이러한 산업노동자층의 감소와 도시자영업자층의 증대 경향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계급구성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가 1992년 자료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러한 전망은 추정에 불과하다.

2. 부산지역 노동조합운동 현황

가. 노총 부산지역본부 가입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 추이

〈표6〉에서도 나타나듯이 1992년 이후 부산지역

노총 산하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수 및 조합원수에 있어서 급속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1992년 711개에 달하던 노동조합은 1993년에는 561개로 줄어들고 1997년에는 445개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원수도 최대치를 보이던 1991년 263,750명에서 1997년에는 139,754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처럼 조합원수가 급격히 들어든 가장 큰 이유는 부산의 주종산업이던 신발산업 및 섬유산업 노동자들의 급속한 감소와 금속산업 노동자들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이 중에서 특히 신발 및 섬유산업의 경우 휴폐업이나 도산 또는 역외 이전 등으로 사업체 자체가 줄어든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에 반해 금속산업의 경우에는 민주노총으로의 이탈등에

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전반적으로 지역경제의 침체에 따라 노동조합 및 조합원수가 급격히 줄어듬에 따라 전반적으로 노총의 조직활동은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 민주노총의 출범 이후 중간노조의 이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노총의 조직적인 위축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 연맹별 조합원수로 볼 때 선원, 택시, 연합, 섬유, 금속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선원의 경우 유명무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노총 부산지역 본부의 가장 중심적인 역량은 택시와 연합이다. 택시의 경우 최근 국민컵 싸움 등을 거치면서 노총에서 탈퇴하여 민주노총에 가입 결의한 노조들이 나타나고 있

〈표6〉 노총 부산지역본부 조합원 및 조합수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노조
철도	2,770	2,770	2,572	5,914	5,914	3,935	3,822	3,425	3,316	3,316	2
섬유	32,149	33,865	31,309	31,251	31,107	22,376	20,420	16,107	13,694	13,694	40
전력	1,295	1,295	1,295	1,295	573	785	1,000	1,200	1,000	1,000	2
외기	1,026	1,026	1,026	1,026	917	900	900	700	720	720	1
통신	1,200	1,200	1,200	3,183	3,183	2,506	3,000	3,000	-	-	-
항운	6,760	6,954	8,314	8,314	7,859	8,228	7,935	8,500	8,500	8,500	1
선원	42,515	46,940	45,618	50,443	35,174	37,374	40,562	38,684	39,284	34,284	30
금속	2,985	3,164	3,652	3,652	3,880	3,980	4,918	5,213	5,627	5,627	16
담배	178	194	199	199	221	210	250	234	200	200	1
화학	8,776	10,589	9,913	9,279	8,843	8,944	5,016	4,970	4,631	4,631	31
금속	22,533	26,223	24,592	21,398	18,153	17,857	15,781	14,901	11,740	11,740	63
출판	896	1,226	1,022	1,092	1,219	756	582	569	418	418	5
자동	24,267	8,543	8,775	8,146	8,103	10,103	9,491	9,329	8,935	8,935	62
연합	20,249	25,437	23,731	23,577	24,066	17,662	15,812	14,461	13,998	13,998	71
관광	1,752	3,047	3,047	3,047	3,258	2,987	2,884	2,770	2,770	12	
체신	600	600	600	3,264	3,264	1,000	1,000	3,600	3,600	3,600	1
보험	-	-	528	544	622	600	220	150	-	-	-
택시	-	19,046	19,990	18,770	18,608	15,260	19,763	19,000	16,500	16,500	102
고무	68,960	59,341	68,851	69,356	63,974	44,394	28,100	16,350	11,821	9,821	5
계	238,912	251,460	256,234	263,750	238,727	200,128	181,559	160,127	146,754	139,754	445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사업보고서 각 년도 참조

하고 조직 방
나 그 성과에
총파업 과정
떠밀려서 적
참여하기도

년 4월 현재)

혹은 가맹예정

산업기기, 오
한진중공업,

일금속 (이상

은 가맹 예정

스직)

콤, 전기안전

부산교통공단, 철도노민추

* 부산택시노동조합협의회: 4

대진택시, 성도운수, 제일택시, (주)국민캡

* 전국화물운송노동조합연맹: 16

화물운송노련, 고려종합운수, 국제통운, 대양운수,
대통운수, 동방, 삼익종합운수, 세방기업, 양양운수,
일양운수, 천양항운, 천일정기화물, 한국운송, 천경,
대양실업, 건창운수

*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6

CBS, KBS, MBC, 국제신문, 부산매일, 부산일보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

전교조지부

* 전국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 1

부산지역본부

*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12

부산지역본부, 고신의료원, 대남병원, 동래봉생병
원, 동아의료원, 메리놀병원, 백병원, 부산의료원, 부
산적십자기관, 일신기독병원, 춘해병원, 침례병원,
*부산보훈병원.

* 전국사무노동조합연맹: 12

고려종합금융, 부산리스금융, *부산지방변호사사
무직, *부산직장의료보험, 신세계투자금융, 엘지종합
금융, *제일투자신탁, 한성생명보험, 항도투자금융,
*한국머스크, *상은리스금융, *전국화물운송공제조

*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1

도시개발공사

*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1

*부산대학교

* 전국자동차연맹: 9

대우자동차판매, 가이씨비스, (주)기산, 기아자동차영업, 아시아자동차서비스, 쌍용자동차양산지회,
*대우자동차부산지부, 대우자동차동래지부, 대우자
동차정비지부

* 현총련: 4

현대자동차서비스부산지부, 현대자동차서비스사
상지부, 현대자동차서비스신부산지부, *금강개발노
동조합부산지부

* 한국통신노동조합: 1

부산지방본부

* 계: 참가노조: 89(*14), 참가 예정노조: 6 ; 조
합원수: 약 22,000명

- 민주노총 부양본부 내에서는 금속, 지하철, 화물
운송, 병원 등이 중심 역량임. 그러나 금속은 중소 사
업장 중심이고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한계 많
음. 화물운송이나 지하철이 지역적 영향력 면에서 주
목됨.

* 숫자으로만 보면 민주노조가 노총 산하 노조의
약 1/6 정도에 불과함

- 전국적으로는 노총 110만, 민주노총 50만으로

하철 등 지역 내 최대규모 노조의 상대적 취약)

3. 민주노총 부양본부 1996년 사업평가와 1997년 사업계획

가. 1996 성반기 사업평가

(1) 96 임단투 방침에 대한 평가(목표, 요구, 특쟁방침
에 대하여)

민주노총의 임단투 방침은 요구 및 주요과제의 통
일과 시기 집중을 통한 공동투쟁전선의 구축이었으
며 기본적으로는 산업별(공동요구-공동교섭-공동투
쟁)을 강화하여 기업별의식을 극복하고 올바른 노동
자 의식을 확립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임단투에 임
했다.

이중 요구 및 주요과제의 통일은 기업별 노동조합
체계라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산업별(업종별) 공동
과제를 설정하고 끝까지 교섭에 임한점은 95년의 공
동요구를 계승, 발전시킨 것이라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개별기업의 임금 및 근로조건과 관련된 요
구는 여전히 기업의 경영실적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었으며 임금인상요구율과 타결률 역시 많은 편차
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임금격차의 해소를 과제로 설
정하였으면서도 임금인상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 외
에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기업별노조의
연합체계 아래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작업중지권 확보 노동시가 다층 격연차

시 개별자본과의 힘관계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었으며 공동요구는 되었으되 공동교섭으로 이어지지 못함으로서 공동투쟁이 아닌 개별 단위노동조합의 각 개약전으로 힘이 있는 곳은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공동요구-공동교섭-공동투쟁을 통한 기업별 의식의 극복이라는 측면은 96임단투 역시 여전히 자기 단위노조 요구의 관철에 매몰되어 공동교섭과 공동투쟁을 이용한 측면이 다분하며 이로 인해 기업별 노조체계와 기업별 노조의식은 대부분의 노조에서 완전히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최근 신경 영전략의 강화와 함께 일본식 노사관계를 따라가지 않는가라는 우려를 자울 수 없다.

시기집중을 통한 공동투쟁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전술은 청와대 노사화합대회와 이후 노개위국면을 잘 활용하여 공공부문 노조 6개사 공동투쟁을 끌어내고 민주노총이 이 투쟁을 직접 관장해 들어간 것은 적절한 전술이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공노대 6개사 투쟁 및 금속, 자동차, 병원 노조들의 투쟁을 최대한 집중시켜 해고자 복직, 작업증거권 등 단협 확보, 전 임자축소 등 단협 개악 저지 등 특정 노동조합의 요구가 아닌 전체 노동자 일반의 요구를 관철하겠다고 했다면, 공노대 6개사 투쟁과 금속, 병원, 자동차 노조 등 전국의 투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집중시켜 청와대와의 막후교섭이 아닌 정부와 경총을 상대로 한 직 접교섭을 시도했으면 하는 이üş음이 남는다. 결론적으로 보면 해고자 복직 역시 전체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임에도 일부 개별 노동조합들의 선별복직으로 끝나버리고 향후 노동법개정(개악 저지)과 맞물려 또 한번 협상의 카드로 작용될 소지를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전임자 축소 저지 등 단협 개악을 저지했다는 것 역시 한통노조의 직권중재에 대한 행정소송 결정을 보면 결코 위안일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요구와 과제의 설정은 적절했다고 판

단할 수 있으나 이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방침은 사실상 부재했고 산업별(업종별) 연맹에 맡겨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공노대 투쟁을 계기로 전국의 투쟁을 시기 집중시키고자 하는 노력 역시 하지 않음으로써 96임단투의 결과를 전체 노동자가 공유하지 못하고 일부 노동자만 가짐으로써 기업별 노동조합과 연맹 체계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2)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평가

민주노총의 결성시 지역본부의 위상과 역할은 산업별(업종별)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로서 충자본과 충 노동의 전선 형성을 통해 산업별(업종별) 노동조합의 임단투를 지도·지지·임호하는 것과 노동악법개정 투쟁, 사회개혁투쟁, 각종 정치적 사안에 대한 투쟁 등 정치적 대응력을 높여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역본부는 일상적 사업은 산업별(업종별) 연맹지부에 맡기고 산업별 연맹간의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정책·정치사업을 주요한 사업과제로 설정했다.

지역본부 결성 초기 96 임단투 준비기임에도 3. 23. 제15대 총선에 민주노총 후보를 출마시켜 상당한 인원과 재정을 들여가며 총선투쟁에 임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인한 것이며 1996년 정치실천 선언을 조직한 것과 민주노총이 사회개혁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1차적인 과제로 설정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상과 역할 설정은 96임단투가 본격화되고 임단투 준비기에 맞물린 도시개발공사노조 파업, 상공회의소노조 파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부터 이후 공노대 파업, 부일산업노조, (주)기산 노조 등 수많은 투쟁과정 속에서 전술기획단위, (공동)집회 진행 등 행사요원의 역할이 주로 주어졌다. 불

수 있다.

임단투 준비기에 지역본부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는 사업은 노사화합 선언 분쇄, 전임자 축소 저지 및 6.6% 임금가이드라인 철폐를 위한 단위노조 서명조직화 및 기자회견을 조직한 것, 임단투 전진대회 겸 노동법개정 요구에 맞춰 치뤄진 영남노동자대회를 부산역광장에서 조직한 것 등이다. 그외는 주로 투쟁 사업장 지원 등 주로 산업별(업종별) 연맹이 해야 될 자질구레한 역할을 주로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미 예상되었던 일이지만 민주노총의 건설과 함께 산하조직이 산업별(업종별)로 급격하게 편재되고 산업별로 임단투가 준비되면서 연맹의 지도력이나 관장력이 미치지 못하는 단위노조를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본부의 집행력이 자기가 담당한 노조의 임단투의 지원·지도에 완전히 매몰되어 지역 전체 투쟁전선을 관장하는 역할을 방기했다. 물론 평균 1주일에 한번 꼴로 공동집회, 지역집회가 개최되는 등 공동전선의 형성을 위한 계획은 많았지만 이를 힘차게 집행하기 위한 사전조직화가 되지 못함으로서 결국 싸움은 많았으나 개별노조의 각개약전으로 귀결되었다.

특히 사업의 중심이 산업별(업종별) 연맹체계로 가다보니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각종 회의에 대한 단위노조의 참가 역시 극도로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별(업종별) 연맹지부의 활동이 활발해야 함에도 고작 전임자 1~2명을 가지고 활동을 제대로 해내기란 벼거운 것이었다.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각종 회의결과에 대한 단위노조의 집행력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는 극도로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다. 96임단투를 치루고 난 지금 기업별노조체계가 완전히 고착화되고 있다는 섬뜩함이 온몸을 휘감고 있는

데 어떻게 하든 공동요구-공동교섭-공동투쟁을 강화하여 산업별노조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별(업종별) 조직편제와 조직강화·발전은 대단히 중요하다.

문제는 단위노조의 조직력과 집행력이 망가져가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대안 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부지기수라는 것이며, 산업별연맹의 중앙지도력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산별노조가 문제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무너질 공산이 대단히 높다.

따라서 산업별(업종별) 연맹과 민주노총 지역본부와의 유기적 결합과 역할 분담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선 산업별(업종별) 연맹은 일정 규모까지는 독자적 지부조직을 꾸려 조직을 관리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과도기적으로 지역본부에 그 역할을 주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본부는 자기가 임단투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산별연맹의 투쟁방침에 복무하며 전체의 전선 형성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 과도기적으로 일정 규모의 연맹은 지역지부의 상근자를 민주노총 지역본부 사무실 내에 상근케 하여 항상적 교류와 회합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럴 때만이 단위노조에서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산별연맹간에 생기는 사업의 중복, 지침의 중복에서 생기는 혼란을 미리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다.

(3) 조직화대사업에 대한 평가

96년도 조직사업계획은 민주노총 중앙조직에 가입한 산업별(업종별) 단위노조들을 지역조직에 가입시키는 것이 제1차적인 목표였다. 전체적으로 부산상공회의소노동조합 지원투쟁을 통해 전문노련·산하 노동조합이 가입했고, (주)기산 지원투쟁을 통해 자동차노련 및 현총련 소속 노동조합들이 가입하려고

하는 등 96임단투를 통해 민주노총의 위상이 강화되고 조직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의무금 납부율이 70%를 넘지 못하며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언론·사무·대학·한통 등은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는 것은 하반기 노개투 국면을 잘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새로운 조직이 들어오고 조합원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노동조합들이 굳건한 중심을 세우고 민주노총 지역본부를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조직이 늘어난다고 해서 커다란 의미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조직확대사업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기존에 가입해 있는 조직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본부는 현재의 지도집행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집중 고민해야 될 것이다.

(4) 총괄 평가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위상을 역할을 산업별(업종별) 연맹지부의 상급단체로 규정하고 주요사업내용을 산업별 노동조합의 공동투쟁조직화 및 사회개혁 투쟁의 전개를 통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로 설정하고 사업에 임했으나, 산업별(업종별) 연맹 중앙의 임단투에 대한 관장력이나 지도·지원의 내용이 상당한 한계를 가짐으로 인해 임단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본래 역할이 유실되어 버렸다.

또한 출범 초기 설정했던 사업이 사실상 산업별(업종별)연맹의 조직력·지도력의 취약으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단위노조에 대한 관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민주노총 지역본부로서는 상당한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공동요구·공동교섭·공동투쟁을 올 임단투의 주요기

조로 설정했음에도 단위노조 간부진용의 약화, 조합원의 관심 및 참여율 저하 등 전반적인 노동조합 조직력의 침체는 산별연맹에서 주관하는 자기 노조의 임단투에 매몰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자연히 지역의 공동투쟁전선에 대한 관심은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현재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주요사업은 스스로가 단위노조와의 조직적 관계를 깊숙히 가지고 있지 못하는 위원장 및 몇몇 간부 중심의 상층사업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산별연맹의 조직력과 집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역사업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며 민주노총은 종이호랑이이다. 상반기 사업을 통해 우리의 고민 지점은 바로 여기다. 산별연맹과 상관없이 단위노조에 대한 지도력과 관장력을 가지려다보니 본래의 임무를 방기하게 되고, 본래의 임무를 수행하려다보니 전혀 집행이 되지 않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출범시 설정했던 총자본에 대한 공동전선의 조직화, 사회개혁투쟁을 통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라는 자기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별연맹 지부들의 조직·투쟁에 대한 관장력과 민주노총 지역본부로 상시 결합되는 최소한의 선진 조합원대오가 있어야 한다. 하반기 사업의 중심은 이러한 최소대오와 조직·투쟁 관장력을 산별연맹중앙과의 유기적 협조하에 만드는 사업이 급선무일 것이다.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재정자립도가 대단히 취약한 현실에서 전문역량을 더 고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따라서 산별연맹 지부의 전임자들이 곧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주요일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들의 책임성과 사업의 통일성을 높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하반기 노동법개정투쟁에서 이러한 가능성은 열려 있으므로 지도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산별연맹에 포함되고 있지 못한 노조들의 조직과 투쟁을 책임지는 또 하나의 지역연맹 내지는 노동상담소, 노동단체의 역할이나 하고, 산별연맹이 하기에는 손이 많이 가는 잔심부름 및 산별연맹이 저질러놓은 일을 뒷처리하는 조직으로 전락되어 있는 현실을 탈피하고 명실상부한 지역전선의 중심, 산업별 연맹지부의 지역상급단체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나. 1996 하반기 사업 총괄평가

민주노총 부산양산 지역본부의 하반기 사업은 96년 4월 24일 청와대 노사대회를 기점으로 시작된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국면에서 어떻게 노동법 개정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느냐에 집중되어 모든 역량이 노개투에 맞추어졌다. 물론 노개위 참여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초반의 혼란을 통일시키고 '참여와 투쟁'이라는 민주노총의 대원칙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노개투 사업에 임했다.

예년과 달리 이번 노동법개정투쟁은 정부의 노사관계개혁이라는 노사정 협상국면과 맞물려 있었고, 89년 이후 시작된 자본의 신경영전략이 고용불안, 노동강도 강화, 노동조합의 통제 강화로 이어지면서 노동법의 개악으로 나타나는 조건과 맞물려 조합원 대중의 관심과 이해가 대단히 높았다. 이를 반영하듯 96. 8. 19. 노동법개정투쟁본부의 구성과 함께 시작된 전조합원 1인 1교육, 간부수련회, 조합원 준법투쟁과 파업결의 등 3달여에 걸친 투쟁 준비기 사업 속에서 산하 모든 노조가 간부들의 높은 결의로 11월 이후의 투쟁을 준비하며 중앙방침을 힘차게 집행했다. 부산양산지역의 경우 간부교육, 조합원 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노조가 거의 없었고 참가율 역시 대단히 높았다. 깃달기, 현수막 달기, 노동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배치되었고 이러한 여세를 몰아, 생활

결의, 쟁의행위 결의 역시 조합원들의 높은 참가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었다. 12월 26일 이후의 즉각적인 총파업이 강고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러한 투쟁준비기 사업의 차실한 집행이 커다란 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노동법개정실천단의 구성과 활동은 준비기 사업을 차실히 집행하고 조합원들의 동참과 높은 파업 결의를 끌어내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단위노조 임·단투를 치루듯 준비하고 투쟁하자!"는 구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위노조 간부들을 노동법개정 승리를 위해 전념토록 만든 것은 간부 모두가 노개투 실천단이라는 의식을 가지게끔 고무시켜 단위노조 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과를 반영하듯 9. 14.~15. 열린 실천단 수련회는 200여 가까운 간부들이 참석하였고 여기서의 결의를 바탕으로 산하 모든 노조가 간부수련회, 조합원 교육을 한번 이상 실시했으며 11. 10. 개최된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역시 예년에 비해 3배 이상의 많은 조합원들이 참가했다.

그러나 전체 투쟁의 상을 생산현장에서의 파업전술을 중심으로 가두투쟁전술로 나아간다고 설정하고 서도 실천단 조직과 사업은 조합원들이 투쟁열기가 오르기도 전인 10월부터 가두 지역전선 중심으로 편중됨으로서 자연히 현장 조합원 중심이 아닌 단체회원 중심으로 한 지역전선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실천단의 활동은 단체회원과 미가입(조직)사업장 노동자(통일선봉대 활동을 했던 노동자 중심)들 중심으로 일찍부터 대시민선전에 주력하는 등 사업의 중심이 달라져버렸다. 이 시기 산하 단위노조에서는 상집간부 및 대의원(이 사람들이 실천단이었다)이 중심이 되어 조합원 교육, 전국노동자대회 조직화 등 내부사업에 집중하고 있었으므로 대시민선전을 중심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천단 활동과 현장활동이 별개로 진행되는 결과가 빚어진 것이다. 이렇게 실천

단 사업이 총파업을 조직하는 현장 조합원사업과 시민선전사업으로 분리되면서 점점 더 실천단 활동은 대시민선전 역할로 굳어지다 11. 10. 전국노동자대회를 끝으로 활동이 거의 중지되어 버렸다. 이후 실천단 집행부의 현장에 대한 조직적 관장력은 물론이고 산하 노조의 실천단 회의 참가 역시 갈수록 저조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정작 12월 26일 이후 본격적인 총파업 시기에는 선전·선동과 선봉대 역할을 담당해야 할 실천단의 활동은 전체 투쟁에 묻혀버리는 결과로 나타났다. 즉 지역본부 사업을 힘있게 집행하는 기초단위가 없어져 결국 12월 26일 이후 본격적인 가두집회와 시위전술을 펼치는 데 있어 실무적·조직적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되었다. 물론 긴급히 조직된 자원봉사자들이 이 공간을 메꾸기는 했지만, 투쟁이 끝난 지금 지역본부는 이 투쟁을 통해 선진노동자의 훈련과 조직화라는 관점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향후 투쟁에 있어 준비하는 단계부터 현장조합원을 투쟁의 중심, 운동의 중심으로 세운다는 원칙을 가지고 선진노동자의 빌굴과 훈련 및 조직화에 사업의 중심을 두어야 하겠다.

노동법 개정투쟁이 전국적이고 전체 노동자의 요구가 걸린 정부와 총자본을 대상으로 한 정치투쟁인 만큼 중앙집중투쟁과 지역투쟁이 적절히 결합하여 하므로 자연 지역본부의 위상과 역할이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임단투와 달리 처음부터 중앙투쟁본부와 지역투쟁본부가 구성되어 집중된 투쟁을 벌여낼 수 있었다. 상반기 지역본부 집행력이 단위노조 임단투의 지원·지도에만 집중되어 전체 투쟁전선을 관장하는 역할을 방기한 것과는 달리 이 시기의 사업은 전체 전선의 형성을 위해 산하 단위노조에 대한 조직점검의 틈도 없이 가두집회 및 시위의 조직화에 몰두했다.

특히 중앙투쟁방침이 지역본부를 통해 단위노조에

하달되고 다시 산별연맹을 통해 내려가는 이중구조로 인해 지역투쟁의 기획과 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즉 총파업지침은 산별연맹에서 내려오고 지역투쟁지침은 지역본부에서 결정되는데, 산하 단위노조에 대한 조직적 관장력이 없는 지역본부로서는 노동법개정투쟁을 집행해나가는 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산별연맹이 결정해야 지역본부의 집행이 산하 단위노조에 관철되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결국 중앙투쟁지침이 일시분란하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산하 집행조직의 일원화가 되어야 함에도 중앙본부의 지침이 지역본부를 통해서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산별연맹을 한번 걸러서 산하노조에서 집행되는 이중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물론 이것은 민주노총 설립 원년이고 산별연맹 역시 설립 초기에 산하노조에 대한 조직적 관장력을 갖추기 위한 과도적 현상일 수 있으나 이는 하루 빨리 극복되어야 한다.

임단투와 관련된 요구, 즉 업종별 연맹이 주관하는 투쟁과 정치적 요구, 즉 전노동자적 투쟁은 그 투쟁 형태와 조직형태가 일치될 때 일시분란한 집행이 되기 때문이다. 임단투는 산별연맹의 주관 하에 지역본부가 공동투쟁으로 받쳐주는 집행체계가 만들어져야 하며, 노개투등 정치투쟁은 민주노총의 주관 하에 지역본부의 집행체계로 투쟁을 관장해야 한다.

결국 중앙투쟁본부와 지역투쟁본부로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여 중앙투쟁은 중앙이, 지역투쟁은 지역이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산별연맹은 중앙으로, 산별연맹 지부는 지역본부로 확실히 결합하는 것이 정치투쟁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럴 때만이 전체 투쟁방침의 결정에 있어 대중적 힘과 의지가 실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노동법개정투쟁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투쟁방침이 산별노조대표자회의에서의 논의를 통해 우왕좌왕하는 것을 몇 번 보아왔다. 물론 투본대표자회의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권한

이 위임되고, 위원장은 중요한 판단을 위해 산별노조 대표자회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 50만 민주노총 조합원, 1,200만 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에 대해 중앙에 모여 있는 산별대표의 판단에만 맡겨지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 따라서 조직 내 민주성을 높이고 올바른 결정을 위해서는 지역본부 중심의 결정과 집행을 구조화시켜야 한다. 산별노조 대표자들이 자기 연맹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단위노조 위원장을 불러 모으거나 임시중앙위원회라도 개최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투쟁기에 전국적 회의를 개최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자연 중앙에 모여 있는 조직 중심의 논의와 결정이 될 수밖에 없으며 모든 연맹의 사정이 이렇다. 이럴 경우 민주성이 보장될 수 없으며 그러한 결정에 대해 대중적 힘이 실릴 여지가 없다. 따라서 적어도 밑으로부터 최소한의 논의를 거친 결정을 이루어 내려면 가까운 곳에 있고 긴급하게 모이기도 쉬운 지역본부의 논의구조를 활성화하는 지역본부의 중심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럴 때만이 조직 내 최소한의 민주주의와 힘있는 결정, 힘 있는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고 만일의 경우 상급조직의 관료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총파업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위상과 역할이 대단히 높아졌듯이 부양지역본부의 위상과 역할 역시 산하 조합원들에게뿐만 아니라 부산시민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조직으로 떠올랐다. 이것은 이번 노동법개정투쟁의 성과이며 노동자가 주요한 사회정치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이번 총파업을 통해 부양지역본부의 조직적 관장력이 얼마나 높아졌는가 하는 문제는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물론 이번 노개투를 통해 그동안 지역본부 사업에 일상적으로 결합하지 않고 있던 사무노련·전문노련·언론노련·자동차노련·현총련 소속 노조들이 지역본부 사업에 결합하고, 양노대 소속 몇

몇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려고 하는 등 조직이 늘어날 가능성은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투쟁을 통해 그동안 지부조직이 없었던 자동차노련·사무노련·전문노련 등에서 지부조직이 결성되고 지역본부 일상활동의 범주 내로 들어온 것은 이번 투쟁의 조직성과이다. 그러나 과연 산별연맹의 지침 없이 지역적 사안을 가지고 지역본부가 독자적 투쟁을 조직해 들어갈 때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지역조직의 조직적 관장력은 대단히 낮다. 이 점과 관련하여 지역본부의 위상과 역할을 세워내는 사업이 향후의 중심적인 사업으로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단지 지역본부의 상근역량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본부의 97년 중심사업을 무엇으로 잡고 사업을 하느냐의 문제이다.

다. 민주노총 부산양산지역본부 '97 투쟁방침

(1) 노동법개정투쟁 사업

민주노총 중앙의 투쟁방침에 따른다.

(2) 임단투 지원사업

민주노총 중앙방침과 산업별(업종별) 연맹의 방침에 따라 산업별 공동교섭, 공동투쟁이 되게 지원·지도하고 민주노총 중앙으로의 일괄 위임 및 노동법개정과 관련한 전국집중투쟁을 위해 97년 6월 전국적 총파업이 가능하도록 지도한다.

정부와 총자본의 임금동결 정책, 생산성 임금정책의 강요, 무교섭 타결 등 노사화합 이데올로기 유포에 대해서는 지역적 사전투쟁을 배치하여 부산양산 지역 전체(한국노총까지 포함하는)의 공동전선을 형성한다.

이를 위해 3월안으로 노동법개악 저지, 총액임금

동결 분쇄, 생산성 임금정책 분쇄를 위한 한국노총을 포함한 전체 노동계의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내부토론회, 공청회, 가두집회, 서명, 임투전진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배치한다.

특히 올해는 경제위기의 가속화와 이를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려는 정부와 독점재벌의 착취 강화에 의해 고용불안과 임금동결이 예상되면서 여기에 대한 미조직 노동자들의 자연발생적 투쟁이 예상된다. 그 시기는 아마 조직 노동자들의 임단투가 끝난 7, 8월이 될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이것을 예상한 투쟁사업의 배치가 필요하며 이를 의식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미조직 사업장에 대한 선전·선동을 강화하는 사업을 배치해야 한다.

(3) 사회개혁투쟁

민주노총 중앙의 방침에 따르되 올해 실현 가능한 구체적 목표를 한가지 설정하여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한다(예: 부가가치세 인하등 세제개혁 투쟁).

(4) 재벌 해체투쟁 및 김영삼정권 퇴진투쟁

이번 총파업투쟁에서 제기된 날치기 주변 신한국당 해체, 민생파탄·경제파탄의 주범이자 권력형 비리의 총수인 김영삼의 퇴진, 비리재벌 해체 등의 요구를 걸고 즐기차게 정치투쟁을 수행한다. 특히 한보그룹 부도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폭로하면서 김영삼의 대선자금 공개, 뇌물선거·금권선거로 당선된 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 재산몰수 등 강도높은 정치투쟁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노동자·학생 연대투쟁을 공고히 하고 이를 기초로 김영삼정권 퇴진과 부폐권력·부폐재벌 해체를 위한 민중연대 정치투쟁본부를 민주노총지역 본부가 주도가 되어 구성한다. 그 시기는 임단투 및

사회개혁투쟁과 연계시키되 임단투가 끝나는 시점에 대선시기를 겨냥하여 구성한다.

이러한 투쟁기조 하에서 대선시기를 어떻게 맞이 할 것인가에 대한 밑으로부터의 토론을 조직하여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통일된 방침을 마련한다.

(5) 지역 정치사업 및 지역사회 개혁투쟁

지역본부는 지역 내 제민주단체와 연대하여 지역주민 공동의 생활상의 요구(교육, 의료, 주택, 교통, 환경문제 등)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지역탁아소 설치, 초등학생 무료급식, 지역복지 예산증액,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민주적 운영 등을 요구·관철한다.

특히 산하노조는 부산양산지역본부 공동단협 사항으로 이를 채택하여 공동 요구하고 교섭권을 지역본부로 위임하여 부산시와 교섭 및 투쟁을 통해 관철시킨다. (요구: 지역탁아소 설치, 초등학교 무료급식 실시)

지역사회 내에 산적해 있는 반민주적이거나 부조리한 문제들에 대해 노동자가 지역사회의 한 주체로서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시민주단체와 연계하여 대중적 요구와 투쟁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지역본부 산하 정치위원회의 일상적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97~98 대선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걸려 있는 정치적 급변기에 민주노총의 지역사회에서의 위상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지역 정치 사업을 기획·집행한다. 현재 부산지역에는 위원회·문제등 핵심적 쟁점들이 있으나 어떠한 요구를 우선적으로 걸고 투쟁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소속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올바른 정책적

판단 하에 사업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제시민주단체 및 전문가와 연계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임단투가 끝나는 시점부터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한다.

라. '97 민주노총 부산양산지역본부 사업목표

(1) 산업별(업종별) 지역지부의 상급단체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한다.

민주노총 중앙방침이 일사분란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산하노조에 대한 조직적 관장력을 높인다.

민주노총 방침이 산하노조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산하 노조의 현장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미조직사업장,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선전선동을 통해 조직을 확대·강화하는 사업을 꾸준히 전개한다.

(2) 지역본부의 집행체계를 바로 잡고 지도집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지역본부의 지도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 국장의 사업책임감을 높여내고 합법화를 계기로 단위노조에서 상근 국장이 나올 수 있게 추진한다.

조직생의국 상근역량을 확보한다.

(3) 산업별(업종별) 노동조합 임단투의 지원·지도와 공동투쟁의 조직화를 통해 총액임금동결, 생산성 임금정책을 분쇄한다!

한국노총을 포함한 전노동계의 공동투쟁 조직화

(4) 96년 총파업투쟁의 성과를 계승하여 반드시

노동악법을 분쇄하고 민주적 개정을 쟁취한다.

중앙방침에 입각하여 임단투, 노개투와 연계한 총파업을 반드시 성사시킨다.

(5) 재벌 해체투쟁, 김영삼정권 퇴진투쟁, 사회개혁투쟁을 즐기차게 전개하여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쟁취한다.

민주노총 중앙방침에 입각한 실질적인 사회제도개선투쟁의 전개

노학연대투쟁을 기초로 민중정치투쟁전선의 강화: 김영삼대통령 탄핵 범국민서명운동 전개

정치학교 등 일상적 정치사업을 전개하고 정치위원회를 조직적 성과로 해서 축적시켜나간다.

대선시기에 노동자의 정치적 입장장을 확고히 하고 대중적 투쟁과 참여를 조직한다.

(6) 산별노조 건설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조합원의식향상과 중심적인 대오가 있을 때 가능하다. 지역본부는 97년 사업에 임하면서 이 두 가지를 중심적 목표로 한다.

마. '97 월별 사업계획

4월: 임단협 승리를 위한 총력투쟁 준비기

2일 지역본부 대의원대회

중순 지역사회개혁투쟁 및 지역정치사업

관련 내부토론회 및 공개토론회

말 임금동결 및 생산성 임금정책 공동투쟁 조직화

5월: 임단협 승리를 위한 총력투쟁 교섭기

1일 중앙집중 노동절 기념 전국노동

자대회
15일 각 단위노조 노동쟁의발생신고 결의
말 각 단위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6월: 임단투, 노개투 승리를 위한 총력투쟁기

7월: 대선방침 제출 및 대중토론회 시작

8월: 하반기 사업방침 확정을 위한 대표자 수련회
(노동법개정투쟁, 사회개혁투쟁을 포함한 정치투쟁방침 수립, 대선방침 확정)
중순 정치학교 개강

9월: 민주노총 산하 노조 조합원 주소록 전산화 작업
중순~말 정치학교 졸업식 및 수련회
(대선을 대비한 정치실천단 발족)

10월: 대동문화제

11월: 전국노동자대회

12월: 18일 대통령 선거

4. 97 임단투 진행현황 보고(9월 24일 현재)

- * 교섭사업장: 73개로서 지역의 노조 및 지부수 80개를 기준으로 볼 때 약 91.25% 정도가 교섭에 돌입
- * 타결사업장: 부일산업(3/18), 동신유압(6/14), 오성화학(6/17), 광명연마(6/5), 대한지적공사(6/11), (주)대통(4/26), (주)동방(5/23), 천일정기화물(5/2), 천양항운(5/9), 일양운수(6/25), 대진택시, 성도운수, 부산염색공단(6/23), 국제신문(6/25), CBS(5/13), (주)기산(6/11), 쌍용자동차,
- 기아자동차(6/25), 새마을금고(6/30), 한국금속(7/4), 아시아자동차(7/2), 고려종합운수(7/2), 대양운수(7/7), 전기안전공사(6/27), (주)대림(7/9), 동부고속동래분회(7/9), 셋방기업(7/10), 천경콘테이너(7/11), 기아자동차서비스(7/9), 세양산업(7/8), 풍산기계(7/10), 부산매일신문(7/11), 부산여대(6/12), 천경콘테이너(7/11), 한국통신(7/15), 미진화학(7/15), 신일금속(7/15), 한국기계(7/16), 한성생명(7/16), 부산일보(7/18), 대우자동차(7/18), 고신의료원(7/22), 동래봉생병원(7/22), 대우정밀(7/23), 부산지하철(7/23), 침례병원(7/25), 현대자동차서비스(7/25), 백병원(7/30), 국제통운(7/31), 대남병원(7/31), 도시개발공사(7/31), 뷔로베리타스(7/31), 태평양밸브(8/1), 동아대병원(8/8), 메리놀병원(8/8), 신동금속(8/12), 삼익종합운수(8/19), 동아대학교(8/21), 대우자동차판매(8/26), (주)금양(9/2), 한진중공업(9/13), 춘해병원(9/19), 엘지종합금융(9/23) 등
- 63개 노조로서 73개 대비 86.30% 타결
- * 잠정합의: 지역의보(7/25)
- * 무교섭, 위임: (주)기산, 쌍용자동차, 기아자동차, 아시아자동차, 기아자동차서비스
- * 동결사업장: 천양항운, 미진화학
- * 조정신청: 부산지하철(6/23), 대우자동차(6/25), 한국금속(6/26), 대양운수(6/27), 대우정밀(6/27), 전국지역의료보험(6/27), 한진중공업(7/3), 미진화학(7/7), 한국기계(7/8), 대우자동차판매(7/10), KBS(7/15), 백병원(7/16), 동아대병원(7/28), 신동금속(7. 중순), 태평양밸브(7/29), 부산상공회의소(8/27) 등 16개 노조
- * 조정신청결의: 부산대남병원(6/30)
- * 파업결의노조: 부산지하철(7/3), 지역의보(7/4), 대우자동차(7/4), 대우정밀(7/10), 한국기계(7/15), 대우자동차판매(7/15), 동아대병원(8/1),

한진중공업(8/8), 부산상공회의소(9/11) 등 9개 노조

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조직적 준비를 구체화

- * 파업사업장: 대우자동차(7/7돌입), 지역의보(7/9돌입), 대우정밀(7/18돌입), 대우자판(7/24돌입), 한진중공업(8/13) 등 5개 사업장
- * 제3자지원신청: 대우정밀, 한진중공업, 한국기계, 신일금속, 신동금속, (주)대림, 태평양밸브, 미진화학, 한국금속, 부산상공회의소, 새마을금고, (주)금양 등 13개 노조
- * 민주노총 97임단투 4대 공동요구: 공동교섭 개최, 3자개입금지 무력화(노조지원연대실천), 전임자축소 저지와 임금감축 반대, 고용안정 보장 등

라.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영향력 확대

5. 부산지역 노동조합운동의 과제

민주노총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현안문제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가고 이 과정에서 사회운동 단체들과의 연대사업도 보다 활발히 전개할 필요(예: 총파업 시기 위천공단 싸움에의 결합)가 있다.

병원연맹, 화물운송노련, 금속산업 통합작업 등에 있어서 산별노조 건설의 문제의식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준비작업들을 추진해나갈 것.

한국논단 고소장

고소인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대표 김 창 국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의 87 안국빌딩 5층(전화: 723-1246)

2.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대표 박승원, 문규현, 장용주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4 광장빌딩 5층(전화: 3672-0251)

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표 유 현 석

서울 종로구 종로5가 25의 1(전화: 766-5393)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최 영 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의 12 명지빌딩 4층(전화: 522-7284)

5. 천주교 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형 태

서울시 중구 명동2가 1번지 가톨릭회관(전화: 777-0643)

피고소인

이 도 형

서울 종로구 청운동 벽산빌리지 7동 12호

근무처: 주식회사 한국논단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1-38(전화: 730-9454)

명예훼손

고소 사실

1.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설명

가. 고소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라 한다)은 1989년 7월에 창립된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운동단체로서 "사회적 정의 및 경제적 정의

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지역 경실련 48개를 포함하여 교수, 변호사 등의 지식인들을 비롯한 회원 20,0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재정은 일반회원과 특별후원회원의 회비, 기타 사업 등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고소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

변"이라 한다)은 1988년 5월 "기본적 인권의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결성된 법률전문가단체로서 200여명의 회원변호사가 자체 회비로 운영하고입니다.

고소인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라 한다)는 1994년 9월 10일 창립된 시민운동단체로서 "국민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적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교수, 변호사 등의 지식인들을 비롯한 회원 2,0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소인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한국천주교 산하의 변호사, 사제, 수도자, 교수가 모여서 1988년에 만든 한국천주교의 가장 대표적인 인권단체로서 현재 회원은 50명입니다. 위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김수환 추기경 이하 고위직 사제들이 모두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각 교구, 사제, 수도자들의 헌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소인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은 1974년 9월 26일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비민주성에 대하여 사제의 신분에 불구하고 노력을 하여야겠다는 사명감에서 전국적으로 사제들에 의하여 창립되어 활동해온 단체이고, 사제 및 신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 피고소인 이도형은 월간『한국논단』의 발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한국논단의 대표

이사이자 위 월간『한국논단』의 발행인 겸 편집인입니다.

2. 피고소인의 명예훼손행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말에 있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통령후보들의 자질을 검증하고 그 정책을 국민 앞에서 밝히는 다양한 형태의 대선후보토론회가 계속하여 열리고 있는바, 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매우 높고 TV 토론회의 경우에 시청률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피고소인은 한국논단이 이른바 '사상검증 대선후보토론회'를 기획하여 1997. 10. 8. 서울 타워호텔에서 개최하자 그 패널로 참석하여 대통령 후보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편,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된 이 토론회를 텔레비전 방송 3사인 KBS, MBC, SBS가 전국에 생방송으로 중계를 하였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피고소인은 신한국당 대통령후보인 이회창씨에게 시민단체와 관련한 질의를 하였는바, 그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들의 이름을 거론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들어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위 경실련이라든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카톨릭인권위원회, 무슨 무슨 사제단, 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 제가 볼 때는 이 시민단체가 전체시민이나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공헌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위협을 주고 어떤 특정 세력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심지어는 폭력적인 위협을 하는 고소사태는 그 중의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돈을 가지고 그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설에 의하면은 재벌이라든가 또는 기업체에서 약점을 미끼로 해서 돈을 끌어쓴다

사업 및 업무보고 (97년 9월 30일~10월 30일)

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말 자체가 명예훼손으로 또 추가고소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 좀더 시민단체의 실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서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생각은 구상은 안 가지 고 계신지 … 무슨무슨 환경단체 그 목적이 좋고 내 거는 모토는 좋습니다. 또 무슨 시민단체 그러한 목적과 모토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굉장히 여러 사람이 다치는 그런 일들을 저는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민단체에 대한 시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한편, 단체이름을 열거함에 있어서 '무슨무슨 사제단'이라고 한 것은 시민단체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 만 있는 사람도 그 문맥에 비추어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을 말하는 것임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평소에도 시민단체들에 대하여 근거없는 중상모략을 일삼아 온 자로서 수 건의 소송을 제기당한 자인바, 위와 같이 엄청난 사람들이 시청하는 가운데 근거없는 모략을 하여 회원들의 재정적 지원과 대중의 신뢰가 그 생명인 고소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들은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원하여 이 건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1. 신문기사(『한겨레신문』 1997. 10. 9자)

1. 시민단체 성명서 1997. 10. 10.

위 고소인들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대표 김창국 대표 김창국

2.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대표 박승원, 문규현, 장용주

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표 유현석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최영도

5. 천주교 인권위원회

위원장 김형태

I. 모임 현황보고

회원 현황 : 본부 186명, 부산·경남지부 27명,

대전·충청지부 10명

총 223명

II. 사업 및 업무보고

가. 9월 정기월례회 / 9. 26.

- 21명 참가

- 강연: '대선 여론조사 어떻게 볼 것인가?'

/ 강사 - 전 미디어리서치 전무 안근근

나. 시무국 업무보고

(1) '인권영화제 탄암에 대한 민변의 견해' 성명서 발표 / 10. 3.

(2) '한국논단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며' 성명서 발표 / 참여연대등 4개단체와 공동 10. 9.

다. 변론배당

(1) 유종은(전남대), 오경만(전남대): 국보, 공무집 행방해 등 / 문한성 회원

(2) 노수희(서울연합의장), 김항로(총신대): 범민련 관련, 국보등 / 김웅조 회원

(3) 한석만(서울대): 전국학생연대사건, 국보등 / 김한수 회원

(4) 배성훤(단국대)의 6명: 단국대 자주대오사건, 국보등 / 소삼영 회원

(5) 최영철(승실대), 금윤섭(고려대): 국보, 회염병 등 / 이상중 회원

(6) 나규정: 국보등 / 임채균 회원

(7) 이오영(명지대): 집시등 / 심규철 회원

(8) 최종진(건국대), 김진해(건국대): 집시등 / 박영

배 회원

본부 회장으로서 회장을 보궐 부임하는 팀(2팀)

III. 상임위원회 보고

가. 기획위원회

(1) 회의: 10. 16.(목) 오후 8시 시민종합

① 경계증립화 자료

- 현재 각 위원들의 자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므로 결과물을 조속히 취합하여 자료화 하기로 하다

- 보관용을 위해 자료마다 설명을 첨가하기로 하다.

② 사법감시활동에 관한 건의

- 민변의 기본적 성격을 감안하여 사법감시활동을 집행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하다

③ 정부 각 기관의 기금 및 연금의 변칙, 부식운용에 관한 대응

-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공유, 현 단계에서는 자료수집등이 1차적 과제이므로, 사회복지위원회와 공조하여 자료수집, 연구, 조사하여 문제의 접근방식, 해법등을 위한 기획초안을 내오기로 하다.

- 임영화 위원이 기금의 종류, 해당기관, 규모등에 관한 자료를 모으기로 하고, 사회복지위원회에도 요청하기로 하다.

나. 회원위원회

다. 출판홍보위원회

(1) 회의: 9. 30.(화) 민변사무실

① 『이달의 민변』 9월호 평가

- 외부의 원고등에 대해 편집방향과 어긋날 경우 필자에게 수정을 요구하는 등의 편집권을 행사할

(2008년 10월 10일) 도보무임 및 일상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으다.

② 외부 출판위원 확보 상황 및 출판위원회 운영 방안

- 정종섭 교수등 3명이 확정되었으며, 다음 회의에 함께 회의를 하기로 하다.

③ 출판사 사업자 등록 건

- 차별적 위원장이 단체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안을 찾아보기로 하다.

④ 「이달의 민변」 새로운 편집기획안 논의

라. 대외협력위원회

(1) 택시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모임 / 10.

9.(목) 오전 8시 YMCA

① 논의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 건교부가 마련중인 개정시안에 이용자인 시민의 요구를 조직화할 필요 있다.

- 10. 16.로 예정되어 있는 총파업을 방지하자.

- 업계와 노조의 요구 조정

② 앞으로의 추진일정 논의

- 10. 10. 시민·사회단체 연명으로 성명서 발표하기로 하다.

③ 제도개선위 위원으로 전문가 2인 추가 요구하기로 하다.

- 법조 1인: 민변 또는 참여연대에서 추천

마. 국제연대위원회

(1) 한국인권단체협의회 회의: 9. 29.(월) 한국교회 인권센타

① 대선기획사업팀

-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취소하기로 하다.

대신 차기정권에 대한 인권정책을 제시하든지 다른 사업을 준비해 집행위원회에 제안한다면 논의하기로 하다.

② 국보법 연구모임: 조용환(민변)등 5명을 확정

하고, 회의를 소집하기로 하다.

③ 대표와 간사단체 결정건

- 대표는 민가협에서, 간사단체는 천주교 인권위에서 내년 1. 1.부터 맡기로 하다.

④ 진관스님 관련 대처의 건

- 세 종교인권위원회가 모여서 토론회를 갖기로 하고, 판결문에 대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로 하다. 작성은 담당 변호사인 윤기원 변호사에게 부탁하기로 하다.

⑤ 세계인권선언과 정부수립 및 국가보안법 제정 50주년 대비사업계획

- 각 단체의 계획된 사업을 10. 15.까지 간사단체에 서면으로 제출, 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다.

IV. 상설특별위원회

가. 노동위원회

(1) 회의: 10. 1.(수) 12:00 호화반점

① 97 노동판례비평

- 평석대상판결을 정하고 필자 선정

② 삼미특수강해고철회 및 고용안정 공대위, 9차 집행위 결과

- 퇴직금 850억 체불

- 삼미본사에 대한 진상조사 예정

(2) 회의: 10. 8.(수) 12:00 호화반점

① 노동위원회 기획사업 건

- 97년 인권보고서 「노동자의 권리」 부분 집필단

당자는 김우진 위원으로 선정

(3) 회의: 10. 15.(수) 12:00 호화반점

① 10월 전체모임 평가

- 95 중노위 심결례집은 자료 부족으로 심결례의 전반적 흐름을 분석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

- 영남지역 노동현안 및 동향보고는 자세하고 세밀한 분석으로 부산지역 노동현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 다음 모임은 12. 13.(토) 서울에서 송년회를 겸하여 개최하기로 함.

② 노동위원회 기획사업건

- 판례모니터링집, 노동법 핸드북시리즈, 노동법 강좌 이외에 기획소송 발굴을 논의하고, 연구사업부에서 팀을 구성하여 사업안을 마련하기로 하다.

③ 택시제도 개선추진위원회 건

- 시민사회단체의 안이 건교부에 의해 받아들여짐으로 계획된 일정이 유보됨.

- 건교부에서 택시제도 개선추진위에 시민사회단체 전문기를 추가하고, 정부측 대표를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교체하는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

④ 11월 판례모니터링 집필 담당자: 김진국 회원 선정

(4) 회의: 10. 22.(수) 12:00 호화반점

① 「이달의 민변」 특집기획안 집필건

- 새 노동법 시행 이후의 노동현장의 변화에 대해 노동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측에 원고를 청탁, 게재하고 필요하면 민변 노동위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글을 수록하기로 하다.

② 필자는 양대 노총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요청하기로 하고, 노동부, 경총 등은 지인들을 통해 실무자를 접촉하기로 하다.

③ 현재로서는 대선 직전이라서 단체들이 매우 바쁜 시점이라 여겨지니, 내년 1월쯤부터 섭외를 추진하여 내년 3월호에 실기로 하다.

④ 12월 전체모임 건

- 전체모임의 주제를 '기업별노조에서 산업별노조로의 전환'으로 선정

- 「산별노조 전환에 있어서의 법률적 문제」를 최원식 회원이 발제하고,

- 「산별노조 추진과정 보고」를 병원노련에 발제 요청하기로 하다.

- 이돈희 대법관 주심사건 평석을 12월말까지 완성하기로 하다.

나. 언론위원회

다. 사회복지위원회

(1) 회의: 10. 1.(화) 12:00 민변사무실

① '노인문제의 현황과 대책' 강연회 / 강사: 한국 노인의 전화 서례경 박사

라. 환경위원회

마. 사법위원회

(1) 회의: 10. 24.(수) 12:30 민변사무실

① 영장실질심사제 관련 건

- 10월 말까지 결과물을 완성하기로 재확인하다.

② 사법감시활동 건

- 사법위원 확충, 일정, 방법등에 대하여 안을 마련하여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다.

③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

- 김주원 위원장이 담당하며, 영국과 미국 등의 자료들이 구해지는 대로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다.

바. 통일위원회

(1) 회의: 9. 25.(목) 저녁 6시 30분 민변사무실

① 「이달의 민변」 특집란에 대한 건

- 외부기고에 대해서 김인희 회원이 「말」지 신준영 기자나 한겨레 기자를 알아보기로 하다.

- 「탈북자들의 법적 보호, 지위」 등에 대한 이상

호 회원의 발제가 있었고, 각 회원이 문제의식을 요약하여 다음 회의때 제출, 토론하기로 하다.

② 의약품지원본부의 기부금품신청 거부에 대한 재결신청 건

- 행정심판서 제출되었고, 각 위원들이 공동선임 되었음.

③ 북한동포돕기운동에 대하여

- 지속적인 북한동포돕기운동 및 무료변론 기획은 시기와 참여의 문제로 일단 보류하기로 하다.

(2) 회의: 10. 8.(수) 저녁 7시 민변사무실

① 「이달의 민변」 특집기획안

- 정연순 회원이 「독일 통일 과정의 국적처리 문제」 발제, 특집기획안의 방향에 대한 토론이 있었음.

- 다음 모임에서 특집원고를 완성한 후, 회원들이 검토하기로 하다.

사. 경제정의위원회

아. 동북아시아특별위원회

(1) 회의: 10. 10.(금) 저녁 6시 30분

① 한일변호사교류회 준비모임을 위해 일본 변호사 3명과 간담회

- 일본측이 98년 2월 '일한 법률가교류협회'를 발족시켜 상시적으로 교류할 예정이라고 설명.

- 연구 교류의 주제로는 전후보상과 전쟁책임, 기소전 보석 구속적부심 등 형사절차, 사법개혁, 국제인권활동 등 4개를 제안

- 평소 교류의 필요를 말함.

- 논문의 내용 평가에 대하여 문화차를 강조, 제출 시기가 늦은 것은 사과.

- 우리는 지난 4월 잠정 합의된 교류회 주제를 2개로 줄이고, 발표시간보다 토론시간을 늘리며, 99년 봄에 오기나와에서 교류회를 한다고 확인,

내년 2월 일본측 협회 발족 후 자세한 것은 논의 키로 함.

IV. 임시특별위원회

가. 민변 1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

(1) 인권논문상 준비모임 회의: 10. 7.(화) 12:00 민변사무실

① 인권논문상 소위원회 구성

② 일정:

- 10. 15. 실무팀 구성 및 한겨레신문사 협찬 여부 확인

- 10. 30. 공고

- 98. 2. 15. 마감

- 4. 30. 수상논문 결정

- 포스터 제작, 사법연수원, 시민사회단체기관지, 각대학 학생회 학보, PC통신 등에 홍보

- 목록작성: 정은경 간사

③ 역할 분담

논문작성원칙 / 김한수 회원, 홍보안 / 한택근 회원, 총학생회 공문 / 정은경 간사

(2) 인권논문상 준비위원회 회의: 10. 14.(화)

12:00 민변사무실

① 한겨레신문 후원건: 공문 발송하여, 확정하기로 하다.

② 포스터 500장 제작하기로 하다.

③ 심사위원단 구성

위원장 한승현 회원, 위원 조용환 회원(더수), 한상범 교수, 강경선 교수,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④ 포스터 제작이 끝나는 대로 10월 말까지 각 대학, 단체에 발송하기로 하다.

나. 통합전자주민카드대책특별위원회

(1) 시민단체 공대위 회의: 10. 1.(수) 16:00 법률소비자연맹

① 내무부의 변경안에 대한 대응방안

- 내무부의 변경안: 첫째 전자주민카드에 수록 내용을 현재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초본의 사항으로 축소하고, 둘째 전자주민카드용 전용망을 별도로 구축함, 셋째 컴퓨터 칩의 용량을 그대로 8Kbyte급으로 한다.

- 내무부의 수정안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

* 수정안이 전자주민카드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는 만큼 기존의 계획과 사실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본다.

* 내무부 수정안이 형식적으로 기존의 계획을 대폭 양보한 것으로 보여 반대운동이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내무부의 수정안에 대한 공대위 공식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 이후의 활동방안

- 예결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정보통신위원회

라. 미국법위원회

(1) 회의: 10. 24.(금) 오후 7시 민변사무실

① 미국 집단소송법 사례연구건 - 김진국 위원이 담당하기로 하다.

② Business Law and the Regulatory Environment - Chapter 1: The Nature of Law 학습

마. 5·18 특별위원회

(1) 회의: 10. 13.(월) 오후 4시 민변사무실

① 5·18관련자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심리대응 건

- 공소장을 구해서 공람하도록 하고,

- 검찰에 기소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취하하도록 하며, 취하시는 김도형 위원이 작성하도록 하다.

- 법원에 사건별 기록등시신청을 하기로 하고, 이 유서는 박연철 위원이 작성하기로 하다.

- 특별법 제정에서 기소폐까지의 신문기사를 스크랩하여 일지를 작성하기로 하다.

(2) 회의: 10. 24.(금) 오후 4시 민변사무실

① 무원칙하게 취하하지 말고 기소된 부분은 취하하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신청을 유지하도록 하자.

② 취하서를 작성,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하다.

③ 심리에는 박연철, 백승현 위원이 참석하기로 하다.

성명서

인권영화제 탄압에 대한 민변의 견해

지난 9월 27일부터 홍익대학교에서 열리고 있는 인권영화제와 관련하여 정부가 학교측에 압력을 넣어 상영장소를 폐쇄케 하고 심지어 전기를 끊어 영화상영을 막는 것은 정부의 인권의식과 문화예술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홍익대학교 주변에 전경을 배치하여 부당한 검문검색을 하여 일반인의 영화제 참가를 방해하고 그것도 모자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심야에 적지 않은 병력을 동원하여 영장을 집행하였다.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정부의 이러한 방해와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빌전기를 동원하고, 임시 야외상영장을 만들어 주옥같은 영화들을 무료로 상영하고 있으나 정부의 탄압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민변은 정부가 이러한 탄압을 즉시 중지하고 영화제가 예정된 페막일까지 무사히 치루어지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그 견해를 밝힌다.

인권영화제 주최측이 상영작에 대한 사전심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정부의 유형, 무형의 탄압은 형식적으로는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공연법 등에 근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서 민주주의를 그 기초에서부터 부정하는 위법부당한 것이다.

정부가 그 정당성을 주장하며 오랫동안 시행해온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는 작년 10. 4.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검열제도에 해당되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았다. 그렇다면, 결국 비디오테이프의 형태로 상영되고 있는 인권영화제의 작품에 적용될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유사한 사전심의 규정도 위헌임이 분명하고 이는 현재 법원의 위헌제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현재 상태로도 정부가 적절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그러한 위헌적인 제도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행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적인 사전심의제도를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영화제가 위법이라고 단정하고, 위헌적인 사전심의제도에 근거한 심의필증이 없다는 이유로 공연을 못하게 하며, 상영장을 제공하려는 사람들에게 유형, 무형의 압력을 가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귀중하게 생각하여야 할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인권영화제에 대한 모든 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만일 법률의 위헌 여부를 비롯하여 법률적인 의문이 있다면 사후에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이러한 순리를 무시하고 정부가 주최측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영화제를 탄압함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불상사에 대하여는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민변은 어느 상업영화보다도 가치있는 영화를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 댓가 없이 준비하고 온갖 탄압에 맞서 당당히 상영하고 있는 인권영화제 주최

측에게 경의를 표하며 정부가 부당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1997. 10. 3.
온승봉 1997. 10. 3. 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영도

성명서

KBS, MBC, SBS 3개 공중파 방송은 대선에서의 매카시즘 여론 조작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1. 오늘 우리 국민은 하루 종일 KBS, MBC, SBS 3개 공중파 방송이 생방송으로 틀어대는 한국논단의 이른바 '사상검증 대토론회'를 지켜보아야 했다.

우리 시민사회, 종교단체들은 오늘 하루종일 진행된 생방송을 지켜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깊은 회의를 갖게 되었다. 권력 제4부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이, 그것도 가장 막강한 국민적 위력을 발휘하는 텔레비전 방송이 일개 월간잡지가 주최하는 토론회를 생중계한 데에는 이번 대선을 극우적 분위기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논단]은 그동안 사실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우리나라 지식인 사회와, 시민, 종교단체들을 좌익으로, 김일성의 조선노동당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모략까지도 일삼았던 대표적인 극우언론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의 단체들이 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까지 했다.

대선 과정에서 중립적으로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해야 할 3개 공중파 방송이 이러한 한국논단 주최의 토론회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에 생중계한 것은 각 방송국들이 최소한의 이성을 상실했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이번 대선을 매카시즘적 분위기로 몰고 가려는 의도에 편승하고 있다고밖에는 볼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시민 사회, 종교단체들이 만약 한국논단처럼 토론회를 주최하거나, 우리가 지목하는 언론사가 토론회를 주최해도 3개 방송국이 생중계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다.

우리는 3개 방송사가 오늘의 사태에 대해 즉각 국민에게 용서를 청하고, 균형잡힌 대선 관련 보도와 프로그램들을 방영하지 않는다면 시청료 거부운동과 방송사 항의방문 등의 다각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1. 또한 한국논단의 발행인인 이도형씨는 이회창 신한국당 총재와의 토론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환경운동연합 등의 시민사회, 종교단체들을 적시하면서 이들 단체들이 단체의 운영금을 기업의 약점을 잡아 받은 검은 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매우 놀라운 일이다.

국민이 알다시피 천주교 인권위원회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70년대 박정희 정권 때부터 이 사회의 양심과 도덕성의 잣대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억울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헌신했던 단체들로서 한국천주교교회에서 운영하는 공적인 단체이다. 이들에 대해 검은 돈 운운하는 것은 양식의 문제를 넘어 정신분열의 증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연 등은 시민단체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회원들과 일부 후원회원의 도움으로 재정을 꾸려가고 있다. 이들도 역시 10년 남짓한 역사 동안 정권의 독주를 견제하고 시민의 편에서 일했던 순수한 민간단체들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망발은 이를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후원금을 냈던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도형씨에 대해 법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할 것이다. 우리는 극우적 매카시스트 이도형씨의 발언 그 자체보다는 그의 발언을 여과 없이 생중계한 방송사의 의도에 대해 더 큰 질책을 보내고자 한다. 방송사는 국민을 위해 봉사할 때에만, 국민에게 받고 있는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 것이다.

1997. 10. 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표 김윤환, 류현석, 이설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공동대표 박승원, 문규현, 장용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최영도)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대표: 김중배 김창 박상중)

천주교 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환경운동연합(대표 이세중)

성명서

고(故) 박상준 후부를 빙결(弔結)하고자 이에 성명서를 드립니다. 박상준은 1928년 1월 10일 충청남도 청양군 충현면에서 태어나 1997년 10월 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향우동에서 별세했습니다.

한국논단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며

이제(8일) 우리는 TV를 통해 방영되는 한국논단의 이른바 「대통령후보 초청 사상검증토론회」를 지켜보면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논단은 위의 토론회를 통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참다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애써온 시민사회, 종교단체들을 우리 사회를 각아내리는 친북세력이라고 매도하고, 기업의 약점을 이용하여 검은 돈을 받아내고 그것으로 활동자금을 충당한다는 터무니 없는 발언을 하였고, 이런 발언이 TV 생중계를 통하여 전국민에게 여과없이 전달된 것에 우리는 분노를 가눌길이 없다.

그동안 이도형씨등은 그들이 발행하는 잡지『한국논단』을 통하여 여러 차례 우리 시민단체, 종교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거듭하여왔다. 이에 몇몇 시민단체들은 이미 그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놓은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추호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TV를 통하여 생중계되는 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그러한 발언과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우리 시민사회, 종교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그 도를 지나치고 있다.

우리는 어제 성명을 통하여 이도형씨를 비롯한 한국논단측에 대해 법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조치로서 우리는 이도형씨를 비롯한 한국논단측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시민사회, 종교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유로 정식으로 고소하는 바이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논단으로부터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이번 고소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단지 시작일 뿐이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논단측에 의해 실추되고 훼손된 우리의 명예를 어느 정도 회복하고, 그동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고 후원해주신 모든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우리 시민사회, 종교단체들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시민의 편에서 열심히 일하고, 민주발전을 위해 애써온 순수한 시민사회, 종교단체의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997. 10. 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표: 김윤환, 류현석, 이설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대표: 김중배, 김창국, 박상준)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시체단(공동대표: 박승원, 문규현, 장용주)

공개석한

-KBS, MBC, SBS 방송 3사에 보내는 공개서한-

우리는 지난 10월 8일 한국논단이 주최하고 귀사가 생중계한 소위 '사상토론회'를 지켜보며,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지 깊은 회의를 갖게 되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 제4부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언론이, 게다가 막대한 국민적 영향력을 가진 텔레비전 방송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에 대해 지극히 편향적인 시각을 강요하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토론회를 지켜본 대다수 국민이 느낀 바, 한국논단은 극우라는 표현이 부족할 만큼 편향적인 일개 잡지사에 불과하다. 한국논단측의 이같은 태도는 비단 이번 토론회만이 아니라 그 지면 기사의 술한 물의를 통해 익히 확인된 것이었다.『한국논단』은 사실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양심적인 지식인 사회와 시민, 종교단체들을 좌익으로, 김일성과 조선노동당의 대남적화노선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는 모략을 일삼아온 극우언론이다. 이날 토론회에도 ‘폭력세력, 기업의 약점을 잡아 활동비 마련’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아무 거리낌 없이 시민, 종교단체들을 매도하였다. 이날 토론회의 기조와 전개양상은 그간 한국논단의 행적으로 볼 때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를 리 없었던 방송사들은 아무런 여과장치도 없이 이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생중계하였다. 이같은 귀사의 행위는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아예 저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이번 대통령 선거 역시 매카시적 여론조작에 농락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크게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한 번의 방송사고에 그치지 않고 선거문화의 전면적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을 정치로부터 소외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귀사의 이번 방송은 상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과 시민단체 등의 항의가 빗발치자 3개 방송사들은 약속이나 한 듯, '한국논단측의 무리한 진행'을 평계삼아 재빨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는 이번 사태를 예상치 못했던 방송사고 정도로 치부하고 한국논단에 모든 책임을 미루려는 태도에 다름아닌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논단측과 함께 귀사 또한 이번 사태의 주된 책임처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귀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의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할 방송으로서의 도의와 정치적 책임을 저버렸으며, 시민, 종교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특정후보를 지지 선전하는 위법행위를 여과없이 방영함으로써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하였다.

우리는 귀사가 오늘의 사태의 경위를 해명하고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할 것과 충분한 정정보도를 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이를 무시하고 책임을 외면하는 태도를 고수한다면 우리는 항의방문과 제반의 법적 대응을 통해 지속적인 항의와 규탄을 벌여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방송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히는 바이다. 귀사의 조속한 답변을 촉구한다

1. 한국논단 토론회를 생중계 하게 된 경위를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해명하고, 국민 앞에 공개사과하라.
3. 1. 한국논단 토론회로 시민·종교단체들이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은바,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포함하여 동등한 시간의 반론권을 보장하라.
4. 1. 이번 사건으로 방송사가 대통령후보 TV토론을 주관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민간 TV토론회위원회가 대통령후보 TV토론을 주관하도록 방송사의 기득권을 버리고 이를 중계하는 역할만 담당할 것을 촉구한다.

1997. 10. 1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유화, 류현석, 이석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대표 최영도)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김창국 박상준)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공동대표 박승원 문규현 장용준)

이달의 민변 정기구독회원 모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연구·조사, 변론, 여론 형성 및 연대활동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직된 전문 법률가단체입니다. 민변에서는 위와 같은 목적을 이루고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소속회원들의 성과물을 매월 「이달의 민변」이라는 월간지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외부 인권단체 자료와 법학자, 인권운동가의 글도 함께 게재함으로써, 법률·인권지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변 회원들에게만 배포되던 「이달의 민변」을, 통권 제10호(97년 7월호)부터 비회원에게도 판매합니다.

책값 권당 3,000원 / 1년 정기 구독료 30,000원

12.12, 5.18 판결 평석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5.18 특별소위원회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민족정기와 사회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압력으로, 이른바 5.18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1997. 4. 17. 대법원에서는 전두환·노태우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된다는 역사적 본보기가 된 이 판결에 깊이 관여하여온 민변에서는 판결에 대하여 조속히 검토하여 문헌으로 남겨둘 것을 예정하였고, 이제 「12.12, 5.18 판결 평석집」의 발간을 통하여 이 사건 판결의 의미를 더욱 확실히 하여두고자 합니다.

차례: 성공한 쿠데타의 처벌 / 12.12 군사반란행위상의 쟁점 / 내란죄의 종묘시기 - 공소시효의 기산점 /

내란목적살인죄의 적용요건 / 전·노 비자금과 포괄적 뇌물죄 / 5.18 판결, 그 미완의 과제

신국판 198쪽 / 값 4,000원

1996 노동판례비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1996 노동판례비평』은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회원들과 젊은 노동법 교수, 노동법 전공 판사들의 1996년 대법원 노동판결 분석서입니다.

책의 제1부에서는 1996년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노동판결 중 판례공보에 게재된 134건의 판결성향을 분석하고 분석대상이 된 판결의 목록을 게재하였으며, 제2부에서는 주요 판결에 대한 평석을 수록하였습니다. 시민법의 형식적 평등원리를 실질적 평등원리에 따라 수정하여 불완전한 시민사회를 보완하기 위하여 등장한 노동법의 역사적 의의를 회복하고, 노동판결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가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이달의 민변 97년 11월호(통권 제14호)

발행일 97년 11월 15일

발행인 최영도

편집인 출판홍보위원회

박원순 이석태 조옹환 박성호 차병직
이백수 정연순 염규홍 최미희

발행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소 서초구 서초동 1572-12 명지빌딩 4층
전화 522-7284 팩스 522-7285

